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

김 영 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

김 영 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

인 쇄 2006년 12월 26일

발 행 2006년 12월 26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무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
전환의 성공과제 / 김영윤.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07)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75-2 93340 : ₩10000

320.911-KDC4

330.95193-DDC21

CIP2006002841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II.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개혁부작용에 대한 일반적 고찰 ..	9
1. 사회주의 경제개혁	11
2. 경제개혁의 부작용	21
III. 사례분석	33
1. 중국의 경제개혁	35
2. 베트남의 경제개혁	49
IV.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혁부작용: 실태와 평가	69
1.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71
2. 북한 경제개혁의 부작용	116
3. 북한 경제개혁 평가 및 전망	151

V. 경제개혁을 통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193
1. 경제개혁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	196
2. 향후 경제개혁의 기본방향	198
3. 세부추진과제	200
VI. 결론	217
1. 한국의 역할	219
2. 맺음말	224
참고문헌	23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7

표 목 차

<표 III-1>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46
<표 IV-1>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7·1조치 이전)	78
<표 IV-2> 주요물가 인상 내용	83
<표 IV-3> 주요 부문 임금인상 내용(월)	84
<표 IV-4> 주민 수에 따른 시장 매대 수	104
<표 IV-5> 북한·중국 경제특구 비교	112
<표 IV-6>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115
<표 IV-7> 북한 시장의 생필품 가격	118
<표 IV-8> 북한경제의 성장률과 수지구조 추이	120
<표 IV-9> 북한의 대 중국 교역액 및 비중 변화	144
<표 IV-10> 북한의 교역 비중 변화 추이	145
<표 IV-11> 북한의 대 중국 주요수출품목	146
<표 IV-12> 북한의 대 중국 주요수입품목	147
<표 IV-13> 년도별 중국의 대북 투자현황	149
<표 IV-14>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177

그림 목차

<그림 IV-1>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쌀값동향 추이	120
<그림 IV-2> 북한의 무역수지 및 반출입 수지	121
<그림 IV-3> 북한 원의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추이	122
<그림 IV-4>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145
<그림 IV-5> 중국의 대북한 투자 실행액 추이	148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개혁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질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있다. 북한의 경제변화가 개혁의 차원에서 인식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개혁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이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 취한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현 북한 사회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사회는 개혁조치를 통해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성향을 띠는 주민 의식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불안정과 사회적 부패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제개혁의 성과와 부작용은 비단 북한이라는 사회에서만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경제개혁을 추진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겪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경제개혁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남한으로서 북한 경제개혁의 긍정적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한 경제가 궁극적으로 동질성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자기 완결적이 아니다.

첫째, 경제개혁을 통한 북한 변화가 그 형태면에서 열려있다는 점이다. 즉, 변화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직은 아무도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 변화를 연구하는 논문에서도 단지 변화의 파급효과나 변화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화 불가역성을 논의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미흡하다. 더구나 북한의 경제개혁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개혁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부패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의 부작용이 향후 북한의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과 파급효과를 미칠지, 또한 그와 같은 개혁의 부작용 하에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다.

둘째, 북한의 경제개혁에는 권력 엘리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개혁이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위로부터의 개혁, 즉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 당국에 의해 이끌어지는 개혁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개혁과정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점에서 경제개혁의 성공 과제로서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력 엘리트를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권력 엘리트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향후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데도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는 또한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혁의 부작용이 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어떻게 비교되는 지를 알아보게 된다.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정이 북한에는 어떤 시사점을 마련해 주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남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혁의 성공이란 경제개혁을 통해 북한 경제가 시장화의 과정을 체제의 붕괴과정 없이 추진해 내고

이를 통해 경제 일반적 목표인 보다 잘 살 수 있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체제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의 역할은 그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북한이 2002년 7월 이후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그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귀납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연역적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방법이 아닌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귀납적 방법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및 후속 개혁에 대한 부작용을 파악하여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을 내릴 경우, 제안하는 처방이 무엇을 위한 처방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작용을 발견할 때 어떤 부작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이라는 것이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한다면,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당초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정확하게 찾아내거나 진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시장요소를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본 조치를 본격적인 시장화의 개혁조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부작용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¹ 다시 말해 귀납적 접근 방법의 선택은 제안하는 처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역적 접근 방법은 먼저 바람직한 경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북한이 취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및 후속 조치의 한계를 밝히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부작용을 찾아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경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찾고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포함한 경제개혁조치에 대한 당초 의도가 아니라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귀납적 접근법 대신 연역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처방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은 경제개혁의 부작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경제개혁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개혁 조치에 나타나는 현상이 부정적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는 점을 경제개혁의 부작용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점을 미리 밝힌다.

실제 연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연구구성과 북한 경제의 변화 실태 및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 및 관계 북한 전문가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쳤다. 새터민과의 대화를 통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 경제개혁의 실

¹ 권태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부작용과 처방,” (본 연구관련 자문회의의 비공개 자료, 2006. 8. 24), p. 4.

상과 부작용을 파악하여 반영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 발간 인쇄매체(경제연구, 조선신보 등) 및 언론 매체(평양, 중앙방송)가 중심이 되었으며, 북한 경제개혁을 분석한 통일부와 국내 학자들의 자료와 논문도 참고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문헌 분석을 위주로 했다. 사례분석과 관련 선택한 국가들은 중국과 베트남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같은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나라로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경제개혁을 시도한 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8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 이후 핵실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로 제한했다. 1998년 이전의 경제개혁과 관련지을 수 있는 조치는 그 내용과 질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고려, 논의에서 제외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전까지로 잡은 것은 순전히 연구의 시간적 제약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전개될 상황은 향후 북한 경제를 크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생략했다. 다만,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결론 부분에서 짧게 언급했다.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존의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부작용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북한 개혁의 방향과 한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제시한 연구는 발견되지 못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제한된 부문에서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2002)와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계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2004)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조세연구원의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2001)과 한국개발연구원의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2004)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배종렬 박사의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방향」(수은 북한경제 2006년 봄호) 등이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들은 북한 경제개혁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아닌 부분적·경과적 언급에 그치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개혁부작용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사회주의 경제개혁

가.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개혁과 관련,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혁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지향하는 성격, 특히 시장화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장화는 수요, 임금, 환율 등의 분야에 있어 사적영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변화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 경제개혁을 하는 것은 흥미있는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체제에 대한 개혁,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체제전환(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이란 한정된 지역(국가)에서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경제질서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규의 적용이 무효화되고, 다른 경제적 질서나 법규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질서나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구(institutional mechanism)가 전혀 새로운 원칙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까지 주로 체제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는 곧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유형적으로 어떻게 변화·발전될 것인가 하는 체제 장래에 대한 연구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로 양립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한 편의 지배를 받거나 붕괴에 이른다는 체제비양립론(Unvereinbarkeitslehre)에 입각하여 전개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스(K. Marx)의 변증법적 유

물사관에 의한 자본주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주의의 대두,² 또한 자본주의는 내부모순의 극대화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전적 성공에 의해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한다는 슈페터(J. Schumpeter)식 자본주의 몰락론³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 계획경제논쟁(경제계산논쟁)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합리적인 운영 가능성을 부정한 미세스(Ludwig v. Mises)⁴나 하이에크(F. A. Hayek)⁵의 「사회주의 실패론」을 들 수 있다.⁶

한편,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각기 상이한 체제가 자체 내의 상당한 수정과 변화를 거치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일정한 새로운 체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행된다는 갈브레이스(J.K. Galbraith)⁷나 틴버겐(J. Tinbergen)⁸ 등의 체제수렴론

² 이에 대해서는 Karl Marx,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arx · Engels Werke Vol. 23~25 (Berlin: Dietz Verlag Berlin, 1963) 및 이에 대한 요약으로 Henri Denis, *Geschichte der Wirtschaftstheorien* Vol. 2: Von Marx bis zur Gegenwart (Rheinfelden: Schäuble Verlag 1974/75) pp. 60~86 참조.

³ J. A. Schumpeter, *Kapitalismus, Sozialismus und Demokratie* (Tübingen: Francke Verlag, 1950).

⁴ Ludwig v. Mises,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51).

⁵ F. A. Hayek(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Critical Studies on the Possibilities of Soci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35). 그 외 랑게(Oskar Lange) 이론에 대한 비판은 하이에크의 논문집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49) 참조.

⁶ 1920년대까지의 경제체제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논리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미세스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를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게 되었는데 미세스는 사회주의의 윤리적 우월성과는 무관하게, 사회주의는 구성원들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없는, 즉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체제로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⁷ J. Galbraith,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München-Zürich: Knauer, 1968).

(convergence theory)도 체제전환적 입장에서 거론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이행이 필연적임을 역설한 로스토우(W. W. Rostow)⁹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중앙관리체제는 경제성장의 국면전환과 함께 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뵈트허(E. Böttcher) 등도 위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나 가설들은 각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점으로 인해 체제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적 입장에서 논리를 개진하고 있거나, 경제체제의 핵심은 바뀌지 않으면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동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나타난 사회주의의 붕괴나 개혁에 따른 체제전환현상과 연관시켜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 현실성을 상실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바꾸어 말해 과거의 사회주의체제가 정부주도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현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로 판단된다.

나. 경제개혁의 대상과 전제

경제체제는 경제적 질서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원칙, 즉 생산, 소득 및 소비와 관련되는 의사결정과 이의 수행을 위해 마련된 기구(mechanisms)와 제도(institutions)의 총체다. 기구란 제도가

⁸ Jan Tinbergen, "Konvergenzen und Divergenzen zwischen den verschiedenen Wirtschaftsordnung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Nordrhein-Westfalen-Köln(ed.), *Unsere Wirtschaft-Basis, Dschungel, Dogma?* (Köln: 1973).

⁹ W. W. Rostow *Stadien wirtschaftlichen Wachstum*, (Göttingen: 1967). (Original: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1960).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능하는 장치를 말하며 제도는 경제주체가 이루려고 하는 일정한 목적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가격기구(price mechanism)란 가격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이와 같은 기구와 제도가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항상 동일한 경제적 성과를 나타낸다고 전제할 경우, 제도와 기구는 서로 통합된 상태, 즉 제도적 기구(institutional mechanism)로서 성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구의 총체가 경제체제를 이룬다고 할 때, 경제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적 기구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사회주의 경제를 이루는 제도적인 기구의 전환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도입·시행됨을 전제로 한다.

첫째, 가격이 자유화되어야 한다. 가격자유화는 경쟁시장을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적이며 최우선적 조치다. 가격이 경쟁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되지 않고서는 재화의 수요·공급이 조절되지 않으며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가격자유화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가격자유화를 산업 전 부문에 걸쳐 즉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일 부문에서 시작하여 전 부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의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격자

¹⁰ 그러나 일개 국가의 경제체제는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정치적 또는 제도적인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체제전환이 경제제도적 기구에 의해서만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유회의 방법과 내용이 기타 체제전환의 요소와 함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대량실업이나 물가상승, 경제구조의 일시적인 와해 현상 및 그 밖의 각종 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시장참입과 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장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이나 잉여가 생산자나 소비자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신의 능력을 시험받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시장은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할 때에만 존재 가능하다. 사유재산제도가 시장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과 운영이 국가간섭을 벗어나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사적 소유관계에서 운영될 때 경쟁시장과 경쟁가격이 형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물론, 기술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해외무역과 자본이동이 국가독점에 의하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대외경제 개방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화폐가 대외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태환성을 갖추어야 하며, 재화의 가격은 국내외 간 왜곡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두 국가 간에 있어 제품의 생산가격과 판매가격이 아무런 제약없이 연결되어야 한다.¹¹ 이것은 가격자유화를 통해 이를 수 있지만 경제의 전 분야를 일시에

¹¹ 사회주의 국가의 재화가격은 국가가 여러 모로 개입하여 형성시킨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왜곡현상이 심하다. 국내생산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는 싸게 판매하는 경우와 국내생산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해 오는 가격 왜곡의 경우가 많다.

개방하고 화폐의 태환성을 갖게 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유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기준(criteria)은 북한 경제개혁조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도 이상 논의한 경제개혁의 내용을 견지하고 있어야 바람직한 경제개혁의 정형을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경제개혁의 방법

체제전환과 관련된 경제개혁은 그 방법적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급진적인 방법으로 개혁하는 것과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개혁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동독의 경우는 동서독 통일 당시 주어졌던 정치·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었으나, 바로 그 때문에 통일 후 많은 후유증을 겪었다. 그러나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점진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고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경제개혁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 즉 시장경제의 기능이 최대한 빠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경

제 성장과 함께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완전고용과 국제수지의 균형 형을 이루려는 경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사회적인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것은 경제개혁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충격 요법식 경제개혁

경제개혁의 방법 중 충격요법적인 것을 택해야 한다는 가설은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두 가지 상이한 체제를 병존하게 하거나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두 체제가 병존하는 상태로 개혁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적 조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의 개혁은 즉시 전 분야에 걸쳐 실시해야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면적인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격 자유화를 개별적으로 서서히 진행시킬 경우, 예를 들어 원자재 및 반제품의 가격은 묶어 놓고 최종 생산물 가격을 개방시킬 경우, 가격메커니즘이 개별가격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가격의 체계가 경쟁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충격요법(shock therapy)적 가격개혁이 성공했던 전형적 사례로는 1948년 서독의 화폐개혁을 들 수 있다. 당시 집세나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가격이 한꺼번에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생산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다.

충격요법적 경제개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제체제의 전환에

있어 점진적인 전환을 취하려는 입장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다. 즉, 한 나라의 경제는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부문들이 상호 유기적이면서 의존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기계설비 가운데 하나의 톱니바퀴만 돌리고 나머지 전체의 기계는 서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착상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가격, 소유권 및 대외무역분야가 동시에 자유화되지 않고서는 시장경제적인 기능인 체제를 움직이기가 불가능하며 부문별로 자유화를 시킬 경우, 그 우선순위 및 단계를 확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외경제분야에 있어서도 화폐의 태환성이 급진적인 전환과 함께 일시에 보장될 수 있을 경우에만 비로소 해외로부터의 소비재 및 투자재 또는 용역의 수입이 자유로워져 기술이나 해외저축의 유입이 가능해지며 이것이 곧바로 경제개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체제전환의 시간이 길어질 경우, 상품생산을 위한 각 단계별 또는 산업분야별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없어 소득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경제구조의 실질적인 개편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구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체제전환에 대한 저항요인이 작용하여 체제전환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 포기될 수도 있는 여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점진적인 전환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환을 시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분야마다 존재하

고 있는 기존의 영향권자로부터의 반발을 가져오거나 의도적인 회피로 인해 전환의 효율성을 상실함으로써 개혁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2) 점진적 경제개혁

반면,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에 있어 점진적인 방법(peace mill)을 선호하는 입장은 우선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의 필수적인 조치, 예를 들어 가격체제의 개혁, 투자의 자유, 해외 무역에 있어서의 국가독점 해제, 국가재정의 긴축적 운용, 안정기조에 중점을 둔 중앙은행의 화폐정책, 시장경제적 운용에 입각한 금융체계의 수립 등이 아무런 마찰없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의심을 두고 있다.¹² 만약, 경제개혁이 동서독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일방의 경제개혁이 요구될 경우, 급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으나, 기타 동유럽의 국가와 같이 자체적인 경제개혁을 통한 체제전환을 시도할 경우에는 경제개혁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상당기간동안 과도기를 두는 경제 전반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충격요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극소화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체제의 왜곡으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대외무역은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해외로부터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화폐량이 재화의 공급량 보다 훨씬 많아 인플레이션 경향은 아주 크나, 국가가 물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¹² Rüdiger Pohl, *Das Preissystem ist der erste Schritt zur Währungsunion*, (in: Wirtschaftsdienst, Feb. 1990), p. 72.

자원의 소비와 분배가 극도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 가격의 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소비자들의 화폐지출에 따르지 못하는 재화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물가상승은 실질소득의 감소와 임금상승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다시 기업의 이윤을 저하시켜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대외무역에서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국내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한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자발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가격개혁의 입장을 취하는 쪽은 체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체제의 상이한 요소를 적절히 배합시키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권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논점 외에도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선호하는 입장은 경제개혁을 정치 및 사회적인 전환과도 연관시켜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은 경제제도적인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적용시켜 운용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체제는 각 경제주체의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자유경쟁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진적 경제개혁이 비록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적인 부작용을 더 크게 동반한다면 그 당위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소유권제도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많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소요된다는 점도 점진적인 전환을 옹호하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2. 경제개혁의 부작용

가. 의미

‘부작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결들여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경제개혁의 부작용이란 경제개혁을 통해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목표의 실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 및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개혁을 하는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분석 대상이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일 경우, 그 의미는 크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경제개혁의 부작용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그 인식은 상당히 다르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남한의 시장경제 차원에서 볼 경우,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부작용이 개혁·개방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부작용은 남한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북한에게는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현상일 것이다.

경제개혁의 부작용을 다루는 데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와 같은 부정적 현상이 반드시 경제 개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당면하는 문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개혁의 부작용은 경제개혁의 결과와 직접 관련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에 맞추되, 북한이나 남한의 시각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개혁의 목표가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의 증대에 있는 것이라면 부정적 경제사회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경제개혁의 부작용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 형태

(1) 인플레이션

후술하는 경제개혁의 사례에서 언급될 것이나, 체제전환 국가들이 당면하는 경제개혁의 부작용은 실로 다양하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현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통화팽창으로 보나, 유효수요이론에서는 사회적 총수요(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가 사회적 총공급(소비수요와 저축의 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¹³ 최근에는 물

¹³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상품에 대한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수입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과 비용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으로 양분해서 볼 수 있다. 초과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은 총공급을 초과하는 총수요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초과수요는 크게 실물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와 과잉 유동성공급(과잉 통화공급)의 2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실물수요의

가수준의 지속적 상승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가수준은 많은 개별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균하여 산출한 물가지수(price index)로 측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공식적인 것이 아닌 암시장의 상품가격이나 환율가격에 적용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재화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와 과소생산에 따라 항상 부족경제(economies of shortage)에 직면해 있다. 공식부문의 가격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억압 인플레이션(suppressed inflation) 현상이 지속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이유는 계획된 투자(planned investment)가 계획된 저축(planned saving)을 항상 앞서 있기 때문이다. 투자가 저축을 항상 앞서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투자에 수반되는 비용(투자비용)을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 적자를 발생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기업경영이나 사회주의 기업에서는 생산목표의 달성이다. 인력이나 부품, 원자재의 과잉보유에 따른 비용발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계도 계획된 투자(수요)가 계획된 저축(소득)을 항상 앞서고 있다.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제품의 가격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저렴하게 책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투자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개발 인플레이션)와 현대 정부의 기능 확대에 의한 재정수요의 증대에서 나타난다. 과잉 유동성공급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제품의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제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물가상승을 가져오는데, 이 비용 상승은 1960년대 말부터 크게 현실화되었다.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는 임금의 인상,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 고이윤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소비제품에 대한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가격결정이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다면 과잉수요를 조절할 수 있지만, 가격이 당국에 의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요는 배급제(rationing)를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7·1조치』에 따라 북한이 취한 가격인상 조치는 그와 같은 구조적 부족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격 인상으로 다시 가격을 동결한 상태라면 순수한 의미의 시장화를 위한 가격개혁, 즉 가격자유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분배의 불평등

인플레이션은 국민경제나 각 개별경제에 여러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국제수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플레이션은 정액소득자에게 불리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임금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임금이 다소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정액소득자)로부터 기업가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부가 재분배되는 경향이 높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인플레이션은 부의 불균등을 확대시키고 빈부의 질서를 뒤바꾸어 놓기도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 지역에서도 7·1조치 이후 분배측면에서의 부정적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사회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요한 경제적 부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모든 사회경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사회경제의 방식이나 경제체제에 따라 다르다.¹⁴

(3) 경제개혁 부작용으로서의 사회적 부패

(가) 부패 발생의 원인

어느 국가 어느 사회할 것 없이 부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보다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나 후진국에서 보다 많은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북한에도 경제개혁 이전부터 부패가 존재해 왔다. 부패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이며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이에 따른 영향력 등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된다. ‘사적’이란 말은 관료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이나 파벌까지도 포함된다.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부패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된 규범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공직의 이용 또는 공직 규

¹⁴ 소득분배는 개인적 분배와 기능적 분배로 구별된다. 개인적 분배는 개개인 또는 개별 세대사이의 분배이며, 기능적 분배는 생산요소(노동·토지·자본)의 생산과정에서의 기능에 따른 분배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개인적 분배는 ①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반 생산요소의 크기, ②시장기구를 통하여 결정되는 생산요소의 단위당 보수율의 두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임금률·이자율 등의 보수율이 어떠한 수준에서 정해지는가는 기능적 분배의 문제에 속한다. 그 때문에 개인적 분배와 기능적 분배는 상호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적 분배의 일종에 분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어떤 특정 요소의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총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율을 노동의 분배율이라고 한다.

¹⁵ 부패는 속성상 현저조사가 어려우며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부패는 표면화되고 해결된 부패와 노출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부패 그리고 노출되지 않은 은폐된 부패로 구성된다. 이를 부패의 빙산모형(iceberg model)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노출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부패와 노출되지 않은 은폐된 부패를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범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단체의 모든 성원들이 부패에 관여하여 서로를 묵인해줄 때에도 그것은 결국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개혁의 부작용은 일종의 개혁부패(reform corruption)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는 기존의 부패와는 그 성격과 형태가 다를 수 있다.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패와는 그 규모면에서 크고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베트남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적어도 통일 전까지는 부패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1954년부터 공산당 지배 아래 있었던 북부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 날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한 남부와는 달리, 베트남 북부는 통일 이후, 남부로부터의 영향과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Doi Moi」 정책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부패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¹⁶

개혁부패는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료 및 국유기업의 부패가 대표적이다. 관료란 일반적으로 당간부, 내각 및 지방 행정기관 소속의 간부, 사회안전부나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공안기관의 간부를 포함, 중하위급의 국가 간부를 칭한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추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부패는 단순히 관료 개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반주민에게까지 국가의 통제를 비껴간 삶의 영역을 허용해 주는

¹⁶ 고용권, “베트남의 통일과정의 특성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대학통일문제 연구소협의회, 『베트남 개방정책 성과와 북한사회에의 함의』, 통일교육원 2003 용역보고서 p. 17.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 기존 사회주의체제에서 관료부패의 만연은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조직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관리하는 당 및 행정 관리자의 주도로 타 기관과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를 대체로 묵인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나, 이는 결국 체제 전체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비경제적 관료부패는 국가의 관료기구 통제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경제적 부패에 비해 척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마르크스는 1948년 『공산당선언』에서 근대국가의 집행부(관료기구)는 모든 부르조아의 공동사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계급적 착취와 사회적 갈등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와 관료기구는 실제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특정 계급의 착취가 사라진 시점에서 관료기구는 단순한 행정기구, 즉 인간에 대한 행정이 아닌 사물에 대한 행정기구의 성격을 띠게 되며 행정직위에 대한 독점도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레닌도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입장을 따르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지배기구인 소비에트의 창설을 통해 구시대의 국가 및 관료기구를 몰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체제건설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관료기구는 차후 체제를 통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체제는 단일 조직체적 성격을 띠게 된다. 당과 행정 관료기구는 최고엘리트의 정책과 노선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사회전반의 유일한 신경조직이 되었으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비판적일 수 있는 어떤 정치조직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

게 된 것이다. 거의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 또는 협동소유로 전환되고 생산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혁된 상태에서 관료기구는 사회의 모든 공적인 관계를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료의 행동공간은 크게 팽창함으로써 합리성의 실현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관료기구의 규모가 방대한 만큼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병리현상도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단히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료부패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서 조직의 생존 또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자의 동기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구조의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개혁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도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이 당 관료들로 하여금 혁명적 계율을 상실한 채 점차 개인적 이익이나 물질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¹⁸하는 경향성을 갖기 때문이다.¹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사소한 부패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조그만 뇌물을 바라보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공산당원이나 관료들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있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과정에서의 부패가 점차 대형화 조직화된다는 점이다.²⁰ 거액의 횡령이나 뇌물을 수반하는 부패행위가 체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 개혁과정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킴으로써 자원분배와 경제성장

¹⁷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¹⁸ 고용권, “베트남의 통일과정의 특성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p. 18.

¹⁹ 베트남 전쟁 시 북부의 법원들이 일년간 처리한 부패사건이 단지 5~7건에 불과했으나, 통일 이후 공산당이 자유시장경제로에 개혁을 추진하기까지는 1,800% 그리고 1988년까지는 무려 2,230%나 증가했다. 위의 책, p. 17.

²⁰ 위의 책, p. 17.

을 위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개혁을 이끄는 정부의 생존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세금을 포탈하는 현상이 증대되거나 특혜를 제공한 부패 관료들을 거부하는 일반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짐으로써 소요나 폭동으로도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 반대로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무관심으로 흐를 수 있다.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나 주민 모두가 점차 통제가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경향이 크다.

(나) 부패의 유형과 파급효과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관료 및 개혁부패는 ①조직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 ②조직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 ③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 ④개인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²¹

조직을 위한 경제적 부패에는 자재조달 목적의 뇌물공여, 공장·기업소의 직원복지를 위한 기관 간 물물교환, 외화벌이 기업소 간 수주경쟁, 허위보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업소 간 호혜 등이 있다. 이 중 자재조달 목적의 뇌물공여는 북한 사회에서 가장 만연되어 있는 관료부패로서, 이는 중앙집중식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강하다. 조직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는 조직옹호를 위한 후원자의 영입, 지역주의에 근거한 비공식적 집단형성 등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김부자 일가에 속

²¹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참조.

한 인사를 조직의 후원자로 영입하여 권력과 상통하는 동시에 조직을 보호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는 공공자원의 행령, 통행증 발급과 같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수뢰, 인사관련 수뢰 등을 들 수 있으며, 개인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에는 후원의 대가로서의 성관계, 여성의 성적 유린, 생산목표와 관련한 책임회피 등이 있을 수 있다.

경제체제의 변화는 부패를 한층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에는 1978년 공산당 11기 3중 전회를 계기로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개혁부패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곧 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의 증가였다.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이와 같은 유형의 부패가 더욱 촉진되는 이유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²²

첫째,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의 부분적 인정, 시장요소의 도입, 지방분권화, 효율 또는 이윤 극대화라는 정책적 변화가 관료들로 하여금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켜 주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하게 되는 만큼, 개혁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실현에 대한 관료들의 신념 약화를 부채질하게 되며 이권과 관련된 부패 개입의 개연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집단주의와 혁명적 열정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관료들의 신념 약화는 곧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기 쉽다.

²² 위의 책, p. 17 이하 참조.

둘째, 일반적인 가치규범의 공백을 들 수 있다. 경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에 국가는 사회주의 이념체제를 버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비중이나 기능이 약화된다. 국가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새로운 이념체제의 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료들은 물론 모든 주민들이 가치관 또는 도덕적 규범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생기는 사회이념의 공백은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커지게 되며, 이 공백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의해 메워지게 된다. 따라서 관료들로서도 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셋째, 개혁·개방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에 의해 관료부패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개혁정책의 실질적인 집행과 그 정책의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경우, 조직의 운영원리에 밝은 관료들은 이 시간차를 이용하여 부패에 관여하게 된다. 법제도가 정비된다하더라도 일단 구축된 부패의 사슬은 끊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넷째, 대외개방은 그 과정이 자본과 기술의 도입, 국제 분업에 대한 참여와 함께 경제의 의존관계를 형성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 대한 대부분의 접촉 창구가 관료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한 경제 관련 관료부패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관료들은 외국기업과의 접촉에서 비즈니스 에티켓을 보이기 위해 국가 재정을 활용해야 하며 여기서 그들의 비리 개연성은 개방 전의 시기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비즈니스 에티켓이 사기업에 의해 수행된다면 반드시 부패가 뒤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나 관료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외화와 관련된 부패는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이 가져오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가 점차 양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더 나아가 관료부패는 점차 구조화되고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 또는 국가의 영역을 침각할 정도로 침해하게 된다.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와 함께 부패의 형태가 단순한 뇌물수수나 횡령과 같은 일회성의 경제적 범죄로 끝나지 않고 이권개입이나 금권유착과 같이 비합법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이고 반복적인 것이 되어 제도화된 부패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III

사례분석

1. 중국의 경제개혁

가. 개혁과정의 특징

등소평이 최고실력자로 등장하면서 중국은 평균주의에 기초한 한술밥, 철밥 그릇이 강조되던 ‘정치우선’의 시대에서 벗어나 ‘생산력의 해방발전’을 강조하는 ‘경제우선’의 시대를 맞게 된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의 개혁파들은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선진기술과 외국자본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후 중국은 외국자본과 기술의 중국 유치를 위해 「중외합자경영기업」을 비롯, 각종 법령들을 제정(1979.7)했고, 지방정부와 개별기업들에게 외화사용권과 외자도입의 심사 및 인가 권한을 상당한 정도로 위임하는 무역관리체제의 분권화를 추진했다. 심천을 비롯한 4개 경제특구가 설립되고, 14개의 연해 항구 도시와 해남도의 개방이 확정됐다.

대외개방정책과 함께 중국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경제개혁정책은 「농업생산책임제」 실시와 「인민공사제도」 해체였다. 1982년의 신헌법이 정경분리, 정사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오랫동안 중국의 농촌사회를 지배해왔던 인민공사제도가 사실상 해체되었다.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과거 시스템 전환은 농촌개혁으로 시작되었다. 이의 핵심은 가족책임제에 의한 분

배방식의 채택한 데 있었다. 각 가족이 각자의 노동 결과 가운데 일부를 자기 몫으로 갖는 것이었다. 가족 책임제에 따른 물질적 인센티브가 『마오주의』식 비난을 대신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공동체 시스템과 집단 농장이 폐지되고, 각 가정은 경작하는 땅에 대해 책임을 졌다. 농민들은 일정량의 수확물을 국가에 내놓아야 했지만, 나머지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토지의 개인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장기간의 사용권을 인정했다. 토지사용권을 매매할 수도 있었다. 농촌사회에서 집체경제의 역할은 극소화한 반면, 개별경제는 급속히 확장되었다.²³ 농가의 개인 부업이 적극 장려되고 전업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농촌사회에 소상공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둘째, 농업부문의 급속한 발전이 공업부문의 개혁을 가져온 점이다. 농업에서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 경제개혁의 모태가 되었다. 농촌경제개혁의 성공에 힘입어 1984년부터 중국의 개혁이 공업 부문에 시작되었다. 공업부문은 중앙에서 통제되고 그 규모도 컸으며, 정부 수입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업부문의 변화는 전국을 경제적으로 혼란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통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개혁의 주요대상은 기업의 관리체제였다. 공유제 구조를 개편, 공유제기업 외 다양한 기업형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²³ “일부 지역, 일부 농민이 우선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모든 지역, 모든 농민 계층이 점차로 공동 부유의 길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여, 농민들의 ‘자본주의적 성향’을 최대한도로 활용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개혁파의 농촌경제정책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농촌경제구조를 하루아침에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은 농촌경제정책은 1950년대 이후 정제되었던 농업생산의 성장을 촉진했다.

대정부 종속성을 개선, 상대적으로 독립된 생산자로 만들고 기업 활동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그 결과 개인경영, 민영,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 등 다양한 기업형태가 생겨났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확대되었다. 1985년 이후 기업의 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을 지속, 여러 형태의 경영책임제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국영기업 가운데 경영책임제를 실시한 기업비율은 1987년 82%에 달했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채택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고도성장의 시대로 들어섰다. 덩소핑은 중국 지도층을 설득, “중국적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의 건설”을 표방했다. 덩소핑의 지도 아래에 있던 중국 지도층은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경제개혁과 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는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소위 부르주아적 착취가 없고, 모든 사람이 경제적 발전의 과실을 균등히 누린다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최고의 목표로 견지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적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⁴

1987년 10월 중국은 제13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강조했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중국이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장기간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거치는, 다시 말해 자본주의 조건 아래서 실현한 공업화와 생산의 상품화, 사회화, 현대화를

²⁴ 당시 중국은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은 있다. 시장은 자본주의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은 있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소유제의 기초만이 다르다. 확대상품생산의 특징적 범주는 잉여가치와 상품화된 노동력이다. 다만 양 체제에서 노동과 잉여가치의 성격이 다를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사회주의 하에서 추진해야 하는 데 근거한 것이었다. 이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초급단계’ 사회주의 사회가 강조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보수파와 급진파의 비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실천과정에서 천안문 사건은 그 한계를 극명하게 표출한 것이기도 했다.

1992년 14차 당대회²⁵에서 중국은 경제체제개혁을 목표로 새로운 경제개혁 논리를 확립하고 이를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인대’를 통해 개정된 헌법에 명시했다. 1992년 개정 헌법 제7조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며, 경제입법과 거시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경제를 운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가 곧 계획경제라는 등식을 부정하고 사회주의의 틀 안에서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확인했다.

나. 중국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핵심과 시장화 과정

(1) 경제개혁의 핵심

중국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핵심은 한마디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시장경제로의 핵심은 제14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국가의 거시적 통제하에서 시장이 자원배분의 기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사회주의의 기본제도와 결합되었다. 전인민적 소유와 집체소유를

²⁵ 중국은 1992년 10월 제14차 전대회에서 계획경제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현을 최종목표로 설정했다.

포함한 공공소유를 소유제에서의 주체로서, 또한 개인경제, 사영경제, 외자경제를 보조적 소유제로 장기간 같이 발전시키되, 여기에 국가소유기업과 집체소유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즉 계획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계획의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경제발전에 대한 예측, 총량 조절, 중요 산업구조와 생산력 배치에 대한 계획을 원만히 하고 필요자금과 물력을 집중하여 건설하는 것이었다. 분배와 관련해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분배방식을 보충하여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었다.

총괄하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경제의 틀 안에 유지시키면서도, 시장이 자원배분의 주요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이 각기 다른 경제환경에서 작동했던 이중적 경제구조가 철폐되고 소유권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같은 환경에서 경쟁함을 의미한 것이다.

(2) 시장화 과정

중국의 시장기구 확립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경제의 영역을 축소했다. 국가가 규율하는 생산품목을 축소하고 생산단위가 직접 판매하는 소비재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생산단위에게 시장기능을 위임했다.²⁶ 국가는 생산재

²⁶ 예를 들어 지방정부 및 지방관리하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원자재중 중앙정부의 명령적 배분계획에 의해 조달되는 부분의 비중이 1980년의 경우, 70%에 달했으나, 1987년에는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1980년의 경우, 국가계획에 의해 생산·공급되던 공산품이 120항목에 달했으나 1987년에는 60항목으로 줄어들었으며, 정부에 의해 통합적으로 배분되던 생산원자재는 같

시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물자교역센터 등을 설치하고, 국가소유 기업을 집체소유로 전환하거나 개인경영자에게 임대함으로써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²⁷ 경영결과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는 소규모 국영상업기구들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했다. 계획경제의 영역을 축소하고 시장기구를 확대하기 위해 ①국가계획 대상 물자의 품목수 및 비중 축소, ②생산단위의 생산액 중 직접 판매 비중의 증가, ③국정가격 적용 품목 및 비중의 감소, ④생산재 및 소비재의 시장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상업망 확충 등의 조치를 취했다.

두 번째로 가격기구를 개혁했다. 계획경제 영역의 축소에 이어 가격에 대한 정부 통제를 완화하고 수요를 고려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에 따라 소매 판매액의 4/5 이상이 시장을 통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됐다. 에너지 등 일부 생산원자재 및 수송부문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자유화를 단행했다. 이어 내구성소비재 가격을 자유화하는 한편,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 차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개혁초기에는 가격쌍계제를 운용했다. 『가격쌍계제』는 일종의 2중 가격제도다. 상하 20%로 되어 있던 생산재 가격변화의 상한과 하한을 1985년 2월에 철폐, 국가계획에 따른 생산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

은 기간 동안 256항목에서 27항목으로 줄었다. 오승렬, 『중국경제의 개혁: 개방과 경제구조』(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16.

²⁷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 경험 중 특기할 만한 것은 공업부문의 개혁 프로그램이 공포된 1984년 말, 이미 생산원자재를 포함한 총유통물자의 50% 이상이 시장기구 혹은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에 의해 배치되는 등, 시장기구의 확산이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중국 가격체계에 있어 국가계획 영역 축소는 점진적 개혁이라는 어휘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위의 책, p. 19 참조.

해서는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상과 같은 가격 체계 개혁 조치들은 가격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중국경제의 적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시장기능의 고도화, 다시 말해 시장을 사회주의 체제 하 판매자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했다. 소비재공급과 가격책정에 대한 정부 통제를 제거하는 가격자유화를 추진, 경쟁시장을 유도한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 욕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시장은 생산자 시장에서 소비자 시장으로 바뀌어졌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윤동기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소유제 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했다. 국유기업의 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사적 소유의 기업은 증가시키고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했다. 비국유기업의 확대는 소비재 및 경공업 제품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 번째로 대외경제부문의 개혁을 강화했다. 대외경제 부문에서 태환성 화폐량을 증가시키고 수출촉진 및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무역체제를 개혁했다. 수출액의 40%에 달했던 무역손실보전용 정부 보조금을 제한, 기업이 자생력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외환관리제도를 변경, 이중환율제도를 단일환율제도로 바꾸고, 시장환율을 적용했다. 외환거래센터를 설립하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은 반드시 중국 인민은행을 통해 인민폐로 환전하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수출에 따라 획득한 외환의 사용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으며, 수입 역시 반드시 국가계획위원회의 외환 사용계획에 의존하도록 했다. 경제특구를 건설, 특구지역의 발전을 통해 타 지역에 그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특구는 지역발전의 거점 및 체제완충

시대로서 일부지역이 먼저 부유해진 다음, 그 경제력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을 발전시키는 점→선→면 전략을 추진했다. 그 밖에도 1국 2체제를 통해 홍콩 및 대만의 경제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여 투자심리를 제고하고,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상이한 체제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충격을 최소화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개혁·개방의 실험기지 역할을 했다. 경제특구는 지방재정과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 시장가격에 의한 상품 및 생산요소의 공급과 수요결정, 외환 및 대외경제관계의 자율적 관리, 인센티브기제의 확립, 주식제도를 포함한 소유권 다양화 등 주요한 체제전환 정책의 실험기지적 역할을 했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수출촉진을 위한 거점 역할 외, 제조기술 및 관리기술의 흡수 및 전파, 개혁정책의 실험 및 개선, 중서부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의 파급효과 등, 종합적 ‘특별구역’의 기능을 담당했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이나 세제 간소화 및 기반시설 제공을 통한 수출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나 자유무역항 혹은 보세가공구역 등과는 다른 역할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다. 중국 경제개혁의 시사점

개혁의 성공은 개혁 시기의 특수한 여건과 개혁방식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중국 경제개혁이 성공한 요인은 개혁의 초기조건이 되는 중국경제의 구조와 중국 정부가 실시한 개혁방식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발전도상국으로 농업부문에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했던 것이 경제개혁 성공의 열쇠였다. 중국은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 노동력이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만약, 중국이 개혁 초기 비교적 발달한 공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향진기업」²⁸이라는 독특한 기업이 농촌에서 성장할 여지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극히 작았을 것이다.

둘째, 모택동 시대에 진전된 지방분권화가 시장의 형성·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 추진 이후 국유기업이 지방과 경쟁하는 양상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셋째, 개혁과정에 홍콩과 이웃하고 타이완과 동남아시아의 화교자본이 개혁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 파트너이자 투자가였으며,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자 역할을 했다. 특히 1979년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출확대²⁹, 고용창출 및 인재양성, 부족한 자금의 보전 및 자본형성, 세수증가 및 기업의 경영기술 전수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넷째, 중국 주민들이 가진 강력한 시장 마인드가 개혁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중국에는 전통시장이 발달해 있었다. 전통중국을

²⁸ 향진기업은 농촌지역에 있는 국유기업 이외의 기업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자본과 노동력을 기초로 향촌 정부나 개인 혹은 다양한 합작형태 등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집체 및 개인 기업들로서 업종 및 규모가 다양한 각종 기업군을 총칭하는 개념. 향·촌을 단위로 하는 집체소유의 기업은 모두 향진기업이었다. 다만 농촌지역의 기업이더라도 국영농장을 경영하는 기업은 국유기업이며 향진기업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보근, 『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 19~24.

²⁹ 외자기업 수출액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1982년 0.2%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6년에는 외자기업의 수출액이 약 615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40.7%를 점유했다. 전재욱, 『중국의 공업화 전략과 외국인 직접투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p. 99~109 참조.

지탱했던 ‘시장 정신’이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소멸되지 않았던 점이 경제개혁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다섯째, 농업개혁부터 착수해 그 성공을 도시부문과 비농업부문으로 확산시켰던 것이 개혁성공의 요인이었다. 농업개혁이 비농업 개혁보다 용이했으며, 개인농화를 통한 농업개혁이 주민들로 하여금 개혁성과를 비교적 쉽게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섯째, 개혁목표와 개혁수단의 비급진성이 보장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기본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사유화 위주의 개혁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자산의 재분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평과 이로 인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사회집단이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개혁의 혜택을 입게 되어 개혁의 당위성이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일치됨으로써 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개혁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개방에 있어 정치부문, 즉 개혁주도자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주도자가 기존모델에의 모순을 인식하고, ‘실용주의’라는 인식으로의 개편을 시도했다.

둘째, 체제 내적 개혁은 반드시 물자배분 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기업관리체계의 분권화를 가장 먼저 이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화에 대한 테크노크라트의 지식이 축적될 수 있었다.

셋째, 농업과 대외경제부문의 변화가 개혁의 최대관건으로 작

용한 점이다. 중국 농업부문의 변화는 대내적 개혁의 추동력으로, 대외개방은 자본유치를 통해 대내개혁을 계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농업부문에서 중국은 「농업책임생산제」를 적용하고 대외부문에서는 「경제특구」 정책을 시도했다. 중국은 「농가책임생산제」를 통해 1979년~1983년 연평균 15.8%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1973년~1977년의 3.2%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였다. 경제특구 정책을 통해 심천(沈圳), 하문(夏門), 주해(珠海), 산두(汕頭) 등을 개방함으로써 홍콩, 대만 자본을 유입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³⁰

넷째, 효율적인 시장기구의 확립이 중국개혁의 성공을 좌우한 열쇠였으며, 개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라. 중국 경제개혁의 부작용

중국 경제개혁의 부작용은 경제개혁의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의미가 반감된다. 중국 경제의 성공은 개혁정책 자체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를

³⁰ 중국의 특구 설치는 순전히 해외자본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구 내에서는 전용공단을 설치했다. 경제특구는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갖추고 선진기술 및 관리기술을 흡수·소화하여 중국대륙의 여타지역으로 전파해 줄 수 있는 대외적·대내적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가지역들을 특구로 지정했던 것이다. 중국은 철저한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홍콩 및 대만의 경제인들에게 중국과 홍콩 및 대만 중간지역에 시장경제와 유사한 체제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판이한 체제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경제특구에 부여했다. 이로써 1993년과 1994년 홍콩 및 대만으로부터의 투자가 중국 전체 외자유치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74.1%와 68.4%에 달했으며, 이와 같은 성공으로 새로운 개혁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밑받침이 되었다. 즉, 시장기구의 계획기구로의 대체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써 1980년대 중반 중국은 이미 효율적인 시장기구의 확립이 가능해졌다.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중국은 경제개혁 이후 1979년~1996년 사이 연평균 9.8%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개혁 이전 1952년~1978년 연평균 성장률 6.0%를 크게 상회했다.³¹ 개혁의 초기단계(1979년~1984년)에서는 「농가청부생산책임제」등 농업생산제도의 개혁조치와 농산물 수매가격의 인상에 따라 농업부문의 생산이 어느 단계에서 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1985년 이후 개혁이 본격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자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 개혁의 중점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2차 산업을 중심으로 거의 전 산업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1992년 이후 공업부문의 성장률이 연평균 17.3%를 기록, 실질 GNP가 연평균 11.7% 증가하는 등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표 III-1>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1979~1984	1985~1988	1989~1991	1992~1996	1979~1996
1차산업	7.3	3.1	4.2	4.7	5.1
2차산업	8.9	14.2	6.8	17.0	11.9
(공업)	8.8	14.0	7.5	17.3	12.0
(건축업)	10.2	15.9	0.5	14.6	10.9
3차산업	11.9	14.5	5.5	9.7	10.8
(교통·통신업)	8.6	12.4	8.1	11.3	10.1
(상업)	13.6	16.6	△3.0	7.7	9.6
국민총생산(GNP)	9.3	11.1	5.8	11.7	9.8

주: 불변가격기준 연평균 성장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7, 한국은행, 「중국 경제의 개혁성과와 개혁정책 평가」, 조사연구자료 98-14 (1998), p. 19에서 재인용.

³¹ 일부 서비스 부문의 생산과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되지 않은 국민소득(국민수입) 성장률로 GNP 성장률과는 개념상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1978년~1996년 중 1인당 GNP와 1인당 소비지출은 경상가격 기준 약 15배 정도 증가함으로써 국민생활수준은 대폭 향상되었다. 가격변동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동 기간 중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³² 그러나 중국이 개혁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지출과 사회적 혼란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이중구조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거시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플레이션이 반복적으로 발생³³했으며, 그 때마다 계획경제방식에 의한 긴축을 실시함으로써 개혁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또한 공유제와 시장경제의 결합체이며 주요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국유기업 소유권의 불명확성과 각종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자금의 초과수요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유기업에 대출될 자금이 비국유기업으로 전용되고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화폐를 추가발행해 대출함으로써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중국 전체의 경제개혁 방식과 사회관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국유기업이 경영악화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경제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실업자의 대량 양산도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했다. 한계 국유기업에 대한

³²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북경: 중국통계출판사, 1997); 한국은행조사부, 『중국 경제의 개혁성과와 개혁정책 평가』(서울: 한국은행 조사부, 1998), p. 21에서 재인용.

³³ 특히 1984년~1985년 사이의 물가양등은 화폐충발행액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그 원인이 있었으며, 1988년~1989년 사이의 인플레이션은 전면적 가격자유화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해 주민들의 예금인출과 사재기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1993년~1994년의 가격양등은 경기과열과 통화량 조절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산이 도시 실업자를 급증하게 했던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었던 점이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게 만들어 국유자산이 유실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의 각급 부처가 국유기업의 소유권자로서 생산·인사·투자에 대한 결정에 관여,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자율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기업의 활력과 생산성 향상을 제약했다. 국유기업은 잉여 노동자의 고용유지, 퇴직, 휴직 근로자의 비용까지도 부담, 부실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었다.

한편, 국유기업의 부패문제는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동안 중국이 이룩한 발전의 안정구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점은 1997년 중국공산당 15대 정치보고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반대는 당과 국가의 생존에 관계되는 엄숙한 정치투쟁이다.··· 만약 부패에 대한 유효한 징벌이 없으면 당은 인민대중의 신임과 지지를 상실케 된다.”라고 경고한 강택민의 언급에서도 인식할 수 있다.³⁴ 2003년 제10기 전인대에서 새로운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온가보(溫家寶)도 공무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정부기구 개혁추진, 다각적인 감독 강화 등 반부패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개혁이 불가피한 분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부패문제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상과 같은 부작용에도 중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은 비국유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자본축적이

³⁴ 江澤民, “中國共產黨第15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求是』, 1997年, 第18期, p. 22.

국유부문의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다 밀도 있는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통제 등 거시경제적 안정화가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경제개혁의 부작용으로는 등소평의 선부정책에 따라 먼저 개방한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빈부격차, 일부 관료들과 경영자들의 결탁에 따른 부패행위,³⁵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 빈곤층의 급속한 확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계획경제 체제 당시부터 지금까지 도시의 저임금을 저곡가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 베트남의 경제개혁

가. 경제개혁 과정의 특징

1975년 공산화 통일 이후 베트남이 남부 지역에 도입했던 사회주의 발전 전략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통일직후 베트남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집단농장과 국유기업을 주요 생산활동 단위로 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운용이 실패한 원인은 급격한 사회주의의 실현, 인도차이나 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확보

³⁵ 당·국가 관료들이 생산수단, 토지, 투자, 대출 등 대부분의 자원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시장 기회 포착에 능한 국유기업 경영자와 비국유기업 경영자의 지대추구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서재진·한도현·장영식, 『중국·베트남·북한 경제개혁조치의사회·문화 분야 파급효과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2004 통일부 용역 과제보고서, pp. 42~43.

하기 위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 외국으로부터의 경제봉쇄 등 경제외적 요인 때문이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79년 9월부터 베트남에는 새로운 경제개혁 정책인 「신경제정책」 채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신경제정책」은 제한적 범위의 경제자유화를 취하는 정책이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모색한 것이었으나, 급진적인 것이 아닌 점진적 추진 원칙에 바탕을 두었다. 신경제정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바탕을 두고 경제활동에서의 영리개념 도입, 생산·유통·분배과정에서의 점진적 시장원리수용이 핵심이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생산물 계약제를 도입하고, 노동량에 따른 임금지급 계약을 초과하여 생산한 협동농장의 생산물은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허용했다. 농업생산 단위가 가계단위로 세분화하는 한편, 각 농가가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책임을 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농장은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공업부문에서는 사기업의 역할을 인정하는 한편,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노무 및 재무관리의 자주권을 확대했다. 임금의 평균주의를 지양, 생산이나 경영실적에 따라 임금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영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부서의 개입을 축소하고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생산 목표, 구입 및 판매가격의 대부분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신경제정책」은 사회주의의 기본원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농업 및 공업 생산성을 제고하려 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유통분야의 통제 완화로 시장이 팽창,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사회주의적 소유개념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생산물계약제가 농촌경제를 상업화함으로써 유희자본이 농업부문에 유입, 농민들 사이의 계층분화가 일어났다. 도시의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발생했다.³⁶

1980년대 중반 베트남 지도부에는 경제체제의 대외의존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된다. 베트남이 소련 원조의 일방적 수혜 국가가 되어있는 점과 함께, 경제원조마저 비효율적으로 운영, 많은 낭비를 가져온 것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1986년 12월 「구옌반 탄」이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당 총서기로 취임하면서 과감한 시장경제체제가 채택되고 경제의 대외개방을 서두르는 소위 쎄신정책(Doi Moi Policy)을 추진했다. ‘도이’는 바꾼다는 뜻이며, ‘머이’는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도이머이」 정책으로 베트남의 경제사회는 경제체제가 전환하는 개혁을 맞게 된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실질적인 전환은 바로 「도이머이」라고 불리는 경

³⁶ 이에 따라 베트남 지도부는 1983년부터 1985년 초까지 다음과 같은 재통제 정책을 실시했다. 첫째, 농민과 노동자의 분배과정에 개입, 농민과 노동자의 초과수입한도액을 설정하여 국가재정으로의 편입비율을 높여 시장적 요소의 도입에 따른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한편,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이나 서비스에 대해 중세하고 은행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경제적 불평등 요소를 감소시켰다. 둘째, 유통부문의 재통제를 통해 사회주의 기간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조치를 취함. 즉 유통에 대한 통제를 완화함에 따라 국가 자원이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으로 몰리는 반면, 기간 산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경향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영 상업부문의 질서를 재확립하고 국영 사업망을 확충, 유통질서를 재확립해 각종 세금징수를 용이하게 했다. 셋째, 남부지역의 농업협동화를 상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남부 농업생산물의 많은 양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채 시장에 유입되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재통제정책은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의 통제정책 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재현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베트남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중경제가 형성되면서 투기, 암거래, 밀무역 등의 경제범죄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당간부와 국가 관료의 특권행사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재개혁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도이머이」 경제개혁정책은 ①농업을 최우선시하고 경공업과 전문 수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②경제구조의 분권화, ③물자배분 시스템의 변화, ④대외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했다. 농업 최우선 정책은 곡물과 소비재의 생산증대 등 소비와 자본축적에 필요한 생산량 확보를 목표로했다. 경공업과 전문 수공업의 발전을 위해 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했다. 경제구조의 분권화를 위해 정부고시가격과 계약제도를 개혁하고, 영세기업과 가족기업의 자율화, 경제적 유인제도 도입, 생산보조금제도 개혁, 생산력 수준과 특징에 맞는 새로운 생산관계 정립에 주력했다. 고용 및 소득 분배 등에서 변화를 가해 물자배분 시스템을 바꾸었다. 비공산권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 구축 등을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목표로 삼았다.

1987년 12월 베트남은 「신토지법」을 제정, 토지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하고 국가가 관리하나, 이용권은 개인이 소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규정을 두어 토지의 이용기간을 15년까지로 명시, 장기임대를 허용했다. 동시에 당면과제로서 ①식량 식품, 소비재, 수출상품의 생산증대, ②소비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물자 생산 증가, ③수출 증대 및 관광, 항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통한 외화획득 증대 등 3대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발효, 외국인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합영사업의 장려하고 선진경영 습득과 경제관료 및 숙련노동자를 훈련시켰다. 또한 국제분업의 틀,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코메콘) 기구 내에서 베트남

경제의 잠재력과 역할을 강화하려고 했다. 천연자원의 효율적 개발, 베트남내 가용 원자재 및 천연자원을 동원한 노동집약적 고용확대, 수출과 외환획득, 사회주의 산업화를 위한 자본축적 등을 위해 노력했다.

1988년 이후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보다 과감한 개혁·개방 조치를 취했다.

첫째,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이다. 중앙은행과 국영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했다.

둘째, 농업부문의 본격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농지의 일부를 가족수에 비례해 분배·사용토록하고 나머지는 '입찰방식 생산계약제'를 적용했다. 농지를 부여받은 농민들은 생산비용, 조세, 복지기금 등 공제액을 제외한 생산물의 40%~50% 정도를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셋째,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로서 「국가투자협력위원회」를 설치, 투자안내, 투자유치, 투자계획 등의 업무를 전담케 했으며, 외환과 수출입 업무를 법제적 측면에서 보강하기 위해 「외환관리법」과 「수출입관세법」을 제정했다. 넷째, 가격체제에 대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농업부문에서 정부가 관리해왔던 「관리가격제」를 「협의가격제」로 전환, 농산물에 대해 사실상 시장가격을 적용했다. 공업부문에서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협의가격제」로 전환, 소비자 가격결정권을 개별기업에 부여했다. 다섯째,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조치를 단행, 국유기업이 자주적인 경영권을 확보(1989.12) 할 수 있도록 했다.³⁷ 국유기업에 이사회

³⁷ 당국은 이윤유보 및 투자결정에 관한 권한을 국유기업에 부여함으로써 국유기업도 자기자본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제도를 도입하고, 「사기업법」과 「회사법」을 제정, 비국유 부문의 기업활동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국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국영기업까지도 원료조달, 고용, 임금, 판매, 대외무역, 자본투자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부여했다. 외국기업과 직거래하고 차관도 들여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국유 기업의 개혁과 동시에 은행개혁을 추진, 상업은행을 발족시켰다. 국유 기업들의 경영자주권 확대와 이윤추구 행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책임경영에 따른 기업운영의 재원 확보가 필요했다. 이것이 상업은행의 발족으로 연결되었다. 1990년 5월 베트남은 「국가은행 운영에 관한 법」과 「은행·신용협동조합 및 금융기관에 관한 법」을 제정, 국영 및 민간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설정³⁸했다. 1990년 10월에는 「신은행법」을 제정,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국유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³⁹했다.

나. 주요 시장경제 확립조치

(1) 사경영제 육성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쌀 경작에 지나치게 치중해 온 나라다. 식량문제에 대한 편향된 인식은 자원 활용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

³⁸ 위 두 가지 법으로 국가은행은 인허가와 은행업무관련 규정 제정 등 은행제도 전반을 통괄하는 감독기구의 권한을 갖게되는 반면, 특수은행의 민영화와 민간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³⁹ 국가은행은 신용정책 및 통화정책만 담당해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은행의 산업·상업대출부를 상공은행으로 전환하고 농업신용부를 농업개발은행으로 분리, 상업은행의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고 식품공급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⁴⁰ 이에 1980년 초 베트남은 생산계약제를 도입하고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대하게 된다.

1986년부터는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지에 대한 정부 수매 할당량을 5년 동안 고정시키는 한편,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수매가격을 재평가했다. 정부계약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자유시장에 매각하거나, 정부와 상호협의를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했다. 1988년 농지사용권을 최소 15년간 보장하고, 작물선택과 잉여생산의 자유처분권을 허용하는 한편, 생산 목표제를 폐지했다. 협동농장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개간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생산과 농업생산물의 판매와 구매에서 다가격 체제를 폐지, 단일가격을 실현했다.

기존의 국유 및 집단소유 외 사적 경영, 개인영업 등 다양한 소유주체를 인정하는 다부문 소유제도를 도입했다. 사경영제를 육성하기 위해 1990년 사기업법을 제정했다. 1992년 신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 및 상속권을 인정하고 사기업의 활동을 명문화했다.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단위를 가계를 기초로 하는 생산단위로 재조직했다. 국내에서의 쌀 거래 자유화, 생산물의 시장판매도 허용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농업개혁에 힘입어 베트남은 태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⁴¹

⁴⁰ 구성열 외,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5), p. 69.

⁴¹ 이서행, “베트남의 도이모이정책의 성공경험과 북한사회 개방의 전망,” 『베트남 개방정책 성과와 북한사회에서의 함의』(통일교육원 연구용역(2003), p. 84

(2) 분권화 조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효율적 분권화 조치가 베트남의 개혁 성공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는 민간부문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수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분권화를 위해 베트남이 단행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과 임금제도 부문에서 가격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중앙정부가 모든 가격을 결정하던 방식을 탈피, 개별경제주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한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가격제를 도입⁴²했다. 「도이머이」 정책 이전의 가격현실화가 정부고시가격과 자유시장가격간 격차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도이머이」 이후에는 이중가격제도를 탈피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거 국영기업들이 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도이머이」 이후에는 원자재 고시가격을 희소성에 근거해 조정했다.

둘째, 가격개혁과 더불어 실질소득 감소방지를 위한 임금개혁을 단행했다. 임금개혁을 통해 소비자 가격보조정책을 폐지하고, 국영부문의 실질임금을 인상,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실현하려고 했다.

셋째, 재정부문의 개혁을 추진, 경제의 정상화를 촉진했다. 국영기업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축소하고, 중앙정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매매하던 체제로부터 매매 당사자간의 협의가격으로 매매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국가공무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식량과

참조.

⁴² 1989년 이후 전기, 석탄, 시멘트 등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 부문에서만 국가가 가격을 고시했다.

생필품을 배급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월 급여를 화폐로 지급, 필요한 곡물이나 생필품을 자유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 국영기업 개혁

1979년 이미 베트남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료의 개입 축소하고 독립채산제를 적용했다. 국영기업이 생산량에 따른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보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적인 규제와 조치로 통제해 왔던 경제관리방식을 전환, 국영기업에게 생산, 분배, 금융 등과 관련된 자율권을 부여했다. 국영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고 소비자나 고객들에게 생산물을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국가가 제시한 목표량을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1986년 「도이머이」 이후에는 국영기업에 대해 보다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완화, 국영기업의 차입과 투자를 통한 자본 조성, 노동자 고용 및 생산물 판매의 자율권을 부여했다.

(4) 재정개혁

개혁 이전 베트남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정부재정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낭비와 비효율이 극심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통화증발이 빈번했다.

베트남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세계 및 정부지출체제를 전환하는 것이었다.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재정수입은 조세제도를 통해 확

보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완화와 보조금 삭감 등의 국유기업 개혁정책과 매출세와 농업세, 관세 도입 등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다. 매출세와 이윤세를 대체할 부가가치세(VAT)를 도입, 법인소득세법 개정 등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국가공무원을 줄이고, 『계산기본법』도 제정했다. 장기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사회 안정과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민간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부정부패 척결해 나갈 정책적 과제를 추진했다.⁴³

(5) 가격 및 금융제도 개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이 새로운 임금과 가격정책의 실시였다. 가격개혁은 가격 현실화와 함께 가격통제로부터의 완전탈피를 의미한다.⁴⁴ 가격개혁의 목적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만연했던 초인플레이션의 고리를 끊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데 있었다. 1985년 베트남은 국가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임금·재정개혁을 추진했다. 공정가격과 시장가격간의 격차 축소, 전시배급제 폐지, 무역자유화 실시(1987년) 등을 비롯, 전력·숙박 시설·약품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국가통제가격을 폐지(1989년)했다. 1993년부터는 에너지, 수송비, 수입 자본재 및 원재료 등에 한해서 적용하던 국가통제가격을 폐지했다. 이에 따

⁴³ 권을, “베트남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보고서, 1997), p. 95.

⁴⁴ 구성열 외, 『베트남의 남북경제 통합에 대한 시사』, p. 59.

라 베트남에는 현재 거의 모든 상품 가격이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금융개혁은 근대적인 금융제도를 육성하고 투자자금의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1990년 10월 신은행법의 제정,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1992년부터는 실질 이자율 도입과 신용확대에 대한 규제 완화⁴⁵ 등을 추진했다.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완화하여 새로운 민간 및 관민합작은행을 설립하는가 하면 1995년 6월에는 정식으로 국책시장을 개설했다. 증권거래소 개설과 함께 일본의 우편저금제도를 본 뜬 체신예금제도도 도입했다.

(6) 대외개방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대외경제 측면에서 베트남은 비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자국 경제에 필요한 물자 공급과 해외직접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1988년의 ‘외자유치법’은 베트남의 산업발전에 긴요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환율의 현실화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해외직접투자(FDI)의 중요성을 인식, 베트남은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듬해부터 발효시켰다. 1990년, 1992년, 1996년, 2000년 등 수 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다양한 우대조치를 적용⁴⁶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

⁴⁵ 그 이전에는 은행예금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보관 수수료를 공제했다.

⁴⁶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p. 60.

선했다. 최근에는 기존의 수출가공기지(EPZ) 육성정책을 공업단지 육성정책으로 전환했다.

베트남은 투자진출에 적극적인 국가들과 각종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1997년 상반기까지 한국과 호주 등 28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26개국과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도이머이』가 본격화된 1989년 이후 베트남은 대외통상정책으로 무역회사 설립을 자유화하고, 수출보조금 폐지, 라이선스 및 수량제한(쿼터)의 완화, 환율절하 및 현실화 등 일련의 제도를 단행했다. 또한 종래 모든 개별 수입에 대해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했던 것을 1996년 2월부터는 수입금지품목 외는 수입허가증을 폐지했다. 수입수속도 간소화했다.

베트남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출확대와 수입억제에 두어졌다. 수출의 경우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수산가공품, 천연자원을 비롯, 섬유, 의복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등 전략 상품의 해외시장 수출확대에 주력했다. 수입의 경우에는 컬러텔레비전,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와 화장품, 양주 등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는 고관세 정책과 밀수방지를 병행했다.

베트남이 대외 개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큰 몫을 차지했다. 1995년 1월 미·베트남은 양국간 대표사무소 개설과 동결자산반환협정 체결에 이어 20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했다.⁴⁷ 그리고 1997년 3월 미국과 베트남 전쟁전 미국이 남베트남에 제공한 차관(각종 도로와 발전소 건설, 수송선박 도입 등에 쓰임)에 대한 채무변제협상을 타결했다.

⁴⁷ 위의 책, p. 38.

미국은 1997년 12월 베트남이 베트남전 당시의 실종미군 유해송환 작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이민정책을 완화하고 무역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미국의 최혜국(Most Favorite Nation: MFN) 부여 등 무역특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 수 있었으며, 양국간 경제관계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미·베트남 수교재개 및 국교정상화는 미국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확대는 물론,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여타 선진국 기업들의 대 베트남 투자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베트남으로서는 미국과의 미수교라는 가장 큰 정치·외교적인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국관계의 정상화로 베트남과 미국간 무역은 크게 확대될 수 있었고, 국제사회의 대 베트남 투자도 1995년 이후 급증하게 되었다.⁴⁸ 2000년 7월 미·베트남간 무역협정체결로 양국은 관세인하, 지적재산권보호, 투자장벽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⁴⁹

다. 베트남 개혁·개방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베트남 개혁·개방의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에

⁴⁸ 김성철·김영운 외,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141.

⁴⁹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p. 45.

기반을 둔 총체적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변화는 먼저 민족자결과 독립을 내세우면서도 적대적이지 않은 외국인과의 선린을 강조하는 「호치민주의」에서 비롯된다.⁵⁰ 보수적 인사들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함으로써 보·혁간의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인물교체에 따른 권력투쟁과 동요를 차단할 수 있었다.

둘째, 농업부문의 개혁과 경공업의 우선적 발전 노선을 채택하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의 재조정을 단행했던 점이다. 기존의 사회주의 공업화론에 입각한 대규모 생산체계 건설 및 중공업 우선 육성정책에서 농업의 발전, 소비재 생산확대 및 수출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국가경제와 산업구조로 재조정을 추진했던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는 국영, 집체경영, 공사합영, 자본주의 합영 및 개인경영 등 5가지 경영형태가 존재하는 기업구조를 구축한 것이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효율적 대외경제개방을 추진했던 점이다. 베트남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동남아 국가연합 국가 및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자본 및 기술도입을 위한 서방과의 경제관계를 크게 확대했다. 대소련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창구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국영회사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수출증대를 꾀하는 한편, 수출가공구를 설치했다. 수출가공구의 전국적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제금융기구 지원 및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에 의한 외자유치를 비롯, 서구 자본 유입을 위해 대미 관계개선에 주력⁵¹했다.

⁵⁰ 김성철·김영윤,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p. 145.

⁵¹ 베트남은 1990년대 초 캄보디아 문제를 비롯, 안보문제를 미국에 양보하는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 베트남은 국제개발기구들로부터 빈곤퇴치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 빈곤층은 1980년대 중반의 약 70%에서 1993년에 5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UNDP 2001). 1998년에는 다시 38%로 감소했다. 도시 빈곤층은 1993년 25%에서 1998년 9%로 감소했다. 농촌은 같은 기간에 66%에서 45%로 감소했다. 빈곤 문제의 개선은 베트남 사회를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베트남의 지니계수는 1993년 0.33, 1998년에 0.35로 태국 0.41(1995년), 브라질 0.59(1995년), 러시아 0.48(1993년)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⁵² 2001년 세계가치관 조사의 일환으로 베트남에서 실시된 가치관 조사⁵³에 의하면 베트남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주민들은 「도이머이」 정책에 대해서도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응답자의 63%는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이 수치는 동유럽 주민들보다 높다. 중국, 멕시코, 칠레, 스페인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와는 비슷한 수치다. 베트남 주민들은 정부기업보다는 개인기업을 훨씬 더 선호한다. 정부기업을 선호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19%에 지나지 않으나, 사유기업 제도를 선호하는 사람은 81%나 된다. 개인들간의 경쟁, 개인간의 불평등 등에 대한 지지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

등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다.

⁵² 한도현, “도이머이 이후 주민복지의 개선과 북한사회에의 시사점,” p. 151 이하 참조.

⁵³ 베트남 전국을 대상으로 성인 1,000명을 무작위표집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는 2001년 9월과 10월에 실시되었다. 한도현, “도이머이 이후 주민복지의 개선과 북한사회에의 시사점,” p. 151에서 재인용.

자의 60%는 소득균등보다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차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베트남 경제개혁의 부작용: 관료부패를 중심으로⁵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제국보다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나 후진국에서 보다 많은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 사회에서도 부패가 많을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하다. 그러나 베트남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적어도 통일 전까지는 부패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1954년부터 공산당 지배하에 있었던 북부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부패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한 남부와는 달리, 북부는 통일 이후 남부로부터의 영향과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도이머이」로 인해 급증하는 부패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이 당 관료들로 하여금 혁명적 계율을 상실한 채, 점차 개인적 이익이나 물질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베트남 전쟁 시 북부 법원들이 일년간 처리한 부패사건이 단지 5~7건에 불과했으나, 통일 이후 공산당이 자유시장경제로에 개혁을 추진하기까지 1,800%, 그리고 1988년까지는 무려 2,230%나 증가했다.⁵⁵ 문제는 이들의 부패가 점차 대형화 조직화되었다는 점이다.⁵⁶ 즉, 거액의 횡령이나 뇌물을 수반하는 부패행위가 체제 전반에 걸쳐

⁵⁴ 고용권, “베트남의 통일과정의 특성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p. 17 이하 참조.

⁵⁵ 위의 책, p. 17.

⁵⁶ 위의 책, p. 17.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에서의 관료부패는 1990년대 초반에는 국가재산의 횡령, 밀수, 불법상품의 교역, 세금사기 등의 형태를 띠었으나, 최근에는 예산 및 소득 관련 법규의 위반, 합작기업의 남용, 부동산 및 건설에 관한 정부규제 위반, 예산의 불법적 전용, 부적절한 경비 지출, 소득 및 경비지출의 위반 등 새로운 유형을 띠고 있다. 특히 건설자본의 취득이나 합작기업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행위는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⁵⁷

1990년 베트남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부패운동을 전개했으나, 그 후 오히려 부패가 더 증가되었다. 뇌물이 없이는 일자리 찾거나, 건축허가를 얻는 일, 병원치료를 받는 일, 어린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는 일, 해외여행을 위해 비자를 받는 일, 사업허가나 수출입허가를 얻는 일 등이 어려워졌다.⁵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부패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반응도 비교적 단순하고 방어적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관료부패를 간헐적,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그리고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부패가 점차 확산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르러 악화된 국민적 여론을 의식하여 비로소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대대적인 부패추방 운동을 전개한 이래 매년 수천 명의 관료를 대

⁵⁷ 김호선, “베트남 사회주의 개혁(Doi Moi)과 관료부패,” 『한국정치학회보』, 제 30권 4호 1997 p. 386.

⁵⁸ 고용권, “베트남의 통일과정의 특성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p. 18.

상으로 한 부패행위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1992년 말에는 “반부패 및 밀수의 해”로 설정, 부패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대개 선언적 혹은 상징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⁵⁹

베트남 관료부패의 요인을 분야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베트남의 관료부패는 1980년대 “관료주의 중앙집권주의와 국가보조체제”에서부터 비롯된다. 관료주의 중앙집권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중앙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의존케 했다. 중앙정부가 다양한 생산규범이 담긴 계획안을 만들어 이들에게 강요했다. 정부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모든 원료 및 부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원료나 부품을 얻기 위해 경제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기업이 스스로 실질 생산능력을 속였으며, 국가에 바칠 생산량을 적게 배당받기 위해 비밀협상을 했다.⁶⁰ 보조금 지급과 이중가격체제는 베트남 공산 정부 경제정책의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상품의 시장가격과 정부가 가격을 설정해 놓고 양자간의 차이를 보조금을 통하여 보전해 주었다. 기업은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된 가격의 상품을 비싼 값으로 암거래 시장에 내다팔거나, 다른 기간요원이나 근로자에게 배분하거나 혹은 다른 기업이 상품과 교환함으로써 이득을 취했다. 국가는 관료들의 비리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관료들은 항상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

둘째, 정치·행정체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 베트남의 경제체제는 정치·행정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베트남의 정치·행정체제는 국가 관료에 대한 무책임, 언

⁵⁹ 위의 책, p. 18

⁶⁰ 위의 책, p. 19

론통제, 사법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당관료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했다. 관료들의 비리나 부패행위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통제나 내부고발행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당료들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재판을 받도록 하기 보다는 내부조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쉽게 사면했다. 당관료들, 특히 정치적 연계를 지닌 관료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전보나 승진기회의 박탈, 심지어는 무고죄로 처리, 봉쇄·차단했다.⁶¹ 이러한 정실주의적 행정형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친밀한 혈연, 지연관계가 지역사회의 행정관리에 악영향을 주었다. 지방정부의 행정관계나 권위체제가 친척관계나 이웃관계로 대치됨으로써 관료부패를 조장했다.

셋째, 법의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민법, 형법, 민영화법, 외국인 투자법 등 비교적 다양한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조직이나 기업의 설치에 관한 절차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베트남이 뚜렷한 법적 장치 없이 자유시장체제로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적 혼란 및 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많은 허점을 남겼음을 의미한다. 부패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법적 대응이나 가벼운 처벌도 사법기구의 정치적 종속도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⁶²

⁶¹ 김호선. “베트남 사회주의 개혁(Doi Mou)과 관료부패”, p. 277.

⁶² 위의 책, p. 380.

IV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혁부작용 : 실태와 평가

1.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북한의 경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1998.9.5)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 개정상의 경제관련 조항들은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헌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고수하면서도 생산수단의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경제관리에서의 독립채산제 명문화 및 수익성 적용, 대외무역의 국가감독권 폐지 및 특수경제지대 장려, 주민에 대한 거주·여행의 자유부여 등 암묵적인 사적 경제활동을 현실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⁶³

북한은 우선 헌법개정을 통해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비중을 제고하고 부서를 통폐합, 부서장들을 기술관료들로 충원했다. 부총리를 대폭 감원하고 상급 기관으로서 부작용이 많았던 「중앙위원회」를 폐지시켰다.⁶⁴

사회주의 헌법개정에 따라 북한이 추진한 경제개혁 관련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⁶³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한다.

⁶⁴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내각이 국방을 제외한 국가의 모든 행정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 하도록 한 것은 북한 경제관리 '개선'의 시사점이며 내각책임제 강화는 정경분리의 맹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와 경제사업책임기관인 「행정경제위원회」로 나뉘어졌던 이원적 체계가 「인민위원회」의 일원화되고 도당 책임비서가 인민위원장을 겸하던 관행을 고쳐 양자를 분리한 것도 지방에서의 정경분리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즉 지방 정부 기구를 단순화하고 지방 경제사업에 대한 책임권한을 일체화시킴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당 책임자가 인민위원장을 겸함으로써 나타나는 지방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간섭 행위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1) 개선된 가격체계 마련

첫째, 제품사이의 가격균형을 정확히 맞추고 제품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가격체계가 마련됐다. 북한에서의 상품가격은 계획가격이다. 일단 제정된 가격은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며 통제적이다.⁶⁵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와 가격간의 괴리현상을 나타내 정확한 계획수행 실적의 평가, 합리적 경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북한 내 물자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제도권내 국정가격에 의한 정상적인 유통은 위축되는 대신, 암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기존 북한의 가격체계 및 질서가 올바른 경제운용을 어렵게 할 정도로 문란해지기도 했다. 북한은 이에 「국가가격부서를 내오며 가격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발표 50주년을 맞아 「당의 가격 일원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발표, 가격통제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관계, 제품의 질에 따라 값을 높일 것은 높이고 낮출 것은 낮추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임을 강조했다.⁶⁶ 이 같은 조치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자유화 조치와는 큰 괴리를 보이는 것이기는 하나, 사회주의 계획가격체계를 정상화하고 극심한 가격질서 문란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나름대로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⁶⁵ 북한의 가격은 공장·기업소에서 작성·제출한 ‘가격제정신청서’를 해당 가격제정기관인 중앙 및 지방의 가격제정위원회에서 심의·비준하는 절차로 결정되고 있다. 상품에 투하된 사회적 필요노동에 기초하여 정하되, 정책적으로 대중 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정하고 기호품, 사치품 등은 높게 정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2 참조.

⁶⁶ 『로동신문』, 1996년 11월 25일.

(2) 소유주체 관련 개선조치

둘째, 생산수단의 소유주체와 관련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구헌법에서는 국가, 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했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국가, 개인 외 사회협동단체로 규정, 사회단체에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상사들도 포함시킴으로써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했다(개정헌법 제20조). 예를 들어 종래에는 트랙터 등 「농기계」를 국가만이, 「농기구」는 협동단체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개정헌법에서는 사회협동단체도 「농기계」 소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제22조).⁶⁷ 이와 함께 ‘교통·운수’ 부문에서 국가 소유 대상을 ‘철도·항공 운수’로 한정시킴으로써 도로 및 해상운수 부문을 국가의 배타적 소유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았다(제21조). 이는 도로 및 해상 운수분야에서의 건설 및 운영사업에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도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종래 소비재의 개인소유 주체를 「근로자」로 제한했으나, 개정헌법에는 「공민」으로 규정, 소유주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소유를 인정했다(제24조).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소유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텃밭 경작을 통한 이윤뿐만 아니라 농민시장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적 이익도 인정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암시장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개인소유에 속하는 물건들은 상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시장거래의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⁶⁷ 아울러 1992년 헌법에 명시된 ‘부림집승’과 ‘건물’을 삭제한 것은 가축, 주택,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적 소유 및 거래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명봉, “북한 개정 헌법(1998.9.5)의 경제 조항 변화의 고찰,” 『통일경제』(1998), p. 43.

(3) 기업의 자율성과 채산성 중시

셋째, 기업의 자율성과 채산성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개정 헌법은 기업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강화,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 생산성 제고 및 품질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개정 헌법은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을 규정함으로써(제33조), 기업관리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았다. 또한 공장·기업소의 지배인과 기사장이 이 규정을 어기면 헌법 위반 사범이 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제는 지배인과 기사장 등 경제 간부들이 기업 관리에서 독립채산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 문항도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종래에 허용되지 않았던 공장, 기업소의 의사결정권이 포함된 독립채산제의 실시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경제관리에서 원가(cost), 가격(price), 수익성(profitability) 등을 고려한다는 문항은 물량 위주의 생산에서 채산성을 염두에 두는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제33조).

(4)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확대·적용

넷째, 생산 기여도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앞서 언급했듯이 종래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함께 ‘합법적 경리활

등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로 추가 허용(제24조)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개인사업 등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물질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놓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우선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의 개선·강화를 들 수 있다.⁶⁸ 분조관리제⁶⁹는 1965년 5월 김일성이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현지도에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였다는 농촌경리의 내부관리 형태로서 같은 해 11월 15일~17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식 채택되고, 이듬해인 1966년부터 북한 전역의 협동농장에서 적용·시행되어 왔다.⁷⁰ 연간 농업생산계획을 10명~25명으로 구성된 분조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분조에 대한 분배는 연말에 생산실적에 따라 노동력 일수를 계산해 확정하는 것이다. 분조관리제는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인센티브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보다 많은 초과분 할당을 의식한 생산실적 과대평가와 비현실적인 생산목표 설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1970년대 초반부터는 거의 유명무실화했다. 1996년 3월부터 북한은 분조관리제를 다시 개선·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분조규모를 10명~25명에서 7명~8명으로 축소하고 작업반 단위로 운영하던 「우대제」를 분조에 직접 적용하며, ②생산계획을 하향조정하여 과거 실적을 감안한 것이었

⁶⁸ 위의 책 p. 26.

⁶⁹ 이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p. 651 참조.

⁷⁰ 북한은 '협동경리'의 약점인 책임성과 노동의욕의 결여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1960년대부터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해 왔으나 보통 150여명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은 규모가 커 효율적 통제나 독려가 어렵다는 점에서 세분한 '분조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동향 3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148~149.

다.⁷¹ 또한 ③초과분의 자유처분권을 인정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초과분 자유처분권 인정은 분조원에게 할당되는 초과분에 대해 상거래 등 자유처분을 허용한 것이 동 제도개선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그동안 공식적인 식량거래를 금지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분조관리제 강화조치가 종자나 비료 확보 등이 협동농장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조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주의 농업 증산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생산 의욕이 고취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대외교역 강화

다섯째, 북한은 기존에 추구했던 대외경제정책 노선에서 벗어나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국제경제체제에의 참여를 통한 점진적 개방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먼저 북한은 대외 무역의 주체를 국가 독점에서 사회·협동단체로 확대, 이들 단체들도 무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외 무역의 자유화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와 특수경제지역의 시장화에 대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합영·합작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가했으며 교역 대상국과 교역 품목 확대를 위한 무역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이

⁷¹ 최근 3년간의 평균 수확고와 그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고를 합하여 다시 평균한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1996년 생산계획은 각 분조의 1993년~1995년 평균 수확고와 1993년 이전 10년간 평균 수확고를 합쳐 둘로 나누는 양보다 약간 낮게(통상 10%) 책정함으로써 초과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미 1997년 6월 중국과의 교역을 겨냥, 중·북 국경지대에 위치한 원정리에 자유교역시장을 개설한데 이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바꾼돈표’ 사용을 폐지하고, 달러 환율의 조정, 지대내 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적용 등의 경제특구의 시장화를 위한 경제조치를 취했다. 동 지대에서는 일반화폐만이 사용되며, 외화는 일반화폐와 직접 교환되었다. 외화 교환비율은 1달러당 150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교환비율이 결정될 것임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나진·선봉지대에서 취한 ‘외화와 바꾼돈표 폐지 및 환율조정, 기업의 독립채산제 채택 등의 조치는 제한 지역에서만 시장경제원리를 부분 수용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경제개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² 그 밖에도 개정 헌법에는 특수경제지대에서 각종 기업의 창설·운영을 장려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나진·선봉 특구 이외에도 남포, 원산 보세가공무역지대, 신의주, 해주, 금강산 등에 경제특구를 확대·운영할 가능성을 이미 시사하기도 했다.

이상의 경제개혁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⁷² 민족통일연구원, 『북한동향 6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97. 임강택은 1996년 6월부터 북한이 특수경제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프로그램은 ①법률과 규정 보완 ②유통통화의 일원화와 환율의 현실화 ③개인기업의 설립 허용과 고영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도입 ④자유교역시장의 개설 ⑤개방지역 관리 담당 인재육성 ⑥인프라 정비 및 신설 등 6개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37~38.

<표 IV-1>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7·1조치 이전)

분야	내용
가격	- 상품의 수요와 공급 관계 반영 개선된 가격체계 설정, - 제품의 질에 따른 가격 조정
소유주체	-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 개인 외 사회협동단체, 상사로 규정, - 소비재의 개인소유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확대 - 농민시장을 통해 얻은 개인적 이익 인정
기업	- 기업의 자율성 및 재산성 중시 및 독립채산제 강화 - 생산성 제고 및 품질관리 강조 - 원가, 가격, 수익성 강화
인센티브제	- 생산기여도에 따른 분배 원칙 확립 -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적 소유 인정
대외경제	- 국가독점 대외무역의 변화: 사회협동단체로 확대 - 자유경제무역지대 내 합영·합영회사 자유 설립 허가 - 달러 환율 조정

출처: 자체작성

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⁷³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라는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2002년 9월에는 ‘선군(先軍)시대 경제건설 노선’(국방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을 새로운 경제운영 방침으로 제시했다. 2003년에는 당·정의 비생산직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신진테크노크라트를 등용하여 세대교체를 추진했다. 2004년에 들어서는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군의 경제개입 축소를 지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①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공식 천명은 없으며, ②행정개혁이 동반되지도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7·1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 경제개혁 실태를 부문별로 나누어 그 내용과 특징을 진단하고자 한다.

⁷³ 이 부분은 김영운·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5)을 참고하여 작성.

(1) 경제관리부문

경제관리부문에서 나타난 개혁 실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1년 1월 북한은 ‘신사고’를 제기하면서 사회 전반의 의식·행동 변화를 독려하는 등 경제운영과 관련된 변화를 시사했다. 김정일은 “낡은 틀과 재래식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실천해 혁신을 이룰 것”을 주장했다. 이어 ‘종자론’⁷⁴·‘신자력갱생론’⁷⁵·‘단번 도약론’⁷⁶ 등 ‘신사고’를 보다 구체화한 각론적 개념을 개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김정일은 『경제관리개선방침』(2001.10)을 하달하여 7·1조치의 정치적·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경제관리개선방침』은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최대 실리를 획득’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동시에 계획의 분권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운용, 수익위주의 기업평가, 실적주의에 입각한 분배, 과학기술과 생산의 결합, 가격·임금의 재조정, 불합리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리 등과 같은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9월 북한은 국방공업 우선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새로운 경제운영 방침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간산업과 민생부문의 관리 운영 면에서 개혁 추진 논리로 활용했다. 국방공업·중공업 부문에서는 국가통제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나, 경공업·농업·상업부문에서는 시장지향적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혁명의 주력군을 군으로 규정, 군을 경제건

⁷⁴ 각 분야에서 단기간 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종자 개발(양어: 메기, 대용작물: 감자, 산업: 컴퓨터·IT).

⁷⁵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집단적 자력갱생으로, 과학기술 응용을 창조적 자력갱생으로 재해석.

⁷⁶ 과학기술 중시, IT산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단기간 내 경제발전을 달성.

설에 활용하는 한편, 시장요소 도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장애물을 해소코자 했다.

두 번째로 북한은 경제법령의 제·개정을 단행했다.⁷⁷ 2000년 이후 북한은 경제개혁·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선 2000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북한은 「인민경제계획법」(2001.5), 「손해보상법」(2001.8), 「상속법」(2002.3), 「농업법」(2002.6) 등 16건의 경제법령을 신규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경제운영 정상화를 도모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국가계획 작성과정의 융통성 인정, 「농업법」은 작업반 우대제 폐지와 분조중심의 영농관리, 「상속법」은 주택·자동차·저축 등 생활용 개인소비재의 상속 허용, 「손해보상법」은 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002년 7월의 경제개혁 조치 이후에는 물가 상승,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 시장기능 강화 등 경제현실 변화에 맞게 「외국투자은행법」(2002.11), 「회계법」(2003.3), 「재정법」(2004.4), 「상업법」(2004.6) 등을 보완했다. 확인된 경제관련 법률의 제·개정 건수만 해도 총 13건에 이른다. 「외국투자은행법」(18조)에서는 합영은행 등록자본금을 기존의 3,000만 원 이상에서 2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늘렸다. 「회계법」·「재정법」은 기업평가기준을 생산량에서 이윤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업법」에서는 자유로운 상거래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규정해 놓고 있다. 북한은 또한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지구법」, 11월 개성 및 금강산 특구 개발 관련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한

⁷⁷ 북한이 단행한 법률 중 절반 정도가 경제관련 법률로 『공화국 법전』(2000년) 103건 중 46건, 『대중용 법전』(2004년)의 경우에는 112건 중 48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2004년 9월까지 「개성공업지구법」 관련 11건, 「금강산관광지구법」 관련 9건 등 총 20건의 하위규정을 제정·발표했다. 북한 상품의 신인도 제고를 목적으로 「원산지명법」(2003.10)을 채택, 남북경협을 안정적 추진을 모색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북한은 당·정 인력을 정리하여 국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진 기술관료를 등용하고 세대교체를 진행하면서 이들을 개혁 주도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앙·지방 당 일부 조직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유급 당원을 대대적(20~30%)으로 축소하여 산업현장에 재배치하는가 하면, 내각 경제관료들의 인력구조를 전문화·년소화하는 가운데 은행·기업 책임자로 경영마인드를 갖춘 30대~40대 전문가(발탁 당시 나이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백현봉 47세, 무역은행총재 오광철 44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지배인 김형남 49세 등)를 발탁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채용 방식에서도 종전의 추천·면접 형식에서 정치·경제과목 등의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2004.1)하고, 무역종사자들은 외국어 및 재정·금융·국제상거래 과목 시험을 거쳐 채용토록 했다. 또한 당·군의 경제사업 축소,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 강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개혁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보장코자 했다. 당·군 등 비경제부문 기관이 운영하는 일부 사업체를 축소해 내각에 이관하고, 무역성 산하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내각 직속 기관으로 격상(2004.5)시킨 데 이어, 민경련 등 대남경협 기관들을 통합하여 내각 산하 성급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2004.7)하는 조치를 취했다. 통합 대상이 되었던 기관은 민경련(남북교역)·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개성공단)·금강산관광총회사(금강산관광특구) 등이었다.

(2) 거시경제

북한은 2002년 국가예산 징수 책임을 각 부문별 중앙기관에서 지방정권 기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예산제를 강화했다. 2002년 7월 가격(25배)·임금(18배)을 시장현실에 맞게 인상한 데 이어 8월에는 환율을 현실화(70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003년 3월 종합시장 개설과 함께 동년 6월부터는 「외화교환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03년 5월에는 산업투자 재원 확보 및 인플레이 조절을 위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했으며, 동년 9월에는 징세기관(집금소)를 신규 설치했다.

2004년 들어서는 기업에 대해 자체 생산물 가격 책정과 이윤 범위 내 임금 인상 지급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기업개혁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7·1조치」가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①가격·임금·환율의 자유화 확대, ②국가재정의 비중 축소 및 조세제도 시행, ③민간 상업은행 창설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가격·임금, 재정, 금융·외환 부문으로 나누어 거시경제 분야의 개혁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가격·임금

북한은 2002년 7월 물가·임금을 시장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면서 실적주의 임금제를 강화하고, 가격 책정권한을 하부 단위에 일부 이양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먼저 「7·1조치」를 계기로 이제까지 정책적으로 낮게 설정해 왔던 민생관련 상품·서비스의 국정가격(재정으로 보조)을 원가와 이윤이 반영된 수준으로 대폭 인상(평균 25배), 현실화했다. 식량배급제는 폐지하지 않았지만 배급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

1kg의 국정가격은 종전의 8전에서 44원으로 550배, 옥수수 가격은 6전에서 24원으로 400배 인상됐다. 평양의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은 종전 10전에서 2원으로 20배 인상됐다. 돼지고기는 kg당 7원에서 180원으로 26배, 전기료는 kWh당 3전에서 2.1원으로 70배 올라갔다. 평양~청진간 철도요금도 종전 16월에서 590원으로 37배 인상되었으며, 주택사용료도 지금까지 한 채에 5원~10원 정도였으나, 이를 평당 미터당 15전에서 월 6원~15원으로 인상, 웬만한 집 한 채의 사용료가 몇 백원이 되었다. 가전제품에도 10원~15원의 세금이 붙게 되었다.

<표 IV-2> 주요물가 인상 내용

품목	종전가격	인상가격	인상폭
쌀(kg)	8전	44원	550배
옥수수(kg)	6전	24원	400배
돼지고기(kg)	7원	180원	26배
계란(개)	17전	8원	47배
냉면(그릇)	10원	150~200원	15~20배
세수비누(개)	2원	10원	5배
선풍기(개)	100원	2,000원	20배
시내버스·지하철요금	10전	2원	20배
철도요금(평양-청진)	16원	590원	37배
전기사용료(kWh)	3.3전	2.1원	66배
주택사용료(㎡)	15전	월6~15원	40~100배
송도유원지(입장료)	3원	50원	17배

자료: 자체 취합 정리

둘째,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다.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 85원에서 110원 사이였던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대외무역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월급

은 15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광산노동자의 경우에는 무려 4,000원까지 인상됐다. 이와 같은 임금인상과 동시에 북한은 임금의 직업별 기업소별 지역별 그리고 성과급별 차등 지급을 강조했다. 임금의 부문·직종·기능등급(무기능·기능·고급)별 차등 인상(평균 18배, 월 2,000원)은 생산실적에 의한 임금지급 체계를 확립,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의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3> 주요 부문 임금인상 내용(월)

구분	인상전	인상후	인상폭
일반노동자·사무원	85원~110원	1,800원~2,000원	18배~21배
광산·탄광근로자	130원~140원	3,000원~4,000원	23배~29배
대학교수	200원	4,000원~5,000원	20배~25배
일반교원	120원	2,880원	24배
의사	80원~150원	1,200원~2,250원	15배
군인·특수기관요원	150원~250원	1,500원~2,500원	10배
당일군	170원	850원	5배
기자·방송원	150원~200원	4,500원~6,000원	30배

자료: 자체 취합 정리

『조선신보』(2003.1)에 따르면 북한은 “4인 가족 1세대 중 2명이 노동에 종사한다는 전제하에 생활비가 4,000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1인당 임금을 2,000원, 농민은 2,300원 가량으로 산정”했다고 한다. 2003년 3월 북한 국가가격제정국은 “계획을 80% 달성하면 기준임금의 80%를, 200%를 달성하면 200%의 생활비(임금)를 보장”토록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정가격에 있어서도 북한은 시장 수급에 기초하여 수시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가운데 일부 상품의 가격제정권을 지방과 공장·기업소에 부여했다. 북한 무역성

김용술 부상은 일본 방문 중 비공개 세미나(2002.9)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기초가격에 대해 국가는 경제관리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정만 한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가격의 변동폭을 5%~10% 수준으로 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강경순 『국가가격제정국』(2003.3) 또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국정가격을 제때 조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2003.3), 시장가격을 통한 거래를 허용했다. 사실상 2중 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과 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식당 및 종합시장에서의 거래는 시장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합의가격(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는 품목별 최고한도가격을 고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면서도 동(同)가격 범위 내에서 상인들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당국의 최고한도가격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로 기업 채산성과 주민 생활고가 가중되자 북한은 가격·임금 제정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추가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공장·기업소가 자체 생산한 소비품 가격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업소가 가치분 이윤 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부 경제단위의 임금지급 권한을 보다 확대했다.

북한이 『7·1조치』를 추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금과 물가인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 인상을 통해 구매력 제고 효과를 가져오게 함은 물론, 임금의 차등 지급이 북한 주민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은 몫을 분배하는” 원칙이 작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치의 배경을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지금까지 명목상으로 “나라가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책임적으로 보장”했다고 하면서 모든 재화의 가격이 공짜는 아니었지만 “그 값이 너무 낮아서 인민들 속에서 공짜나 같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의 무상에 가깝던 식량 등의 가격을 암시장 가격수준으로 올리고 동시에 노동자 임금도 20배~30배 정도 차등 인상하면 “생산자들의 노동의욕이 높아져 나라의 경제를 빨리 추켜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고살기 더욱 힘들게 될 것”이며, 공장이나 기업소도 국가가 세운 경제계획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집행하고,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 또한 산업현장으로 노동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현재 20% 정도로 낮은 공장가동률과 함께 개별 기업소의 자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효과를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조선신보, 2002.7.26). 이런 점에서 『7·1조치』는 사회주의 체제의 생산비효율성을 만회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경제체제의 생산저하를 시장이 아닌 국가에 의해, 즉 사회주의 체제의 테두리 속에서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7·1조치』의 부가적인 효과로 북한은 배급제에 따른 국

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점을 들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사들여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재화의 희소성이나 생산가격과는 상관없는 가격을 형성시켜왔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만 늘어나고 재화에 대한 수요와는 연계되지 않은 채 공급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자원 분배에 있어 왜곡이 있었다. 실제 가격으로 맞출 경우,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재정

재정분야에서 나타난 개혁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2002년 7월의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각종 보조금 폐지·예산제 기관 축소·새로운 재정 수입 항목 신설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무상에 가깝던 쌀·주택·에너지·운수 서비스 가격을 현실화하는 한편, 가격 보조를 위해 지출되던 재정을 축소했다. 또한 토지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추가 세원 발굴에도 힘썼다. 국가예산에만 의존해 운영되는 예산제 기관에 수익 사업을 허용했다. 「재정법」 제30조를 개정(2004.4), 북한은 기업소 구분에 있어 반독립채산제를 추가(구법: 예산제와 독립채산제로만 구분)했다.

둘째, 국가의 재정 수입·지출 항목을 조정했다. 국가납부금을 ‘변 수입’에 기초하여 징수함에 따라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을 폐지, 이를 직접세 성격의 「국가기업이득금」에 통합시켜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수입의 원천을 단순화했다.⁷⁸

⁷⁸ 최고인민회의(2002.3)는 2003 예산수입 가운데서 「국가기업이득금」이 77.6%로서 사회주의 국영경리에서 이루어진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고

이어 「재정법」 제13조를 개정(2004.4), 예산수입 원천을 「국민소득」으로 수정(구법: 거래수입금·국가기업이익금·협동단체 이익금·봉사료 수입으로 명시)했다.

셋째, 「감가상각금」을 2002년부터 기업소에 재투자 자금으로 유보토록 한 데 이어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2004.4 「재정법」 제36조)화했다. 이는 재정적 측면에서 기업이 경영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의미한다. 최고인민회의(2002.3)는 “지금까지 예산수입으로 받아들이던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기업소에 남겨놓고 생산확대 기금으로 사용”토록 했음을 밝힌 바 있다.

넷째, 종전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던 기업 재투자 자금의 일부를 기업이 자체 조달(2004.4 「재정법」 제32조)토록 함으로써 재정지출 요인을 축소했다. 이에 앞서 2000년에는 「인민경제비」 내의 「추가적 시책비」(주로 가격보조금)를 「사회문화비」와 합쳐 「인민적시책비」로 변경한 바 있다.

다섯째, 예산수납체제와 관련, 북한은 2002년부터 「부문별 수납체제」(성·관리국이 예산 징수)를 「지역별 수납체제」(지방인민위원회가 예산 징수)로 바꾸는 한편, 「지방예산제」를 강화, 국가의 재정확보·지방보조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역내 기업소에 대한 예산징수 권한을 지방인민위원회에 일임하면서도 일정액을 중앙에 의무 납부토록 했다.⁷⁹ 반면, 지방에 예산편성 과정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지역 주민들의 사회보장

한 바 있다.

⁷⁹ “지역별 수납체제는 예산 소속과 부문에 상관없이 모든 공장·기업소가 지방 정부를 통해 예산을 납부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연구』 2002년 2호.

·보험을 담당토록 조치했다. 『경제연구』(2002년 2호)는 “새로운 지방예산 편성방법은 지방별로 국가납부 몫을 정해주고 해당 예산집행 단위가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섯째, 국가예산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예산수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했다. 2005년 『국가예산수입법』을 제정(2005.7), 예산수입 항목뿐만 아니라 각 항목의 정의, 납부대상, 계산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했다. 북한의 예산수입은 ①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⁸⁰ ②감가상각금, ③토지사용료,⁸¹ ④사회보험료, ⑤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⑥기타수입금 항목으로 구분된다.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 재정기관에 판매수입계획, 원가계획, 소득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 은행돈자리번호 등을 규정한 예산납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데, 북한은 이들 자료를 근거로 예산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산수입법』 제정으로 북한은 예산수납의 법적 근거를 마련, 국가예산 수납 관행을 개선하고는 있으나, 납부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성적 시장활동이나 부정부패가 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⁸⁰ ‘이득금’은 종래의 ‘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을 통합한 것으로 예산납부 계산 기준을 ‘변수입’으로 일원화하여 계획의 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득금 = 확정수익(총판매수입-비용) X 납부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2002년 3월 27일 재정보고에서 2002년 국가기업이득금이 총예산수입의 77.6%라고 발표한 바 있다.

⁸¹ 토지사용료는 2006년부터 ‘부동산사용료’로 확대 개편, 국가소유인 도로, 강하천, 호수, 산림, 지하자원 등의 부동산을 이용한 대가를 국가예산에 납부하고 있다.

1) 공채발행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환수된 자금을 경제발전에 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⁸² 이의 대표적인 조치가 공채발행이다. 2003년 3월 27일 “2002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03년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면서 북한은 인민생활공채의 발행을 표명했다.⁸³ 인민생활공채의 발행은 대외적으로는 “여유화폐 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기 위한”⁸⁴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개혁조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데 대한 대응조치였다.

인민생활공채는 2003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말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판매기간은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⁸⁵이며, 판매방식은 “도, 시, 군들에 비상설 「인민생활공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아래에 「인민생활공채상무」를 두어 추진했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리, 읍, 구, 동사무소들이 「공채협조상무」를

⁸² 은행은 분기마다 내각의 비준을 받아 현금유통 및 대부계획을 확립함으로써 현금의 유출입량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유통의 국가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주민화폐수지균형표’를 비롯, 국가예산계획과 중앙은행의 대출계획 및 현금계획, 기업소의 재정계획, 국가종합재정균형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리원경, “화폐자원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3년 4월.

⁸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함에 대하여-내각홍보,” 『로동신문』, 2003년 3월 29일.

⁸⁴ 북한은 내각공보를 통해 “인민생활공채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상환을 담보하는 국가신용의 형태로서 철두철미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동신문』, 2003년 3월 2일.

⁸⁵ 3개월로 공채판매가 추진되었으나 2003년 8월 18일 조선중앙TV가 공채판매사업이 계속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함으로써 판매사업의 기간연장이 확인되었다. 『조선중앙TV』, 2003년 8월 18일.

조직”⁸⁶하도록 했다. 공채판매와 관련,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채판매 전담기구를 신설, 할당 및 헌납을 유도했다.

인민생활공채는 추첨에 의해 당첨금과 원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며, 첫 2년 동안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첨되지 않은 공채원금은 2008년 12월부터 매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채의 유효기간 말까지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인민생활공채는 이자를 주지 않고 추첨해서 당첨금과 원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이다.⁸⁷ 당첨상환금은 7등급으로 나누어 1,000원권에 대해 1등은 5만원, 2등은 2만5천원, 3등은 1만원, 4등은 5천원, 5등은 4천원, 6등은 3천원, 7등은 2천원이다. 그리고 500원권의 경우는 1,000원권의 반액, 5,000원권은 1,000원권의 5배로 계산한다. 『인민생활공채』 판매수입금은 ①평양시 현대화, ②발전소 건설, ③토지정리, ④혁명사적지, ⑤객차생산, ⑥약수가공공장 건설 등에 우선 사용”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 2003.7).

공채발행 외 통화량 조절을 위해 북한은 은행이 분기마다 현금 유통 및 대부계획을 수립, 현금의 유출입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화량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⁸ 그 밖에도 2003년 9월 재정성 산하와 각 성에 『집금소(集金所)』라는 징세기관을 신규로 설치, 효율적인 예

⁸⁶ 『로동신문』, 2003년 3월 29일.

⁸⁷ 『조선신보』, 2003년 5월 7일.

⁸⁸ 조선신보와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과의 인터뷰. 『중앙일보』, 2003년 4월 2일.

산수납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동년 11월에는 재정기관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포괄적 재정·금융협의체인 「국가재정 은행위원회」를 「국가재정 금융위원회」로 개편(2004.4 「재정법」 제48조), 향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간의 보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⁸⁹

(다) 금융·외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단일 고정환율제 채택과 함께 환율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2002년 8월 국정환율을 폐지, 무역환율로 단일화하면서 미화 1달러당 2.2원에서 153원으로 70배 정도 인상했다. 또한 종합시장 등에는 「외화교환소」를 설치하고 내국인들에게 암시장 환율로 환전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2중 환율제를 운용해 오고 있다. 2002년 12월 1일부터 북한은 대외 결제수단을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하고 자국 내에서의 달러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전소에서는 미 달러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상점에서도 미화 달러가 통용되고 있다. 평양시 각 구역에는 외화교환을 전담하는 ‘협동거래소’를 운영, 민간이 소지하고 있는 외화를 동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⁹⁰

이상의 조치와 함께 북한은 해외 선진금융기법·금융개혁 경험 습득, 경제이론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개혁 이후 중국·

⁸⁹ 「국가재정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내각 부총리, 부위원장은 재정상·중앙은행 총재, 위원은 당·정·군 재정관계자 및 은행·계획·노동·통계부문 관료와 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⁹⁰ 『연합뉴스』, 2003년 6월 29일.

베트남·유럽연합(EU) 등지에 금융·보험·통상 분야 해외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대학교 경제교과서에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및 ‘현금유통 기반의 재정금융’ 등 시장경제 이론을 대폭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4년 9월 총 5장 47조로 구성된 『중앙은행법』을 제정, 중앙은행의 기능, 기구구성, 금융감독 등 금융관련 총칙적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1976년 산업은행을 중앙은행에 통합한 이후 단일 은행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앙은행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최소한 법적으로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은행법』에는 화폐발행,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지급결제업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나, 기업간 경제는 상업은행이 담당하고 중앙은행은 은행간 결제만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종전에는 국가예산자금의 수입 및 공급을 통한 기업 통제 기능을 중앙은행이 가졌으나, 중앙은행법 제정 이후에는 국가재정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국고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인에 대한 예금·대출업무와 국내 생명보험 업무도 중앙은행이 담당했으나, 이제는 금융감독 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은행은 또한 고정재산 등록 평가, 귀금속 관리 업무 외에도 금융기관과의 외환매매, 채권발행 등록관리, 금융정보 교환, 통계·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은행법』에는 금융제도상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지불준비금제도의 도입이나 기준이자율 도입 및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 형성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불준비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일부를 지불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제32조)하고 있으며, 기준이자율도 중앙은행이 결정하

고 금융기관은 기준 이자율 범위 내에서 예금 및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규정(제30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간 화폐의 사고팔기(제29조)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거래(제33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은행법』의 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자금 지원 의무가 있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하고 상업은행이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규모를 줄이고 시중 유희자금을 흡수하여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은 기존 계획경제의 틀을 바꾸는 금융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상업은행이 설립되지 않고 있어 실제 금융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의문시 된다.

(3) 산업부문

북한이 추진한 산업부문의 개혁을 농업, 기업, 상업유통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농업개혁

북한은 1996년 3월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기존의 노·장·청 배합(10명~25명)에서 가족단위(7명~8명)로 구성을 변경하고, 생산계획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면서 계획 초과생산물에 대해서는 분조가 자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2년 7월 이후에는 분조원 규모를 다시 4명~5명의 가족단위

로 축소하고 국가수매량을 감축했다. 2004년 1월부터는 포전담당제(가족단위 영농)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집단영농의 틀은 유지한 채 곡물생산·분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협동농장의 자율권 강화 및 영농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생산 및 분배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방식

생산방식 면에서는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집단영농의 비효율성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분조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협동농장에 세부 생산계획의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등, 농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 벼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을 협동농장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장의 작목 선택권도 확대했다.⁹¹

생산방식에서의 변화는 일부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가족단위 영농)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북한은 ‘집단영농 방식 완화 및 가족영농 시범실시’를 결정(2004.1)하고, 황북 수안 및 함북 회령 등지의 일부 협동농장을 선정, 분조를 가족단위(2가구~5가구)로 재편하고 농지를 할당하여 경작토록 조치한 바 있다.⁹² 그 밖에도 사경지를 확대하고 토지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⁹¹ 이와 관련 2003년 9월 국제구호단체인 「카리타스」 홍콩지부의 카티 젤웨이 국장은 “북한의 일부 농장은 과거와 같이 당국의 지시대로 강냉이만 심지 않고 자신들이 재배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다.

⁹² 2004년 12월 김용술 무역상 부상은 “협동농장에 분조를 보다 작게 하거나 포전담당제를 조직할 권한을 부여”했음을 밝힌 바 있다.

농지제도를 일부 개편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경지(개인 경작지) 허용 면적도 30평~50평(58년 지정)에서 400평(때기밭)으로 확대(2002.7)하고, 기관·기업소별 부업지를 소속 세대별로 분배했다.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유희인력 노동자들에게도 토지를 분배하여 경작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농지를 ①협동농장, ②기관·기업소 부업지, ③개인 경작지 등 3부류로 구분하고 토지사용료를 차등 부과(최저 53전~최고 60원/평)하고 있다. 토지사용료는 평당 1부류(농장)가 54전~36원, 2부류(기관·기업소)는 88전~60원, 3부류(개인경작지)는 12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분배방식

분배방식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식량 무상 배급제 및 2중 곡가제를 폐지,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이 특징적이다. 과거 북한은 곡물을 고가(쌀 kg당 82전)에 수매하여 저가(8전)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2002년 7월 이후에는 수매가(40원)에 수송비를 더하여 대폭 인상된 가격(44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7·1조치』에 따라 쌀의 수매가는 50배(82전→40원), 주민 공급가는 550배(8전→44원) 인상되었다. 또한 국가수매량을 축소하여 농민들의 생산동기를 유발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과거에는 수확량의 70%~80%를 국가에 납부하였으나, 개혁 이후 토지·관개용수·전기 사용료 및 생산비 명목으로 50%~60% 정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협동농장이 자율 처분할 있도록 했다. 2003년 결산분배 결과 “토지사용료와 생산비용이 총수입의 약 50%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⁹³

한편, 협동농장의 연말분배시 실적평가 단위를 작업반(80명~120명)에서 분조로 전환, 농민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개혁조치 이전에는 작업반별로 분배함으로써 분조들의 몫이 똑같았으나 지금은 분조별로 분배해 분조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3년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1인당 평균 6만원, 가장 많이 받은 분조에서는 12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히는 경우도 있다.⁹⁴ 그 밖에도 식량공급면에서 기관·기업소의 조달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축소해 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대, 당·정 간부, 평양시민 등 특수계층에는 국가가 식량을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 기준량(700g/일)의 절반 이하(300g/일)만 공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식량은 시장을 통해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조치했다.

(나) 기업개혁

북한은 2002년 7월 이래 국가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기업 자율권을 강화했다. 2003년에는 『회계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30대~40대를 기업책임자로 대거 기용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는 일부 공장·기업소에 대해 기업개혁 조치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기업부문 개혁조치는 경영전반에 대한 지배인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북한의 기업부문 개혁조치는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실시한 기업개혁 조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⁹⁵

⁹³ 청산협동농장 최영호 부위원장(2004. 1) 발언

⁹⁴ 조총련 월간지 『조국』, 2004년 2월.

북한의 기업관련 개혁의 특징을 ①경영관리, ②생산관리, ③재무관리, ④노무관리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경영관리면에서는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한 점을 들 수 있다. 2002년 경제개혁 조치시 북한은 종래 공장 당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던 기업의 경영권한을 지배인에게 이양했다.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지배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일부 공장·기업소의 생산계획수립·임금결정·노무관리 등에 대한 지배인의 경영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둘째, 생산관리 측면에서는 국가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의 자재조달 여건을 개선시킨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중앙계획 대상을 중요지표(공업 총생산액·건설투자, 전력·철강 생산량 등)로 축소하고 세부계획 수립권한을 지방과 기업에 위임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초과 생산품 및 자체 자재조달 생산품 등의 시장판매를 허용하면서 채산성 증대를 도모했다. 2004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기업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계획위원회가 전략지표·중요지표의 경우에만 「현물계획」으로 하달하고, 나머지는 「금액계획」으로 하달하고 있다. 현물지표는 톤·미터·마리·대수 등 현물단위로 표시되는 사용가치량을 일컫는다. 또한 「물자교류시장」에서의 자재 거래에 대해 기업간 직접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원자재구입 여건을 개선했다. 북한에서 자재는 기본적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

⁹⁵ 중국은 ①(1978~1983년) 이윤 유보제 및 기업자주권 확대, ②(1984~1986년) 이윤 상납→납세제, ③(1987~1993년) 청부 경영제(소유·경영 분리), ④(1994년 이후) 근대적 기업제(민영화)의 순으로 기업개혁을 추진해 왔다.

거 「국가물자공급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조달·공급한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북한은 중앙당국의 자재공급계획에 충실하면서도 과부족되는 원자재·부속품을 기업소 및 공장간에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체제로 바꾸었다.⁹⁶

셋째,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기업의 재정운용 권한을 확대하고 효율적 자금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회계법」 제정(2003.3) 이후 북한은 기업경영의 최종목표를 「원가절감」에서 「순소득 증대」로 수정(2004.4 「재정법」 제34조)했다. 동시에 기업의 국가납부 및 투자·경영자금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자금운용에 대한 기업 재량권을 확대했다. 기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완화하고 국가납부 방식도 기존의 비율 방식을 축소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법」 제28조를 개정(2004.4), 기업의 재정계획 수행실적 평가 대상으로 국가예산 납부실적만 적시하고 구법에 규정된 원가·이윤계획은 삭제했다. 그 밖에도 기업의 현금보유 한도를 확대하고 재정지출 한도 이상의 추가 지출도 허용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자재의 적기구입 등 경영활동의 탄력성을 제고했다. 구 재정법에서는 재정계획에 따른 기업자금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나, 개정된 「재정법」(2004.4)에서는 “기업은 자금을 생산경영 및 인민적시책 등에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제29조), 기업 재정사용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유동자금을 국가재정을 통해 공급해 왔으나,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체 조달토록 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은행을 통해 빌려온 운영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므로 경

⁹⁶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한테 대하여,” (김정일 10·3 지침) 2001. 10. 3.

영능력이 부족, 적자를 내는 지배인들은 지배인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다. 기업운영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기업은 해당지역의 감독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규모 설비를 이관·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사장되는 유희설비의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넷째, 노무관리 측면에서는 임금지급과 노동력 관리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특징적이다. 경제개혁 조치 이전 북한은 임금 기준·등급·조정 등의 결정을 모두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02년 7월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기업이 임금을 상하한선 내에서 자율 결정토록 허용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가납부금 외 나머지 이윤 내에서 자체배분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임금결정 및 지급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적이다.⁹⁷ 또한 그동안 국가가 직접 공장·기업소에 노동력을 배치해 왔으나, 최근에는 노무관리의 유연성 증대를 위해 기업이 유희 노동력을 탄광·농장 등에 스스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 상업유통분야 개혁

상업분야의 개혁과 관련, 북한은 이미 1950년 10월 11일 내각결정 제9호를 통해 「농민시장 개설」을 결정한 바 있다. 그 후 1994년 2월 북한은 「사회주의 상업법」을 제정하고 2004년 6월 이를 수정했다. 상업유통 분야 개혁과 관련, 지금까지 가장 특징적인

⁹⁷ 이와 관련 조총련 월간지 『조국』은 “평양신발공장은 임금을 1만 원으로, 선교편직공장도 현재 4,000원에서 3~5배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조치는 2003년 3월 개설한 ‘종합시장’이다. 이하에서는 북한 상업 분야의 개혁을 상업관리, 유통구조, 운영체제 분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업관리 부문

북한 상업관리 부문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의 국영공급 체계를 시장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점이다. 『7·1조치』와 함께 북한은 먼저 농·공산품 유통구조개선에 착수했다. 농·공산품의 수매가격을 농민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실제가격에 근접시켜 국가에 의한 상품공급체제와 기능을 확립하려고 했다. 다만, 식량은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하되, 종전과 같이 「량권」을 통해 분배하고 있다.⁹⁸

국가 상품공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북한은 먼저 장마당에 대한 단속작업을 벌려 장마당의 취급품목을 원래 매매가 가능했던 텃밭 작물에 한정시키는 한편, 식량과 생필품은 국영상점에 집중되도록 했다. 장마당은 채소나 팔 정도로 허용하고, 쌀과 공산품 등 지정된 품목 이외의 물건은 일체 거래될 수 없도록 했다. 쌀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국가공급소(국가배급소에서 명칭변경)에 국정가격으로 팔 것을 종용했다. 그 외 제품은 국영상점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장마당 취급물품에 대한 단속을 위해 인민보안성, 검찰소, 상설 규찰대 등 각종 감사기관을 동원하기도 했다.⁹⁹ 이에 따라 일부 상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⁹⁸ 이는 2003년 남한의 식량분배 현장 확인에서도 증명되었다. 식량은 차관, 원조물자에 관계없이 모두 유상으로 분배하며, 가격은 킬로당 46원으로 분배되었다. 통일부, “2003년 식량차관 1차 식량분배 현장확인 결과보고,” (통일부, 2003. 10. 9), p. 2.

물품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영상점에 넘기거나, 국영상점에 위탁판매를 시키고 5%의 세금을 공제한 후, 판매대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있었다.¹⁰⁰ 그러나 농민시장 기능을 국영 상점망으로 흡수·통제하려고 했던 목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곡물과 공산품이 국가상업망을 통해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쌀과 공산품들은 더욱 은밀한 형태로 거래되었으며, 농민시장의 가격은 종전보다 더 크게 인상되었다.

결국 북한 당국은 2002년 9월경부터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를 다시 허용했고, 12월경에는 공산품의 판매도 전면 허용했다.¹⁰¹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2003년 3월부터는 농민시장을 공산품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했다.¹⁰²

북한은 시장을 합법적인 상품유통 체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 시장은 자본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로서 전인민적 소유와 공업화가 완성되면 없어질 것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농민시장에 대해 자본주의에

⁹⁹ 『연합뉴스』, 2002년 3월 19일.

¹⁰⁰ 신지호, “7·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KDI 북한 경제리뷰』 제5권 제7호 (2003), p. 10.

¹⁰¹ 북한이 종합시장을 설치하고 공산품 유통을 허용한다는 사실은 2003년 4월 10일자 『조선신보』와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어떻게 시장에서 공산품이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¹⁰² 이런 점에서 볼 때 종합시장은 장마당 축소 및 국가유통체계 정상화 조치가 실패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시장은 그 운영 면에서 볼 때, 북한이 기존의 관료적 조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기능을 오히려 확대·인정하는 차원의 조치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농민시장의 종합시장 개편이라는 변화만으로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경제관리·운영체제를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인식, 시장을 통제 대상이 아닌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규정(2003.4 국가 계획위원회 최종규 국장)했다. 북한 스스로도 “지난 시기 시장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경제관리를 위한 경제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적극 장려”(조선신보, 2003.12)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양에서도 구역마다 있는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농산물만이 아니라 각종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이름을 고친 셈이다”(조선신보, 2003.4.1)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를 하지만 시장의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조선신보, 2003.6.16) 강조하고 있다. 상품가격에 있어서도 과거 전국 각지의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유일가격제(국정가격)를 적용했으나, 개혁 이후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등 2중 가격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볼 때, 북한은 상업기능을 「대민 배급」체제에서 「제품의 유통·판매」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래 상업을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으로 규정하고 배급기준에 따라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함으로써, 생산과 유통·판매체제를 분리·운영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생산, 유통, 판매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 생산단위는 판매되건 말건 생산만 하면 계획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비효율성이 존재”(조선신보 2003.1)했음을 인정하고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토록 하는 체제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생산자와 판매자간 직접거래가 이루어지고 생산·유통·판매의 일원화를 허용한 것이다.

2) 유통구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종합시장」을 개설, 유통의 전문화·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래에는 국영상점을 위주로 하고 농민시장을 보조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2003년 3월 이후에는 농민시장을 자본주의 상설시장 형태의 종합시장(300여 개 목표)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영 및 일반상점을 두는 유통체제로 전환했다. 「상업법」 제86조를 개정, 농민시장의 개념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적 시장으로 변경, 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권을 해당 상업지도기관에 부여했다.

시·군·구역 별로 종합시장 건물을 신축하고 매대는 개인, 협동단체 및 기업에 임대하고 있다. “통일거리시장 판매 매대 중 약 5%는 공장·기업소 몫으로 할당(2003. 12 조선신보)”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종합시장은 시·군·구역의 면적과 주민 수를 고려하여 시장의 매대 수와 시장 위치가 결정된다.

<표 IV-4> 주민 수에 따른 시장 매대 수

주민 수	3~4만명	4~6만명	5~7만명	7만명 이상
매대 수	600석	900석	1,200석	2,000석

자료: 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정세분석 05-02』,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32.

종합시장에서의 거래품목은 기존의 농산물·부업제품에서 군수품 등 일부 국가 통제품을 제외한 전 소비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거래가격은 시장 수급사정과 판매자와 구매자간 흥정에 따라 결정되나 쌀·신발·비누 등 대중소비품은 한도 가격을 정해 통제하고 있다. 실제 「통일거리」 종합시장은 쌀 등 주요품목 대해 최고

한도가격을 설정하고 10일 간격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매대 운영자를 대상으로 자릿세 개념의 「시장사용료」와 소득세 형태의 「국가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¹⁰³

종합시장의 설립과 함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거리에는 이동 매대가 재등장하고 있다. 인민봉사총국 「락연합작회사」가 운영하는 새로운 컨테이너식 고정 매대가 평양 통일거리에 등장,¹⁰⁴ 군밤·군고구마를 1kg당 150원, 50원에 각각 판매하고 있다.¹⁰⁵ 이동매대는 이미 1970년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가 당국의 규제로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종전의 매대는 천으로 풍을 씌운 간편한 이동식 매대였으나, 새 매대는 간판까지 내건 개조된 컨테이너 매대라고 보도하고 있다. 풍은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장식을 위해 드리우는 천을 말하는 데, 경비절약을 위해 구이로를 전기대신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매대판매업」은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실리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방식을 혁신하려는 경제운영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 판매망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 판매방식에서 탈피, 원재료 확보에서부터 판매까지를 일관화하여

¹⁰³ 이와 관련 북한은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단위는 시장사용료와 별도 자기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제때 바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조선신보』, 2003년 12월. 종합시장 운영에 대해 2003년 12월 조선신보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심도와 폭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¹⁰⁴ “상품의 질로 승부-인기를 끄는 군밤, 고구마 매대,” 『조선신보』, 2002년 2월 27일.

¹⁰⁵ 인민봉사총국 산하 락연합작회사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군고구마를 판매, 평양시내 통일거리에 16개소의 군고구마 매대를 열고 주부들을 채용해 판매에 나선 결과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익금 가운데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이득금’과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사기도 신장시키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3년 11월 29일.

이윤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유통부문 개혁관련 특징으로는 북한이 상점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의 2원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북한 상업법 제81조는 상점·식당·봉사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 등은 중앙 상업지도기관의 승인(구법) 대신,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장(직매장)」으로 구분된다.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기업소에 이관, 국영상점과 일반상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영업을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기업소·인민반에 임대·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가격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나,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합의가격(상품위탁자-상점간) 형식으로 판매한다. 개인명의 상점운영은 아직 불허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이 있는 개인은 기관·기업소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영식당과 「합의제식당」으로 2원화되어 있는데, 국영식당은 국가가, 합의제식당은 기관·기업소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도 수익금 제공 조건하에 국영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 음식가격에 있어서는 국가가 정한 기본메뉴는 국정가격으로, 식당의 자체개발 메뉴(「특별리리」: 조선신보, 2003.12)는 합의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국가는 식당 운영 수익의 일정액을 「국가납부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있는 데, 식당은 고객유치를 위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익위주의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양 제1백화점은 합영·합작 가공무역상품의 가격을 백화점 측과 생산자 측이 협의·결정하는 「합의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는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즉, 자금력을 갖춘 주민들이 기관·기업소로부터 맥주집·가라오케·목욕탕·PC방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신규 개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¹⁰⁶ 그 밖에도 평양·청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러시아 등 외국과의 합작을 통해 대형 쇼핑센터·백화점 건설을 추진하는 등, 상업유통 부문도 대외개방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전문도매상·24시간편의점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전문점이 생겨나는 등 유통의 다양화·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북한의 상업유통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북한이 시장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모색하는 정책 전환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대외경제

(가) 경제특구 지정

경제개방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제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경제협력 활성화에 적극적인

¹⁰⁶ 『조선일보』, 2004년 4월 11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북한은 신의주(2002.9)·금강산(2002.10)·개성(2002.11)특구를 추가 개방했다. 그러나 신의주 행정특구의 경우, 초대 장관으로 결정된 양빈의 구속(2002.10)과 중국의 반대 등으로 특구의 공식 폐지를 결정(2004.8)한 바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14개 합의서 및 22개 법·규정을 채택하고, 개성공단 시범단지(2.8만 평) 개발과 함께 1단계 100만 평 개발, 금강산 육로관광을 남한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무역관리 체계 개편

북한은 무역 분권화를 통해 무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종래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무역활동을 시·군 및 기업소 단위까지 허용, 하부단위 경영을 통한 무역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출입 수속 등 무역행정 업무는 무역성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무역활동에서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04년 1월 북한은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북투자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내 외국 법률컨설팅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또한 무역관리기구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2004년 7월 「민경련」을 「민경협」으로 확대·개편하고 업종별 전문회사를 신설하는 한편, 2004년 9월에는 「삼천리총회사」를 삼천리(IT·출판물)·명지(중공업·광업)·광복(철도·도로)총회사로 분사시켜 업무를 분할했다. 영국(04.8)·싱가폴(04.10)·이태리(04.11) 등과도 합작 법률사무소 설립하는 한편, 영업실적이 부진한 해외진출 무역지사 및 북한 식당을 철수시키거나 통폐합하고, 우수 해외주재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연장(3년→6년)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조직 정비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외경제 관련 법·제도 개선과 금융·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경제 적응 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외 경제개방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기업의 대 북투자 촉진을 위해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먼저 2004년 9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월 80달러~120 달러에서 38달러로 대폭 인하했다. 이는 인도네시아(72달러), 베트남(35달러~45달러) 등 여타 개도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다.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북한은 합영회사의 직접수출을 허용했는가 하면, 임금·전기료 등 경상비용을 북한원화로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주변국에 비해 낮게 책정, 세금·공과금 우대조치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를 10%~25%(동남아 30%~35%), 거래세 1%~15%(동남아 30%~60%), 전기사용료 67달러/천kWh(주변국 80달러~120달러), 물사용료 38 달러/천m³(주변국 120달러~130달러) 등 우대조건을 책정해 놓고 있다. 보험가입의 자율화도 추진했다.

그 밖에도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특혜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 21개국 해외 한인교포 164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2004.10.21~25)하고, 해외한인무역협회(OKTA)-국무축(國務促)간 상호협력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개성공단 인근에 교포기업 전용 공장부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나선특구 인프라 투자시 250만 평의 토지 무상지원

방침을 표명(무역성 부상 김용술)한 바 있다. 경제특구 이외 지역에서의 단독 기업·은행 설립과 광산개발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이 개혁·개방시 화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제시한 특혜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신의주 특별행정구

북한은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한 바 있다. 총 6장 101조로 구성된 「신의주 특별행정구기본법」을 보면 북한이 신의주 지역을 기존의 라진·선봉 경제특구와는 전혀 다른 특별지구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의주 행정특구가 의도했던 제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의 독자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이다. 즉, 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자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행정특구 장관은 행정부 성원, 구검찰소 소장 등을 임명·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특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앙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간접적인 권력행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여권발급권 등의 독자성을 부여했으며, 독자적 구장·구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각이나 중앙기관의 직접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문·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과 체신·방송망을 자체 발행·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은 성별이나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 및 지식정도와 정견, 신앙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으며, 언론·출판, 집회·시위, 파업의 자유와 함께 구내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바탕한 경제개방구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2052년까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및 개인의 재산과 상속권을 보장받음은 물론, 그것을 국가소유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자체 화폐정책이 추진되며 외화의 반·출입에도 제한이 없게 만들었다. 이상과 같은 투자촉진장치를 통해 북한은 신의주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신의주 행정특구는 운영의 성격상 중국의 홍콩, 심천, 상해 등 중국의 경제개방과 관련된 제도를 선별적으로 모방·원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중앙직속기관 설정, 외교권 제외, 50년 기한 설정 등)하고 있으며,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해 온 상해 포동과도 유사한 개발 모델을 취하고 있다. 또한 단둥을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深圳) 특구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북한이 중국식 개방과 개혁을 따르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신의주를 홍콩과 같이 자본주의 도시국가로의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심천이나 상해와 같이 발전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기반 없이, 특별행정구로 신규 지정한 것은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IV-5> 북한·중국 경제특구 비교

구분	북한		중국	
	신의주 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홍콩 특별행정구	심천(深圳) 경제특구
위치	평북 북동부 중국접경	함북 북동부 러시아 접경	중국 대륙 남동부	홍콩 인근 광둥성
인구	34만명	30만명	6백78만2천여명	7백만8천여명
면적	1백32km ²	7백46km ²	1천91km ²	3백91.7km ²
지정일	2002년 9월	1991년 12월	1997년 7월	1980년 8월
법적 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정무원 결정 84호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
정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사법·행정권 보장 -토지 임대기간 50년 보장, 자체적인 여권 발급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통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성과 나선시 인민위원회가 통치하는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 -중앙정부 직접 통제속에 외국자본 유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국양제(一國兩制, 중국의 사회주의 속에 자본주의 인정), 입법·사법·행정 자율권 보장 -임기5년의 행정장관이 독자적으로 영도 -정치적 독자권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정부와 광둥성 지방정부 소속 -정치적 독자권 없음
경제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에 인접, 중국 교역에 유리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서비스산업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해에 인접, 러시아 교역에 유리 -화학·철강 등 중공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가공산업·금융 중심지 -의류, 전기기기 및 부품, 통신·음향 기기 중심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1위 (2001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자본 및 기술 유치를 위한 수출 산업단지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8위 -전자·방직·경공업·기계산업 중심

자료: 통일부

신의주 행정특구는 북한이 이미 단행한 7·1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조치로 판단된다. 7·1조치는 공급분야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부적인 자본조달이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밖으로부터의 외화획득을 통해 생산 분야의 공급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북한은 과거 차관이나 합영법 제정과 같은 대외개방조치를 통해 외부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라진·선봉 경제특구조치의 실패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대외 경제적 조치를 강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남북한과 중국으로 연결되는 신의주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중국 단동의 생산 배후기지 및 동북아 물류기지로써 개발할 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는 단동을 배후지로 북·중 접경무역 전체의 8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바, 북한은 신의주 행정특구를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과 외화 획득을 비롯하여 자본주의 기술교육의 훈련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신의주를 시장 원리에 입각한 외국 금융기관의 설립과 외자도입, 무역 및 상업 유통의 활성화, 위락시설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동시에 한국, 일본 등지로부터 첨단 과학기술(특히 IT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거점이 되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했던 것이다.

신의주 행정특구는 하나의 ‘국가 속의 국가, 즉 자본주의 시장 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하나의 별도 운영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의주 개발계획은 획기적 대외개방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계획만으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이 신의주 개발의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대외개방에 대한 사상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의주 특별 행정구의 지정은 김정일이라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개방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 경제제도상의 질적 전환을 위한 사상적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어 성공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은 전 지역의 개방이 두려워 신의주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타 지역과 분리하는 철조망을 설치 본 지역개발의 효과를 지역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대외개방조치와 대내개혁조치가 연계되지 않는 신의주 개발의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할 것이다.

둘째, 신의주 개발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다. 중국은 신의주 특구 개발이 단둥과 경쟁관계에 놓임은 물론, 관광지구로 개발될 경우, 중국 자본의 북한 내 유입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행정특구의 초대장관으로 임명한 양빈을 중국 정부가 탈세 등의 혐의로 재산 몰수와 함께 구금시킨 것은 신의주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6>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분야	세부분야	주요 내용
경제 관리	의식	- 신사고 - 의식·행동변화 변화 독려
	법·제도	- 경제법령의 제·개정: 인민경제계획법, 손해보상법, 상속법, 농업법, 외국투자은행법, 회계법, 재정법, 상업법
거시 경제	가격·임금	- 물가 및 임금 현실화
	재정	- 보조금폐지, - 예산제기관 축소, - 번수입기초 국가납부금 징수, - 국가기업이득금 항목 신설 - 지역별 수납체계 전환 - 지방예산제 강화 - 공채발행 - 중앙은행법 제정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
산업	농업	- 분조관리제 개선, 분조규모 축소 - 포전담당제 시범실시 - 식량무상배급제 폐지 및 이중국가제 실시
	기업생산	- 지배인 권한 강화, 기업 경영자율권 확대(임금, 노력관리) - 기업 물자교류시장 허용 - 기업의 재정운용 권한 확대
상업 · 유통	상업관리	- 식량 외 상품 공급 체계 확립 - 국영상점 위탁 판매제 실시 - 장마당 쌀, 공산품 판매 허용 -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 변경
	유통	- 종합시장 개설 - 매대판매업 허용 - 국영식당과 합의제 식당 이원화 - 위탁매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 운영 허용
대외 경제	경제특구	- (신의주), 금강산, 개성특구 추가개방
	무역관리	- 시·군·기업소 단위 무역업 추진(분권화)
	대외 법·제도	- 환율 현실화 - 외화교환소 설치 - 대외경제수단 변경 - 최저임금인하 - 투자설명회 개최 - 해외교포투자 특혜제공

자료: 자체작성

2. 북한 경제개혁의 부작용

경제개혁의 부작용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한의 시각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시장화에 따라 나타나는 계획부문의 축소와 그에 따른 주민의 물질주의 의식 변화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지만, 남한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경제개혁에 따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북한 체제의 부정적인 면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개혁에 따른 북한 내 물가상승, 특히 시장에서의 가격인상은 체제에 부담을 주는 현상으로 어느 체제에서 바라보는가에 상관없는 부작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고찰이 가능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시하는 부작용이 반드시 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어 7·1개혁조치 이후 나타나는 농업생산량이나 공업제품 생산량의 저하는 반드시 개혁조치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7·1조치가 생산량의 증가를 도모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면, 이를 일종의 부정적 결과, 다시 말해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 경제적 측면

(1) 인플레이션 현상의 심화

7·1경제조치 이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혁의 경제사회적 부작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득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가 빈부격차로 이어져 주민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생활의 어려움은 다시 위법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북한에서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개혁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를 실패로 단정지을 만큼 심각하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경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영상점만으로는 고질적인 물품 부족을 해소할 수 없어 장마당에서의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 형편이다.

<표 IV-7> 북한 시장의 생필품 가격

(북한, 원)

	단위	2002.2(A)	2003.7	2004.4	2005.10	2005.12(B)	B/A, 배
쌀	kg	47	156	350	705	850	18.2
옥수수	kg	32	116	150	222	286	8.8
콩	kg	44	160	300	376	464	10.5
밀가루	kg	41	176	325	750	775	19.0
돼지고기	kg	139	539	1,121	2,320	2,463	17.8
달걀	개	11	46	59	189	208	19.6
배추	kg	18	75	80	93	206	11.5
감자	kg	14	93	68	113	138	10.1
식용유	병	78	553	475	905	1,088	14.0
소금	kg	21	93	125	336	329	15.4
간장	병	21	62	80	240	250	12.0
된장	봉지	50	98	155	206	208	4.2
TV	대	15,000	60,000	63,000	177,000	235,000	15.7
백열전구	개	22	199	175	214	205	9.5
양말	켤레	20	191	250	1,500	1,475	73.8
운동화	켤레	100	1,983	1,425	3,380	3,350	33.5
세수비누	개	57	394	358	1,130	1,100	19.4
치약	개	28	66	167	640	650	22.9
담배(국산)	갑	30	170	300	555	550	18.3

자료: 새터민 면담을 통한 취합, 통일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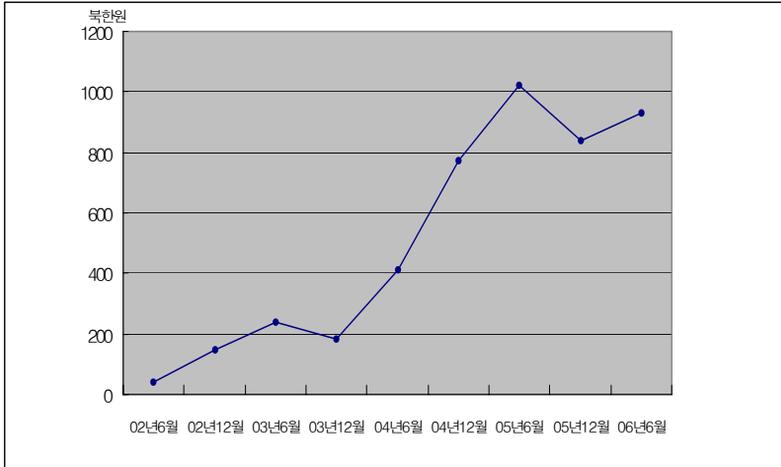
2003년 이후 북한의 비공식 경제부문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매년 100% 이상을 기록했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사이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나게 만들었다. 북한 물가를 대표하는 쌀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 7·1조치 당시에 비해 거의 20배까지 폭등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2005년 10월 쌀의 시장거래를 금지하고 배급제를 부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국가로부터 주택을 배정받으면 개인은 국가에 집세, 즉 ‘주택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7·1조치 이전, 주택사용료는 수입의 0.03%를 차지했으나, 7·1조치 이후에는 1㎡당 월 2원으로 인상되

어 60㎡(18평)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20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가계 수입을 4,0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수입의 3%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는 100배의 가격 인상을 의미한다. 공공요금 또한 20배~25배 정도 인상되었다. 특히 전기세의 경우 1kW당 7·1조치 이전에 3월 50전 하던 것이 7·1조치 이후에는 21원으로 60배나 인상되었다. 함북 청진의 장마당에서 쌀은 kg당 남한가격으로 762원, 북한산 최고급 담배 ‘고양이’ 한 갑은 1,000원(남한 가격) 정도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남한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지역 물가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 노동자·사무직의 월 평균 임금이 2,000원~3,000원 정도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도 가계수입은 4,000원~6,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의 평균 가족이 부부와 두 자녀로 이뤄진 4인 가족임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8,000원~12,000원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으로 가계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다. 결국 직장에서 받는 임금만으로는 식량과 기본 생필품 구입마저도 쉽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다 보니 10명 중 9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장사 등의 부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림 IV-1>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쌀값동향 추이
(kg당 북한 원)



자료: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주최 제4회 국제학술회의, 2003.6.26), 자료 취합 및 통일부 작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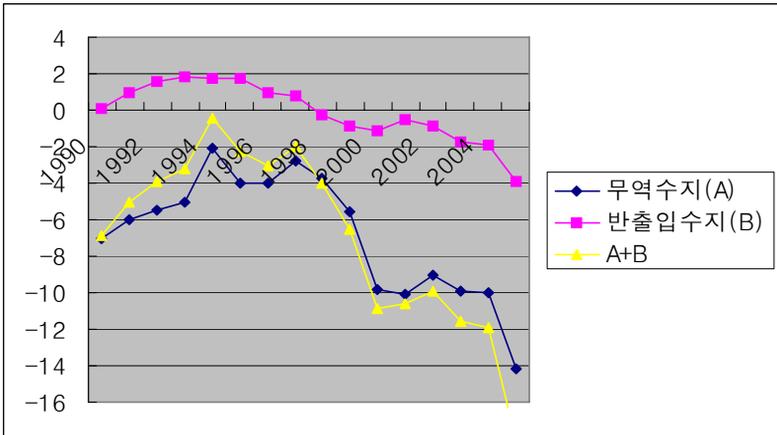
북한 지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물자공급의 부족이다. 이는 7·1개혁 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수지의 적자 확대를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표 IV-8 및 그림 IV-2 참조).

<표 IV-8> 북한경제의 성장률과 수지구조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성장률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1.2	1.8	2.2	-
무역수지(A)	-7.1	-7.0	-6.9	-6.7	-3.8	-5.7	-5.2	-3.6	-3.2	-4.5	-8.5	-9.7	-8.0	-8.3	-8.2	-10.5
반출입수지(B)	0.1	1.0	1.5	1.7	1.6	1.6	1.1	0.8	-0.4	-0.9	-1.2	-0.5	-1.0	-1.5	-1.8	-3.8
A+B	-7.0	-6.0	-5.4	-5.0	-2.2	-4.1	-4.1	-2.8	-3.6	-5.4	-9.7	-10.2	-9.0	-9.8	-10.0	-14.3

자료: 한국은행, KOTRA,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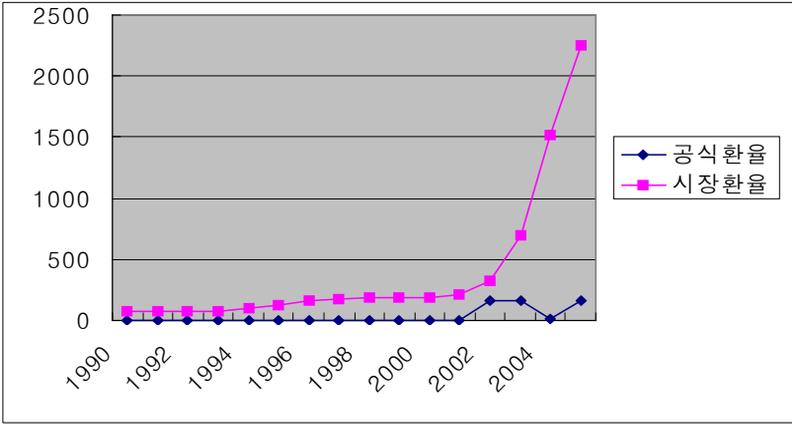
<그림 IV-2> 북한의 무역수지 및 반출입 수치



자료: KOTRA; 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방안,” 『수은북한 경제』,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2005), p. 55.

물자부족은 기본적으로 만성적 초과수요와 과소생산이라는 북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심화는 시장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은 달러당 2.2원 내외였던 공식 환율을 153원으로 약 70배 인상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시장환율은 달러당 2002년 하반기 200원~480원선, 2003년 400원~1,000원 선, 2004년 1200원~1900원선, 2005년 1900원~2600원선 그리고 2006년에는 3000원선까지 올랐다.

<그림 IV-3> 북한 원의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추이



자료: 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방안,” p. 57.

현재 북한에는 계획경제체제가 계획경제부문과 농민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경제부문으로 이원화되는 가운데, 배급체제의 이완으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 및 소비지출이 ‘농민시장’에 급격히 의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저가의 배급제가 폐지됨으로써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아 소비했던 식량 및 생활용품의 부족분을 장마당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⁷ 또한 늘어난 가계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북한 지역 대부분의 가구는 시장에서 크건 작건 장사나 부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7·1조치에 따른 가격현실화와 함께 급여도 대폭 인상됐지만 실제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 곳은 많지 않다. 식량난도 부분적으로 개선되긴 했으나, 공급이 크게 모자라고 인플레이

¹⁰⁷ 최근 장마당에서는 한국에서 지원한 쌀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북한 당국도 2003년 8월 초 함북 무산광산연합기업소(무산)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청진) 등 주요 기업소 근로자들에게 처음으로 한국산 쌀이 북한산보다 2원 비싼 1kg에 46원씩 15일분 판매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선 심화로 북한 주민의 실질구매력은 더 낮아졌다. 물론, 농업 상품에 대한 정부조달 가격 상승이 생산자로 하여금 정부의 국가 배급체계를 통해 곡물을 분배하려는 유인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농업 산출 증대는 화학비료, 농약, 양수기 등 관련 기자재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분야의 발전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현금통화의 과잉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배종렬은 북한의 플러스 성장 및 곡물생산 증가에 중국 대북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물자부족현상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면서 독립채산제의 확대, 정부보조 삭감 등 재정기능의 축소 속에 강화된 은행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찾고 있다.¹⁰⁸ 7·1조치 이후 늘어난 기업의 자금수요가 조선중앙은행의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현금통화 증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의 신용창조기능 부재가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의 성공은 특히, 금융경제가 실물경제와 괴리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통화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나, 북한은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1조치 이후 물가상승이 1990년대 초반의 5년간에 비해 훨씬 빠른 것은 바로 통화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2)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확대

북한의 공장이나 기업소들은 대부분 낮은 가동률이나 가동중단에 직면해 있다. 공장가동률은 15%~20%에 지나지 않는다. 낮

¹⁰⁸ 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방향,” 『수은 북한경제』, 여름호, (2006), pp. 56~57.

은 공장 가동율은 실업발생을 촉진시키고, 노동인력들의 시장유입을 촉발시킨다.

물가상승으로 임금인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자 주민들은 7·1조치를 ‘잔나비 정책’이라고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⁰⁹ 개인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각종세금(협동농장의 경우 영농비, 비료·종자구입비 등 징수)으로 그 효과가 반감됨으로써 오히려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시장에 유입된 인력 중에는 매점·매석을 이용, 초보적 자본가(고리대금업자)로 행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 들 중에는 식량(옥수수·쌀·콩 등)과 해산물(낙지·명태 등)을 대량 사재기한 후, 식량가격이 폭등하면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월 10%~30%에 이르는 현금 고리대금업이나 춘궁기에 빌려준 식량을 수확기에 2배로 돌려받는 등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과의 거래증가로 인한 위폐 유통도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당 간부의 경우 북송탈북자 소지 외화의 국고환수 조치가 있자 자신들이 보유한 외화를 위폐로 바꿔치기 하거나, 수입대금을 소속기관에 상납할 때 중간에 위폐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을 통해 치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위부·보안원 통제 하에서 안전하게 장사를 하기 위해 뇌물수수자가 만연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권력기관의 차량을 장사꾼에게 임대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도 하며, 골동품이나 마약 등 위험품목을 운반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보위부 차량을 임차하기도 한다. 도내 각 시·군 지역으로의 이동시 100달러, 국경연

¹⁰⁹ 설충, 『사회주의 국가 경제개혁 부작용 사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06), p. 2.

선까지 이동시에는 500달러(2005년 이전)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사상동요와 각종 부작용을 제어할 목적으로 다수 통제조직이 신설되고 있는 점은 북한 사회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1월 무렵부터 7·1조치 이후 급증한 사회질서 위반자 단속을 위한 ‘5·11상무’라는 조직이 신규로 만들어졌는데, ‘5·11상무’란 군 보위부, 보안서, 군당, 인민위원회, 농근맹, 직맹, 청년동맹, 여맹 등에서 조직별로 1명을 파견시켜, 조별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주민들 사이에는 가장 무서운 통제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4년 6월에는 김정일의 지시로 「군인민위원회」 노동과 파견 지도원 3명으로 구성된 「무직 건달자 단속검열대」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10월에는 사상동요를 제어할 목적으로 김정일 지시에 의해 다시 「10·9상무」가 조직되기도 했다.

그 밖에 개인 매대의 난립으로 자본주의 풍조가 확산되자 2005년 2월 북한은 ‘개인이 운영하는 매대를 없앨 데 대하여’라는 방침을 하달했다. 그리고 2005년 2월 당구장 폐쇄 및 당구게임 금지 조치를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내린 바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인센티브제가 실시된 이후 우량, 부실 공장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임금분배 형태도 현금임금과 현금·현물임금으로 대별되며, 2004년 이후 기업실적에 따라 월 1만원~5만원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도 생겨나고 있다.¹¹⁰ 그러나 도시근로자의 경우 가구 평균 소득의 70%~80% 정도를 식품 구매에 지출하는 상황이다.¹¹¹

¹¹⁰ 임금격차는 예를 들어 만경대협동농장(월 현금 7만원), 외화벌이기업(월 현금 2만원~3만원대), 합영기업(월 현금 1만원~2만원대 + 부상 상품지급), 일반기업(월 현금 3,000원)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¹¹¹ 『연합뉴스』, 2004년 2월 15일.

현물 배급을 통한 사회주의적 균등주의가 깨지면서 돈을 번 사람들 사이에 일차적으로 억제되었던 물질적 소비 욕구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쟁적 ‘소비’ 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의 내면에는 차별화된 ‘소비’를 통해 다른 부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가치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² ‘우리 집과 대비해서 누구 집에 더 멋있게 차려 냈다 하면 그것보다 더 멋있는 것을 사다 놓는다’든지, 같은 옷이라도 일본제를 많이 사서 입고 일본 중고 옷들을 많이 사서 입는 게 잘 사는 사람들의 추세다. 또한 ‘남새 정도 먹는 집과 물고기나 명란 같은 비싼 것이나 고급적인 것을 먹는 집과는 비교대상이 안된다’식으로 ‘경쟁적’인 소비주의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¹¹³

이와 같은 먹는 것, 입는 것 등 물질적 재화의 차별화된 경쟁적 소비주의가 향후 성분이나 토대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 정치적 성분 때문에 차별받았던 개인이나 가족들이 돈을 번 경우에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 의식적으로 더 큰 고급 소비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¹¹² “북한 주민의 가치의식변화,” 『2006 북한 어디로』, 북한연구학회 홈페이지 www.nkstudy.or.kr 참조.

¹¹³ 위의 글.

(3) 무허가 상거래 행위의 증가

경제관련 제·개정된 법률¹¹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 중 하나는 무질서한 경제활동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연성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2년 제정되어 1999년 수정되고 2002년 5월과 2004년 6월에 다시 수정·보완된 사회주의 상업법에서는 청량음료의 판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과거 1999년의 상업법에서는 “사회조직 및 청량음료 생산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리나라에 혼한 원료를 간이매대, 이동매대 같은 것을 꾸려 놓고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2조)했으나, 2004년 개정법에서는 “사회조직 및 청량음료 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나라에 혼한 원료를 간이매대, 이동매대 같은 것을 꾸려놓고 판매하여야 한다. 청량음료는 필요한 곳에 청량음료점과 간이매대, 이동매대 같은 것을 차려놓고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2조)하고 있다. 이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평양 등 대도시 길거리에서 판매대 없이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체계화하기

¹¹⁴ 2000년 이후, 북한은 경제개혁·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제정된 법률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2년 3월 상속법, 2002년 7월 제품생산허가법, 2003년 3월 도시계획법, 2003년 6월 컴퓨터소프트웨어법, 소프트웨어산업법, 2003년 7월 회계법, 2003년 8월 마약관리법, 2004년 3월 수로법 등을 들 수 있으며, 개정이 이루어진 법 중에는 2002년 6월 농업법,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사회주의 상업법(2004.6), 재정법(2004.4)과 2003년 8월의 화폐류통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 사회주의 경제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법은 개정 농업법, 사회주의 상업법, 재정법을 비롯, 상속법, 회계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한 조치로 추가 삽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1999년 법률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 없이 상점이나 식당, 편의봉사기업소를 내올 수 없다”고 규정(제81조)했으나, 2004년 개정안에서는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66조), 영업 허가에 관한 정부 통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만약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점, 식당, 봉사소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지시키고 벌금을 물리는 것(제89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분별한 상거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개별 임의적 상행위에 대해 당국이 통제를 가함으로써 상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4) 생산물의 임의처분과 임의 가격결정

2004년 북한 사회주의 형법¹¹⁵은 이전의 형법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개정형법 제160조에는 기관, 기

¹¹⁵ 북한 사회주의 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라는 정령으로 1950년 3월 3일 채택되었다. 이 형법이 인민민주주의형법이라면 1974년의 형법은 사회주의형법으로서 현재 북한형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9호로 제정하여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해 오다가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2호로 개정하였다(1차개정). 그 이후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새로운 채택이 있었고 (2차개정), 1995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수정보충되었으며(3차개정), 1999년 8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되었다(4차개정). 그리고 현행 형법은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되었다(5차개정).

업소 및 단체의 책임자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에게 생산제품을 준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 생산품이나 물자가 기업소나 공장에서 개인적으로 유용되고 임의 처분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167조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난으로 전화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행위로 돈을 번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개인 목적의 전화를 가설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도 개정 헌법 제170조는 ‘가격사업 질서’를 어기고 가격을 제정·적용하였거나, 국가가 정한 가격을 승인없이 고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2002년 7·1조치 이후 가격결정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이미 지난 1997년 가격법¹¹⁶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수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시장한도가격을 고시, 해당 범위 내에서의 임의적 가격조장 권한을 생산자에게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물가 불안을 이용하여 가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국으로 하여금 가격의 부당한 결정 및 수정에 관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¹¹⁶ 가격법은 총 4장 3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가격법의 기본, 제2장은 가격제정, 제3장은 가격적용,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통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4조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 제품의 쓸모와 인민경제적 의의, 수요와 공급, 축적과 소비사이의 호상관계를 옹기 타산하여 가격을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회적 측면

(1) 부정·부패 현상의 심화

사회적으로 부정·부패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암시장 거래에 필요한 공공물자의 횡령이 심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당·정 고위직 관료들의 횡령은 공적 사업비를 불법지출하거나, 자기 산하 행정 및 경제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행정 및 경제관료들은 당·정관료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부패 개입에 주저하지 않는다. 행정 관료들은 물자를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횡령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 간부들이 담합하여 쌀과 같은 주곡을 빼내거나, 유통분야에 관여하는 관료가 배급품이나 각종 자재를 빼돌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에서 뇌물은 모든 계층에 만연되어 있다. 기업소 또는 관공서 등의 직장 내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일탈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특혜를 얻기 위해 상·하위직간에 광범위한 뇌물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 위해, 주택취득, 대학입학, 노동당 가입, 여행허가 취득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¹¹⁷

부패는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횡령과 횡령된 물품의 암거래는 북한을 고루 못사는 사회가 아닌, 신분에 따라 빈부격차가 큰 사회로 만들며, 사적 영역이 공적영역을 지속적으로 잠식함으로써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¹¹⁷ 정덕성, 『북녘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p. 113.

을 증대시킬 것이다. 부패 구조 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권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결국 체제의 안전성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¹¹⁸

(2)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

가치의식이란 인간 욕구의 인식체계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어떤 한 상태보다 다른 상태를 선호하는 포괄적인 경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행위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그 사회 성원들이 추구하는 행동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북한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하에서의 지배적인 가치의식들이 침식당하고 있다. 시장이 생존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안정을 위한 사상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주민들 사이에는 적대적인 대남 의식이 줄어들고 남한이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과 함께 돈과 이익중심의 자본주의적 가치관,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의 경제변화가 정치·사회·문화 전반으로 그 영향력을 파급시켜, 개인주의, 실리주의 등 시장친화적 의식 확대와 함께 사회주의 사상이완 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돈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물

¹¹⁸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p. 76.

신주의 현상이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당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출세할 수 있는 관문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당원 자격이 별 보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당에 별 관심이 없다. 당원이 되는 것보다 스스로 생존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이 벌어 남보다 더 잘 살아보자’는 인식을 확산시켜 장사 등 수입이 좋은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재화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엘리트 계층들의 경우 당·정무 직종보다는 외교관 및 대외사업요원이 선호된다. 민경련·민화협 등 대남사업기관에서의 근무경쟁이 치열하다. 보위부 등 체제수호 집단에서는 뇌물수수가 용이한 국경지역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주민들의 경우, 식량자급이 용이한 농업과 개인수입이 높은 상업일꾼, 부수입이 좋은 상점 점원, 운전기사, 사진기사, 식량배급소 기표원 등 서비스직과 어로공(어부)을 선호한다. 사회주의 노력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돈이 최고다’라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과거에 존경받던 의사·교원·과학자가 별이를 제대로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아지자 하찮은 직업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과거에 식량배급과 노임, 진단서 발급으로 생기는 뇌물로 생활했으나 최근에는 공장·기업소 결근 시 진단서가 필요 없게 되면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과학자들도 이전에는 당국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어 큰 어려움 없이 생활했으나, 점차 배급량이 줄게되자 생계유지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원·의사·과학자들이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주민들은 “이제는 머리에 든 것은 다 필요 없다”며 어느 사회나 엘

리트층에 속하는 이들 직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정도다. 물질적 보상이 중시되면서 직업을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가치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에는 성분과 당원, 군복무 여부가 최우선이었다. 월남자, 화교, 재포(재일교포)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출신성분(토대)에 따라 부정적 평가와 홀대를 받았는데 지금은 재산과 돈이 더 큰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 토대가 불온시 되었던 재일동포가 이제는 최고의 신랑감으로 부상하였고, 생필품과 현금을 구하기 용이한 작업반장, 직장장 등 생산 기업소 행정일꾼들도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다. 가치의식 변화로 나타난 제도변화의 전형적인 예의 하나가 군대기피 풍조다. 북한 청년이 군복무를 선택하는 기본 동기는 입당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당원이 되어도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길고 고생스런 군 생활을 하기보다는 돈을 쉽게 버는 길을 선택하는 추세다. 북한 당국도 식량난과 군대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2003년 3월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복무기간을 남자 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전민군사복무제」를 채택하였다.

둘째,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이 크게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공식부문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있어 아주 소극적이다. 모든 인민이 똑같이 동원되어 농사를 지어도 자기 농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성의껏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더구나 경제난으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자 공장에 나가도 할 일이 없고, 또 임금만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북한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보다 대부분 부업이나 개인 장사에 몰두

하고 있다. 기업소·공장들도 자체 생산계획보다는 각기 할당된 외화벌이 사업에 더 치중하여 한 달 노임보다 더 많은 노임 외 수입획득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7·1조치 후 북한 주민들은 본 직업보다 돈벌이가 되는 또 다른 경제활동에 더 열심인 ‘투잡스족’이 되고 있다. 개인주의적 노동의식 구조가 북한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가를 위한 일은 게을리하고 사적이익 추구에 열중하며 부정확한 방법으로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개인주의적 행위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¹¹⁹ ‘노력영웅’이 되고자 하는 의식이 옅어지고 공적인 노동 부문에서는 ‘느릿느릿’, 사적인 노동부문에서는 ‘빨리빨리’ 일하는 이중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¹²⁰

반면, ‘열심히 일해 스스로 먹고사는’ 분위기가 주민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기고, 늘어난 수입만큼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노동의 동기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돈이 곧 능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예누리, 깎아주다, 떨어 등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실리추구에 따른 노동의 동기는 생산현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봉사)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직업에 따라 판매한 만큼의 실적이 수입으로 분배됨으로써 과거 상품판매에 열의를 보이지 않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하나라도 더 팔아 더 높은 실적을 올리려는 관측 열기가 뜨거운 경우도 있다. 작업반이나 생산단위, 혹은 인민반 단위로도 장사를 통해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각 경제단위의

¹¹⁹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53.

¹²⁰ 김영윤·박현선·조봉현, 『북한이 변하고 있다』(미발간 도서 (2006), p. 76.

지배인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해고될 수도 있어 근로자들의 뇌리에는 기업소가 이윤을 내어야 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과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던 상황에서 탈피해, 주민들 각자가 생계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에서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사상 체계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성공업 지구에서의 북한 근로자들이 사상 총화와 별도 노력동원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의 야근 및 휴일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쾌적한 근무환경 및 간식 제공 등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외적 모습 호전과 함께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공단을 개발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남북의 격차를 실감하고 있다. 개성 주민들의 대남 인식이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남한의 사상·문화유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 이에 대한 유의를 남한 당국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3) 신종 경제사범의 증가

현재 북한에는 개인 간에 사적인 상거래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시장경제 원리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간에 커다란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등 자본주의의 병폐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 5년 만에 형법을 대폭 개정한 이유는 2002년 7·1조치 이후 개혁·개방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

던 반사회주의적인 행동 및 사회주의를 기초부터 흔드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¹ 동시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대외무역관계가 확대되면서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새로운 경제적 이탈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절도, 강탈 등 과거에는 사례가 비교적 드물었던 경제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도 비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7·1조치 이후 경제 및 사회 문화적으로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위해 새로운 조항들이 대폭 추가되었다. 경제관련 조항은 구법에서는 41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신법에서 104개로 대폭 늘어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경제관리를 침해한 범죄(제5장 2절)가 종전 18개 조문에서 74개로 확대된 것도 7·1조치에 따른 사회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외화관리 부분이 강화된 것이 개정형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개방 분위기를 타고 급증하고 있는 외화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형법에는 화폐위조죄(99조), 위조화폐사용죄(100조), 증권위조죄(101조), 위조증권 사

¹²¹ 1990년대 중반 이후 미증유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 경제는 암시장화가 이루어지고, 7·1조치 이후 사회주의 체제 연성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질서의 문란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이미 2001년 8월 5장 56조로 구성된 손해보상법을 제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불법행위 가해자는 형사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경제난에 따른 생존차원의 불법행위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은 법적 체제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용죄(102조),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죄(103조), 외국화폐매매죄(104조), 공화국 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죄(105조), 외환관리질서 위반질서(106조) 조항이 신설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항들은 7·1조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¹²²

법률 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몇가지 주목되는 경제관련 범죄 행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북한에는 증권과 무현금결제 수단 즉, 신용카드의 사용이 없어 관련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2002년 7월 이후 유가증권과 외국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허용되자,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둘째, 개정형법 107조에는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았거나 산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이 심화되고 식량난으로 배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공장과 기업소의 기계 부품이나 설비를 뜯어 중국 등지에 내다 판 뒤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대응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정형법 110조와 111조에는 개인과 기관, 기업소 및 단체의 상적(商敵) 행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국의 승인없이 개인, 기관, 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장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수공업품

¹²² 최근 북한에는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폭력배 등 범죄 조직을 중심으로 위조된 달러, 엔화, 위안화 등 각종 외화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성욱, “2004년 법전’ 발행과 북한 경제개혁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4권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5), p. 6.

등 소규모 장사를, 기관이나 단체들은 사회 안전부 등 국가의 단속기관을 끼고 거래규모가 큰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장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³ 이에 북한 당국은 개인과 기관들의 장사행위가 사회주의 국영상거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 단속을 가하고 있다.

넷째,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부업으로 장사가 성행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고리대, 거간, 살림집 매매 등 비사회주의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개정형법 114조에는 ‘거간죄,’ 118조에는 ‘고리대죄’를 두어 주민들간 또는 공장과 기업소간 불법 매매를 주선하는 행위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제119조에는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에게 일을 시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가를 지불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행위를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대가를 받고 타인의 텃밭을 가꾸거나 가사일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부업 차원의 경제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7월 조치 이후 인상된 물가고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급여 이외 수입원을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섯째, 국가 소유의 살림집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는 조항(149조)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주택의 불법 이전 및 양도, 임대

¹²³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평양에는 개인판매대가 신설되고, 국가로부터 식당이나 기업소를 임대하여 영업하는 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이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임대료 형태의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지만 불법적인 상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등에 대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소유로서 국가가 주민에게 무상으로 장기 임대해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임대권에 대한 암거래가 나타나기 시작, 7·1조치 이후에는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임대권 거래 형식의 주택거래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사회주의를 말아먹는 자본주의식 거래’로 평가되어 법을 통해 강력히 억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로 평양에서 돈을 주고 거래되었던 주택이 대부분 몰수되는 현상을 초래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제고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¹²⁴

(4) 사회질서의 문란¹²⁵

2004년에 개정된 북한형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범죄유형을 통해 개혁을 통한 북한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읽어 낼 수 있다. 이 중 문화관련 범죄는 한 사회변화의 바로미터다. 북한의 현행 형법상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제6장) 유형, 특히 2002년 7·1조치 이후 신설된 범죄에 속하는 범죄는 여러 형태다. 역사유적 파손, 도굴 및 밀수죄(196조~198조), 저작권 위반죄(199조, 200조),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207조), 의료 사고 및 불법 의료 행위죄(209조~211조), 마약제조 및 판매, 밀수죄(216조~218조)를 제외하고 퇴폐문화 관련죄(193조, 194조), 적대방송 청취, 인쇄물 유인물의 수집, 보관, 유포죄(195조), 컴퓨터망 침입 및 정보 파

¹²⁴ 『연합뉴스』, 2004년 12월 28일.

¹²⁵ 북한연구학회,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사회문화편 <4> 형법개정과 북한사회 변화를 크게 참조·인용했다. 북한연구학회 홈페이지(www.nkstudy.or.kr).

손, 유포죄(201조~203조), 교육의무 해태 및 위반죄(204조, 205조), 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 죄(206조), 위생방역 및 검역 태만죄(212조, 213조),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이용죄(214조), 가짜의약품, 식료품의 제조, 판매죄(215조) 등은 모두 신설된 범죄유형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 사회에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범죄유형으로는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제193조)를 들 수 있다. 이 범죄의 처벌 대상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유연성자기원판,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행위를 한 자’(제194조)다. 북한사회에 이러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것은 7·1조치 이후 외부의 부정적 문화가 유입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적대방송 청취에 대한 처벌도 ‘반국가 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한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을 경우’로 되어 있다(제195조). 단 순방송청취가 아닌 체계적인 방송청취일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이나 해외의 대북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불법 녹화물을 단속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보통 10만원 정도의 고액 벌금을 부과하거나 핸드폰 몰수 또는 추방의 처벌을 해 왔다. 이는 북한 내부의 소식이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노출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주민들 사이에 정보 유통이 커지는 데 다른 대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손전

화기(핸드폰)를 비법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적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도와주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¹²⁶ 핸드폰으로 중국 측과 무역을 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사업상 통화'조차 간첩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남한 사람과 내통한 중국 사람이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넘겨주어 북한 내부의 기밀을 빼내간다는 것이다. 시내 곳곳에는 전화전파 도청 탐지기 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전파가 잡히면 각 동에 위치한 초소에 연락하여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여 체포한다. 그 외에 탐지기가 설치된 자동차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핸드폰 검열과 함께 국경지역에는 '불법녹화물'(불법 TV, VCD, 녹음기 등)을 검열하는 검열조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한국영화를 보거나 검사확인이 없는 테이프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추방 또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게된다. 검열조는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에 전파탐지기를 메고 골목길마다 다니며 검사하고 있다.

역사유적, 유물관련 범죄조항도 북한사회의 부정적 단면이다. 역사유적을 도굴하거나 역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팔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컴퓨터 보급에 따른 정보관련 범죄의 신설도 북한의 변화상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컴퓨터망'(제201조), '컴퓨터같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국가의 중요정보기억매체'(제202조), '컴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 류포시켜 정보처리에 장애를 조성'(제203조) 등은 처벌 대상이다.

¹²⁶ 중국의 통화권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서는 중국 휴대폰을 사용, 남한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다.

북한형법 제233조(2004년)는 탈북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비법 국경출입죄’를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는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비법국경출입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차원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탈북동기가 대부분 생계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형법은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2004년 개정형법은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있다.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 침해 관련 범죄(제8장) 유형으로 개정형법이 새로 추가 명시하고 있는 범죄로는 패싸움죄, 미성인범죄추진죄, 매음죄,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음탕한 행위죄’, 검열원, 단속원, 감독원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거짓행세죄’, 미신행위죄, 미신행위조장죄, 인신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차지한 ‘실력행사죄’, 탐욕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비법혼인죄’, 공무원이 거래과정에서 받았거나 생긴 대량의 사례금 또는 이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졌거나 공동탐오한 ‘사례금, 리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상과 같은 행위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거짓행세, 미신행위, 실력행사, 사례금, 리득금을 바치지 않은 행위 등 권력관련 범죄나 물질관련 범죄가 범죄구성요건으로 대두되었다는 것 자체가 북의 공동생활질서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경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비법혼인죄’를 신설한 것은 사회

주의 가정의 일탈현상을 엿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형법에는 ‘로력착취죄’(제119조)라는 범죄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경우 처벌하는 것인데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5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다. 각종 기술 및 기능직 노동자들이 소속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주는 개인 사업자의 일을 해주며 돈을 버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인수품, 수매품처분죄(제140조),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제141조), 품질감독질서위반죄(제142조) 등을 보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질적 평가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일반적 제품뿐 아니라 건축의 수준도 보장하기 위해 설비점검, 준공검사, 건물변경, 오작설계와 시공을 범죄시하는 건축 관련 범죄조항도 상당수 신설되었다.

‘미신행위죄’(제267조), ‘미신행위조장죄’(제268조)와 관련한 형법은 경제난에 처한 어려운 현실의 심적 탈출구로서 민간신앙 행위 현상이 암암리에 퍼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슨 장사를 해야 돈을 벌지, 헤어진 부모형제가 과연 살아 있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지 등등 개인의 신변에 관한 잡다한 궁금증을 점치는 것으로 다소나마 해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전통 문화와 관련된 행위를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다.¹²⁷

¹²⁷ 북한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미신행위들은 점쟁이를 불러들여 점을 치는 행위, 손금을 보거나 <직성풀이>(띠를 놓고 운수 푸는 것), <신수>를 보는 행위, 궁합을 보는 행위, <손 없는 날>에 맞춰 <가정대사>를 치르거나 집 이사나 집수리하는 행위, 려행이나 출장을 가도 <손 없는 날>에 맞춰가는

다. 대외적 측면: 대외(대중국) 경제의존도 증가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기점으로 북·중간 경제협력은 급진전됨으로써 북·중 교역 및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자국의 역할과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독자적 대외 인식으로 그 근거에는 미국의 패권주의, 대외적 영향력 제고 등 중국의 정치·경제·안보적 이해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IV-9> 북한의 대 중국 교역액 및 비중 변화

연도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4	2005
교역액(백만달러)	9.0	5.4	6.5	3.7	7.4	10.2	13.9	15.8
전체교역비중(%)	33	26	30	25	33	43	48	52

자료: KOTRA, 『중국해관 통계』, 6월호(KOTRA, 2005)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증대가 7·1조치 이후 크게 제고되고 있는 것은 본 조치에 따른 중국 수출시장으로서의 북한 비중 증대, 산업분야의 생산증대를 위한 중국 자본의 유치의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북한의 대중 교역은 13.9억 달러로 북한 대외무역의 약 48%를 차지했으며, 2005년의 경우 52%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빠진 행위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미신행위에 재미를 붙이면 결국 종교에 말려들어 “적들의 낚시에 걸려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림 IV-4>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표 IV-10> 북한의 교역 비중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국	488	23.5	737.5	27.6	738.2	25.4	1,022.9	32.8	1,385.2	39.0
한국	425	20.5	403	15.1	641	22.1	724	23.2	697	19.6
일본	463.7	22.3	474.7	17.8	369.5	12.7	265.3	8.5	252.6	7.1
러시아	46.3	2.2	68.3	2.6	80.7	2.8	118.4	3.8	213.4	6.0
태국	207.8	10.0	130.1	4.9	216.6	7.5	254.3	8.2	329.9	9.3
인도	172.2	8.3	157.8	5.9	191.3	6.6	158.4	5.1	135	3.8
기타	274.6	13.2	702.1	25.0	664.1	23.0	572	18.0	541	15.0
총계	2,077.6	100	2,673.5	99.9	2,901.4	100.1	3,115.3	99.6	3,554.1	99.8

자료: KOTRA, 『2004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년 6월호.

북·중간의 교역에는 북한의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연간 2억~5억 달러에 달한다. 북·중 교역 대부분 중국 동북 3성 및 산둥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동북 3성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64%(2005년 1월~9월), 수입액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 3성 중에서도 신의주~단둥 경로가 교역의 약 80%가 처리되고 있다. 단둥은 북·중간 전면적인 무역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은 기초 원자재 중심이다. 수산물·광물성 연료·철강·아연·나무 등 6개 품목이 전체 대중 수출액의 80.8%(2005년 1월~9월)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북한이 원자재 중심의 대중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04년 이후 대중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석탄)가 크게 증가(2004년 207.8%, 2005년 9월까지 125.3%)하고 있는 데, 이는 유가급등에 따른 중국 내 대체 에너지 수요발생과 중국의 에너지 부족현상에 기인하고 있다.

<표 IV-11> 북한의 대 중국 주요수출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HS	총 액	37.2	166.8	270.9	395.5	585.7	496.5
27	(광물성 연료, 광물류)	3.4	4.3	11.3	17.3	53.0	112.1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4.0	48.0	143.0	206.9	261.2	92.4
26	(광, 슬랙 및 회)	2.6	6.4	8.5	15.0	59.0	92.3
72	(철강)	8.7	23.7	27.9	46.8	75.0	72.1
62	(의류/부속품)	0	26.8	38.3	52.2	49.1	58.3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9.9	4.6	9.3	13.6	14.7	14.8
79	(아연과 그 제품)	0.1	0.2	0.4	13.5	34.6	11.4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주요 대중 수입품은 에너지와 식량 및 생필품 등이다. 북한의 에너지 조달은 거의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총 원유 도입량의 86.8%를 중국으로부터 도입(2004년)하고 있다.

<표 IV-12> 북한의 대 중국 주요수입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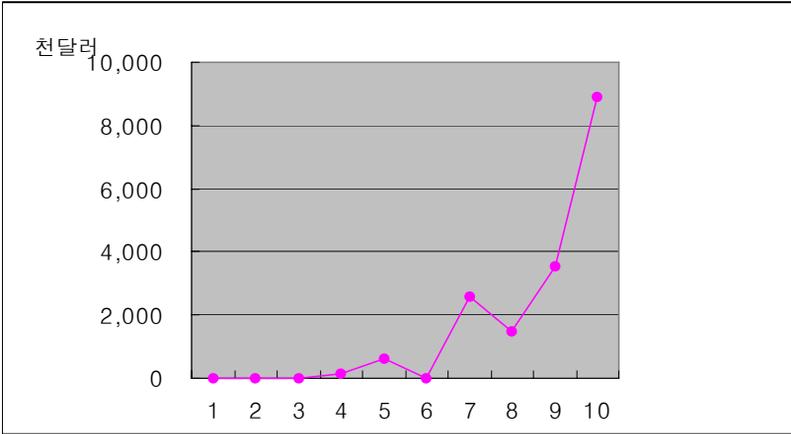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HS	총 액	450.8	570.7	467.3	628.0	799.5	1084.7
27	(광물성 연료, 광물류)	117.9	161.8	118.0	180.7	204.4	285.7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1.4	6.7	10.4	63.6	140.6	104.2
26	(광, 슬랙 및 회)	14.4	23.1	26.4	27.0	39.6	77.0
72	(철강)	21.0	23.4	27.5	39.6	45.8	56.6
62	(의류/부속품)	17.3	23.3	25.1	14.6	32.0	52.1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34.0	62.6	29.9	50.0	15.3	50.3
79	(아연과 그 제품)	22.7	22.1	20.8	20.7	39.6	35.1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북한과 중국간의 투자협력도 크게 활성화하고 있다.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제정 이후 1995년까지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3건에 불과했으나, 1999년 말까지 중국의 대북한 투자기업은 식당, 상점, 수산양식업 등 6개, 투자 누계액은 188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2년 7·1조치 이후 대북 투자 급속히 증가, 2002년 약 70만 달러, 2003년 약 100만 달러, 2004년 약 5,000만 달러, 2005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¹²⁸

¹²⁸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서울: KOTRA, 2006), p. 14.

<그림 IV-5> 중국의 대북한 투자 실행액 추이



자료: KOTRA, 중국대의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 년호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은 주로 지하자원 및 목재 등 원자재 개발, 에너지, 항만 및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사용권 확보, 의류, 신발, 식품 등 소비재 상품의 대북 수출과 백화점 및 호텔업 등 서비스업 진출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자원개발 분야에 중국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북한은 대북 투자자문회사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를 설립(2004. 2)했다. 이어 ‘대북투자설명회’를 심양(2004. 11)에서 2005년 2월에는 ‘조선투자환경설명회’ 개최(북경)했다. 같은 해 3월에는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및 환경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평양국제상품전’(2005.5)을 개최, 14개국 90개사의 전시참가를 유도했다. 2005년 투자를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한 중국 기업인만 해도 약 1만 명이 넘는다. 평양 상주 비즈니스 인원만 해도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중국은 약 2억 6천만 위안을 북한에 제공하여 대안친선유

리공장을 건설(2005.10 완공)했으며, 무산철광 및 혜산 구리광산, 회령 금광, 만포 아연광산, 용등 탄광 등의 개발 및 채굴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표 IV-13> 년도별 중국의 대북 투자현황

(단위: 개사, US\$ 천, %)

연도	기업수	투자액	점유율
1990년 이전	2	790	4.2
1991	1	47.8	0.3
1992	0	0	0
1993	0	0	0
1994	1	270	1.5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1	160	0.9
1999	1	610	3.3
2000	0	0	0
2001	2	2,600	14.0
2002	4	1,503	8.1
2003	5	3,526	19.1
2004	8	8,998.8	48.6
합계	25	18,505.6	100

자료: KOTRA,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KOTRA, 『2004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19에서 재인용

중국과 북한은 물류운송의 활성화를 위해 신의주~단동 제2철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은 동북지방 개발에 대비, 기존의 서해 대련항을 대체할 새로운 항구로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라진항을 주목해 라선시 인민위원회와 중국 훈춘시 ‘동린무역공사’ 및

‘훈춘국경경제협력지구보세공사’가 자본금 50대 50으로 출자,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하고, 중국은 라진항의 2개 부두를 50년간 독점으로 사용하는 대신, 중국은 북한내 도로·관광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하기 위해 3,045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경제성장을 위한 원자재 공급처나 저임금 국가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의 유용광물을 개발, 중국의 경제개발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접근은 한반도에서의 총체적인 영향력 우위를 유지하려는 정책기조에 기인한다. 북한의 북미·북일 관계 개선 시 대북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 데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7·1조치에 의거한 생산력 확보를 위해 해외자본 및 기술유치 대상국으로서 중국이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생필품 생산 및 광산개발 등은 북한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통적 우호관계에 근거하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서방 경제협력 제한의 탈출구로,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체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향후 북·중 경제관계는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력강화’라는 중국의 대북관계 16자 원칙에 따라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3. 북한 경제개혁 평가 및 전망

7·1조치가 이루어진 지 4년이 경과하면서 북한 경제의 변화를 보는 시각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체제내 개혁’에서 ‘체제의 개혁’으로¹²⁹ 그리고 그 방향은 점진적인 시장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¹³⁰과 경제체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으며,¹³¹ 오히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¹³²로 인식하고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도 북한의 7·1조치를 비롯한 경제변화조치가 기존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왜곡된 경제현실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는 하나, 시장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아직은 더 두고 봐야한다는 유보적 입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비판론적 시각에서는 북한이 취한 경제개혁조치가 실패할 것으로 내다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의 근거로 현재 농민시장 등 제2의 경제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들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인 물자공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북

¹²⁹ 임현진·정영철,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7권 1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4), pp. 123~166.

¹³⁰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국제정치논집』, 제26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p. 209~229.

¹³¹ 신지호,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12. 6).

¹³²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2002), pp. 14~16; 연하청, “북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우리의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2), p. 27 참조.

한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단과 전략으로는 이의 타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불가피하나, 체제 붕괴를 우려한 대외개방의 소극적인 자세, 북한 핵문제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봉쇄조치가 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다소 정치적 차원의 상반된 논의를 떠나 7·1경제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 경제개혁을 시장화의 관점에서 단순화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과연 시장화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혁과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개혁과 시장경제 원리를 대입·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경제개혁에 따라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개혁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제사회적 현상을 시장화나 개혁의 각도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서는 시장화에 대한 북한이 시각이나 김정일의 인식 및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개정된 경제관련법이나 형법을 통해서 본 북한의 개혁을 진단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앞서 언급한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의 비교도 시도할 것이다.

가. 북한 경제개혁 조치의 시장화 여부 평가

경제개혁을 체제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개념적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폴라니」(K. Polanyi)는 ‘근대로 가는 장기적 과정¹³³’을 변화(transformation)로 보고 역사적 관점에서 이를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다. 반면, 「코르나이」(J. Kornai)나 「라빈」(M. Lavigne)은 정치·경제·사회라는 복합적 차원에서 접근, 체제 자체적인 변화에까지 이르는 개혁을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코르나이」의 경우 변화는 ①공식적 지배 이데올로기 또는 공산당 지배에 의한 권력구조, 국가소유권, 관료적 조정 메커니즘 등의 3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이 바뀌어야 하고, ②그 변화가 상당히 급진적(moderately radical)이어야 하나, 시스템의 완전한 변혁까지는 달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¹³⁴ 또한 개혁 사회주의의 과정을 시장화→사유화→자유화(민주화)로 구분·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장화는 개혁사회주의의 1단계로서 가격개혁으로부터 시작, 시장사회주의를 거쳐 기업의 자주관리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관료적 조정 메커니즘이 시장조정 메커니즘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았다.

「라빈」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인 공산당의 유일 통제(one-party), 단일한 국가소유제(one-property), 중앙집권적 단일 계획(one-plan) 체계의 일부를 교정하는 작업을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은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

¹³³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London: Gollancz, 1945).

¹³⁴ Kora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361, 388.

하고 있다.¹³⁵ 「라빈」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개혁 작업이 ①공산당의 통제력 완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분권화, ②국가소유의 독점 완화를 통한 소유제도의 다양화, ③시장적 요소도입을 통한 정부의 계획과 시장의 조화라는 3가지 형태로 추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결정의 분권화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①중앙명령 계획경제체제의 이완을 통한 지방정부와 기업소·공장으로의 자율권 행사 영역이 확대되고, ②경제영역을 정치영역과 분리함으로써 경제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 부문을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상에서 볼 때, 사회주의 경제·사회변화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의도적이고 대폭적인 변혁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의 이용, 또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 그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개혁에 의한 변화는 개혁·개방은 물론, 체제전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종래의 사회주의의 틀을 넘어설 정도의 경제제도상의 대폭적인 변화는 ‘체제전환’, ‘체제이행’이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¹³⁶

이상의 논지를 따를 경우, 북한 경제·사회의 변화는 궁극적으

¹³⁵ Lavigne, M.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pp. 29~43.

¹³⁶ 개혁·개방은 경제체제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주의 명령경제의 표피를 깨고 나오는 과정”으로서 당의 통제완화, 국가소유 독점 완화, 계획경제원칙 하에서의 시장요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리활동의 확대, 가격통제정책의 이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등을 의미하는 반면,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채택하고, 세계 자본주의로 편입됨으로써 구조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지표상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과정으로 특히 자본주의의 투입 및 산출 기능을 지닌 새로운 시장제도의 구축이 이루어지면, 이런 제도를 통해 대외경제관계에 있어 거래가 급속히 확대됨. 김성철·김영운 외, 『북한의 경제전환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138~139.

로 체제내 변화(change within the system)에서 체제자체의 변화(change of the system)까지 확대·해석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취하고 있는 전략과 정책이 ‘체제내 변화’에 머물고 말 것인지, 아니면 ‘체제 자체의 변화’로 옮겨갈 수 있는지, 또 옮겨가고 있는지 등을 진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동유럽 국가와는 달리 과거 또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가 당내분열이나 시민사회의 재등장, 정치적 동요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유럽 국가에서 체제전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유화나 민주화, 시민사회의 등장,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 및 교류협력의 확대 등을 북한 체제의 ‘내적 변화’나 체제전환의 가능성 지표로 삼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경제·사회 변화의 기준이나 지표를 제시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경제·사회의 변화가 정치 및 타 분야와 연결되어 있으며, 급진 또는 점진적인 변화 등 시간적인 면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를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변화에 적용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 즉 ①계획경제의 비중 축소, ②가격 자유화, ③소유권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경쟁 도입, ④물질적 인센티브의 확대, ⑤국제경제에의 참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계획경제의 비중 축소에서는 ①국가계획 대상 물자의 품목 및 비중, 생산단위의 생산액 중 직접판매 비중, ②생산재 및 소비재의 거래 중 비국영 상업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의 비중, ③국가재정 지출 중 인민경제비의 비중 감소율, ④국가재정에서 중앙재정비중의 감소 추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가격자유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①암시장과 공식가격 격차, ②소비재 가격의 자유화 정도: 자유화 품목, ③생산단위 및 상업유통단위의 가격결정 권한의 정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생산수단 소유제에서는 ①국내총생산에서 국유기업, ②협동소유기업, ③기타기업(외자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 지표로 들고 있는 반면,

넷째, 대외개방지표에는 ①생산단위에 대한 대외무역 결정권 부여 여부, ②북한 원화의 평가절하 추이, ③대외무역의존도 추이, ④경제특구내 경제정책 결정권의 소재, ⑤외자기업 설립 가능여부, ⑥경제특구의 수, ⑦외자유치 규모추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세부 항목에 대한 시계열적 계량화 작업은 현 상태에서는 무리인 바, 북한 변화는 총체적 차원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화, 구체적으로 시장경제화는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사회주의 경제질서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규의 적용이 무효화되고 시장경제적 질서나 법규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시장화의 형태면에서 볼 때, 북한은 동독이나 남예멘과 같이 경제통합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화가 아닌 중국, 러시아 및 동유럽 형과 같이 자체 경제개혁을 통한 시장경제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역 시장화의 기본목표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시장경제화를 이룬 상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기능이 적용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1) 경제조정기구로서의 시장

첫째, 시장이 경제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경제는 무수히 많은 경제단위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생산수단의 선택과 생산물의 이용 및 분배 등과 관련하여 경제단위 간의 이해관계를 파생시키고 있다. 경제단위 간의 이해관계는 이를 조정하는 기구(mechanism)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전통과 시장 및 계획 등이 있는데, 시장경제체제에 있어 지배적인 경제조정기구는 바로 시장이다. 시장기구에 의한 조정은 가격기구 또는 시장원리에 의해 생산자원이 투입되고 생산물이 분배됨을 의미한다. 시장기구가 기능하는 곳에서는 ①개개의 경제단위가 스스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②이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③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추진한 경제개혁은 이상과 같은 의미의 시장기능이 공식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와 같은 기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곳은 암시장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내의 수급여건 및 국제시장의 상황을 고려, 가격을 크게 인상했으며, 각종 상품과 노동 및 서비스의 가격을 생산비 개념을 고려하여 현실화했다. 이는 ‘가격의 일원화 및 세부화 원칙’에 따라 정했던 국정가격체계가 사실상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가격 흥정문화도 발생하고 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식량을 제외한 물품의 배급제를 폐지, 국영상점에서 필요에 따라 화폐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량배급권을 제외한 기타 일용품의 배급권 제도는 모두 폐지,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식량판매소와 국영상점에서 화폐를 가지고 물건 구매가 가능하며, 종래 국가가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배급하던 식량과 생필품을 주민들이 인

상된 가격으로 직접 구매하고 있다. 식량은 소요량의 50%를 배급표를 발급받아 국정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반면, 나머지 50%는 개인이 농민시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배급제의 폐지와 생산가를 반영한 물품거래는 화폐를 매개로 하는 화폐경제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개개의 경제단위가 스스로 결정하며,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북한이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적용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원칙과 국가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가격당국이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 지표 상품의 최고 한도가격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고는 있으나, 그와 같은 가격이 국가계획(가격제정위원회)에 의거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가격이 “경제관리체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국가가 조정”하되, 변동폭은 5%~10% 범위(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 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의 언급)를 설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 종합시장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것이 국가 조직 형태인 국영기업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자본주의 시장과는 다르다. 물론, 이와 같은 ‘북한식 시장화’가 점진적으로 ‘시장화’로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도 성립할 수 있다. 이는 ①정부의 배급기능을 농민시장이 대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기업소간의 다양한 뒷거래 활동들이 중앙의 하부단위에 대한 체계적인 자재공급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한편, ③공장·기업소 등 하부단위들의 자율성 증대와 ④상당수 간부층들이나 주민 차원에서의 자구적인 경제활동의 성행 및 ⑤향후 전통적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경제활동의 확대가 당국 차원에서 계속 묵인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2) 사유재산제도의 개선

경제체제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 가장 특징적 요소는 재산권의 소유형태다. 재산권은 생산적 자산, 즉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를 지칭하며, ①재산이 되는 대상물의 처분, ②재산 대상물의 사용, ③재산 대상물이 발생시킨 생산물이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재산권의 소유형태는 일반적으로 사적(private), 공적(public) 및 집단(collective)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어떤 경제체제하에서도 재산권이 완전히 사적이거나 공적 또는 집단적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며, 이의 세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경제체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체제하의 생산수단은 그 사회 구성원인 각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사유재산을 일정한 법질서 내에서 마음대로 활용·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유재산에 대한 후손의 상속권까지 인정하고 재산권의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소득분배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분배에 대한 최대한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합리적 적용).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1998년 개정헌법을 통해 생산수단의 소유주체와 관련, 그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조치에 따른 북한 변화에서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가져오는 사유재산제도의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오히려 “사적소유제도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

주성을 유린구속하고 제 배를 불리우는 악독한 착취제도”라며 자본주의 사유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바 있다. 기업의 사적 소유에 대해서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 다만,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인 임대제를 시행하고 있고 있으며, 상속권에 대한 범위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국가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는 음식점, 당구장, 가라오케 등 개인업소가 평양시내에 등장했다. 이들 업소는 개인이 북한 원화로 국가건물을 임대·운영, 소득에 따라 ‘국가납부금(소득세)’을 당국에 내고 나머지는 개인 처분, 이익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⁷

상속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2002년 3월, 헌법 제24조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에 따라 4장 57조에 달하는 상속법을 제정, 개인소유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상속대상 재산은 ①노동에 따른 분배로 갖게 된 재산, ②국가 또는 추가적 혜택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③개인부업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④살림집, 도서, 화폐,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 ⑤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⑥공민으로부터의 증여 재산 및 합법적 취득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상속법 제13조). 특기할 만한 것은 상속재산에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개인자금으로 지은 주택은 물론, 국가가 장기 임대방식으로 주민에게 공급한 국가소유 주택의 임대권까지도 상속 가능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하 소유제도상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치를 바탕으로 향후 개인소유권을 확대하여 토지나 건물을 포함, 생산수단

¹³⁷ 『연합뉴스』, 2004년 4월 11일.

을 사유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제가 도입될 경우, 2002년 7·1조치 이후 국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음식점, 당구장, 노래방, 여관 등 ‘임대 개인업소’가 가장 유력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바 같은 몇 사람이 돈을 모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합의제 식당”과 같은 형태가 새로운 사적 경제활동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면,¹³⁸ 개인적인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를 통해 향후 사유재산 형태의 다양화가 제한적이거나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분산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경제는 그 목적과 성향 및 역할이 각각 다른 경제단위와 이들 경제단위가 경제활동을 위해 결정하는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의사결정의 분산과 집중 정도에 따라 크게 완전집중(complwtw centralization), 관리적 분산(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조절적 분산(manipulative decentralization) 및 완전분산(complete decentralization)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의사결정이 완전집중되거나 완전분산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느 경제체제든 관리적 분산이나 조절적 분산의 의사결정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리적 분산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중앙당국이, 세부적인 결정은 보다 낮은 단계의 권위 수준에 맞추어 아래로 이양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부조직의 권위수준

¹³⁸ 『중앙일보』, 2003년 12월 18일.

이나 결정범위는 명령이나 결정권 행사에 대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통제 가능하다. 조절적 분산은 의사결정행위에 대한 자유를 관리적 분산과 같은 정도로 명백하게 제한하지 않는 의사결정구조로 시장기구가 기능하고 있는 결정구조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시켜왔다.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첫째, 중앙계획지표 축소 현상이다.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 범주를 전략적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지표에 국한시키고, 세부지표는 해당기관·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생산계획 하달 기능을 축소하여 전략적이고 국가적인 주요 지표가 아닌 경우에는 계획수립 권한과 기능을 하부 단위로 이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2001년 10월 3일 담화에서 “계획지표들을 중앙과 지방,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획경제라고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생산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중앙에서 계획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둘째, 지방경제와 관련, 시·군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한을 하향 이양하고 불필요한 제약을 해제함으로써 지방경제의 자율권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공업의 계획권과 생산물 가격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을 확대하고,¹³⁹ 부문별 예산수납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자율권을

¹³⁹ 국가는 가격 제정과 관련, 원칙과 기준만 정해주고 공장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가격일원화 원칙을 완화

보장¹⁴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소비상품의 가격과 규격 같은 것은 국가적으로 제정원칙과 기준을 정해주고 상급기관의 감독 밑에 공장자체로 제정하여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10월 3일 담화). 이는 부분적이나마 하부단위로 하여금 일부 가격의 결정권을 허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하급단위의 자율성은 7·1조치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동농장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고 농장원들에게 더 많은 분배를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조선신보, 2002.8.2)하고 있는 점이나, 생산계획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율처분권을 인정, 농업부문에서는 실적평가단위를 기존의 작업반에서 축소하고, 의무수매량(30%)을 제외한 초과생산량(70%)의 자율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경제의 효율성 창출, 즉 평균주의의 타파와 경쟁체제의 도입 현상이다. 북한은 당간부가 행사하던 주요 의사결정권한을 지배인에게 이양함으로써 당의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경영효율성이 저해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7·1조치로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실시, 판매실적이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가하면, ‘번

¹⁴⁰ 부문별 예산수납제는 부문별 성, 관리국이 직접 기업소의 예산수납계획 집행을 감독·관리하고, 예산단위들이 자체자금을 유보하며, 현물수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수납제도와는 큰 차이를 가진다. 이는 예산수납체계에서 지방 행정기관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지역·기관본위의 이기적 성향을 제거하고, 중앙에 예속된 기업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려는 시도이자,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할분담은 북한 재정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재정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에 의한 평가'를 통해 기업과 공장을 판매실적으로 평가하고, 생산실적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의 독립채산제 강화와 관련, 자재구입에서 생산물 판매까지 모든 경영활동의 권한을 상당부분 공장·기업소 경영진에 부여하는 것과 함께, 계획작성과 가격제정, 제품규격화사업, 물자와 생산물 처리 등에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기업소들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과거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했던 감가상각비를 '생산확대기금' 형태로 남겨두고 자체 실정에 맞게 생산준비, 개보수, 설비현대화, 과학기술발전 등에 투자하게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¹⁴¹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평가가 가능하다.

넷째, 경제적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상이다. 북한은 '경제적 효과성'을 '생산자원 한 단위의 지출로 얻게 되는 경제적 실리의 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 경제에서의 실리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실리보장'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원을 어떻게 분배리용하는 것이 가장 리롭고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고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효율적 경제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연합기업소의 하위 공장·기업과 지도·관리 기능에 중앙의 경제지도기관의 기능을 더하여 줌으로써 자율권이 확대된 회사 형태('총회사')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신용장 개설,

¹⁴¹ 김양호,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보 철학경제학편』, 제 1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연합뉴스』, 2004년 6월 13일.

대출, 예·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으로 조선합영은행¹⁴²과 신탁은행¹⁴³을 합병하여 「경영신용은행」설립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관리적 분산의 의사결정체제에서 미약하게나마 국가차원의 조절적 분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적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산적 정보체제의 구축¹⁴⁴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 정보가 수평적 경로(horizontal channels)가 아닌 수직적 경로(vertical channels)를 통해 이전되고 있는 편이 강하다. 정보가 수직적 경로를 통해 수집·전달되고 이의 처리·활용이 최상부 권력층에서만 이루어지는 집중적 정보체제(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전달도리 뿐, 각 경제단위의 의사결정권자가 스스로 정보를 발생·소유·처리·활용하는 분산적 정보체제(de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분산적 정보체제에서는 의사결정경로가 짧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된다. 물론, 분산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동기유발이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공익이 무시되거나 외부비경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소지가 많기는 하다.

북한이 공장·기업소들간 일부 원자재와 부품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¹⁴⁵하고, 각종 원자재 공급을 위한 종합도매시장 운영도

¹⁴² 1989년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일본의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합영으로 세운 북한 최초의 비국영은행.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대외결제와 용자 업무를 담당했음.

¹⁴³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음.

¹⁴⁴ 각 경제단위의 의사결정은 정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구조는 사회의 정보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¹⁴⁵ 북한에서의 자재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거 「국가물자공급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조달·공급되었으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중앙당국의 자재공급계획에 충실하면서도 과부족되는 원자재·부속품을 기업소 및 공

구상하고 있는 것(2003. 4. 28. 조선신보)은 분산적 정보체제가 제한적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물자교류시장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존재하는 시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남는 자재나 부족한 자재가 발생할 경우, 관련 계획기관에 통지하면, 계획기관이 각 공장과 기업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토대로 자재가 남는 공장·기업소와 자재가 부족한 공장·기업소를 연결시켜 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소간 물자거래는 향후 다음과 같은 방식의 물자교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상부 기관으로부터 시달이 없이도 기업이 자체 채산성 및 생산의 효율증대를 목적으로 자율적 판단과 기업간의 계약에 의해 자재 공급을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물질적 동기유인

동기는 인간을 움직이게 자극하는 요소로서 경제적 활동의욕의 원천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다. 개인의 경제적 행동은 경제행위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과 사회가 제공하는 유인(incentives)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유인은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유인은 다시 물질적 유인과 도덕적 유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질적 유인은 사회에 보다 나은 성과(performances)를 제공하는 자에게 그렇지 못한 자 보다 큰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잘 적용되고 있

장간에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체제로 바꾸고 이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 도덕적 유인은 성과 제공자에게 사회에서의 위치를 격상시킴으로써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북한은 동기유인이 비록 생존을 위한 측면이 강하기는 하나, 물질적 동기유인 체제를 일단 만들어놓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더욱 심각해진 경제난으로 계획경제가 마비되고 배급제도가 유명 무실해지면서 ‘스스로 알아서’라는 지극히 개인별 자구책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인주의적 경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임금지불이 제대로 안되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물자공급을 암시장에 의존하면서 기존 직업 외에 별도의 장사에 의존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시장에서의 사적 교환활동을 통해 개인이득을 추구하는 의식을 갖게 됐고 점차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장마당’에 나가 장사로 돈 버는 것에 더 큰 무게를 실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노동 결과에 의한 분배가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려고 했다. 이는 노동의욕 제고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인센티브제를 의미한다. ‘일한 만큼, 번만큼 분배 받는다’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북한 경제일꾼들에게 인센티브 얘기를 꺼내면 그 뜻을 몰라 되물었으나, 이제는 인센티브제를 동기부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전에는 ‘로력 일에 의한 평가’였지만, 이제는 공장 기업소들도 국가에서 강조하는 실리보장의 원칙에 따라 ‘번 수입에 대한 평가’로 평가를 받는다. 공장과 기업소가 수익을 많이 올리면 노동자들도 기본노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아 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 셈이다.

북한은 “물질적 자극은 사회주의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면서 먼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할수록 더 많은 분배를 받게 되며 자신의 물질문화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생산량 증가, 기업 관리 개선,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면서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개인 이기주의 극복 등 인센티브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꼽은 뒤 “물질적 자극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집단주의를 실현하는 경제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북한에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반영한 성과급제가 정착되면서 돈이 돌고 있다. 중앙일보가 북한 현지공장 및 농장 등 다양한 경제현장을 방문(2006.5)하여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의 절반 이상이 성과급이라고 한다. 평양시 평천 구역에 있는 『평양3월26일전선공장』의 ‘재정공시’에 따르면 2005년 이 공장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북한 돈으로 월 1만 5천원~2만원(미화 100달러~200달러 정도) 수준이었다. 4,000원 내외인 기준 임금의 4배~5배에 달한다. 최근 2년~3년 사이 설비 현대화 등을 통해 월평균 7,437만 8천원의 총수입 목표를 20%이상 초과하여 8,966만 7천원의 수입을 올렸다. 대안친선유리공장도 근로자 평균 임금 1만원 중 성과급이 6,000원을 차지한다. 이들 공장 사장들은 한 목소리로 “소속 부서와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달이 생활비(임금)가 다르게 지급되면서 생산 열기가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성과급 도입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인식변화는 판매원들의 태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히 물품만 진열

해 놓고 물건 보려는 손님을 구경하던 과거와는 달리 남한에서 온 기업인이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나름대로 꾸며 포장한 종합선물세트를 내놓는 등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벌인다. 고려호텔과 대성수출품 전시장 등의 판매원들이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는 호객행위가 그 도를 넘어설 정도다. 판매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서 팔짱 끼고 마냥 오는 손님만 응대하던 과거 모습이 사라졌다. 인센티브제로 북한 근로자의 수입이 증대되면서 주민들의 돈 씹씹이도 늘자 평양시 곳곳의 길거리 ‘매대’(포장마차 형태의 간이판매대)가 크게 늘어나고 유명 음식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농업부문 역시 농장원들의 성과에 따라 월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협동농장의 분조 규모를 10명~25명에서 7명~8명으로 줄이고 생산 목표량을 현실성 있게 책정했다. 생산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분조 스스로가 초과 생산물을 자유롭게 분배토록 조치했다.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은 2005년 벼와 과수 등 생산물을 국가 수매(kg당 알곡 40원, 곁곡 20원)로 받은 돈을 600여 명의 농장 조합원들에게 1인당 평균 40만~50만원(미화 400달러~500달러)씩 분배했다. 농장원들이 자체 소비하는 식량 분배에 더해 추가로 받은 현금이다. 신품종 벼를 개발하여 특등 상금으로 근로자의 160년치 연봉을 받은 사례도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국영농장인 칠골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백근수씨의 사례로서, 백씨는 비료를 적게 주고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벼 품종을 개발하여 무려 1천5백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3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의 월급이 6,000원이 채 안 되는 북한 임금수준에서는 엄청난 액수다(달러로는 10만 달러가 넘는 액수로 50달러~60달러선인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 급여로 환산하면 160년치 월급

에 해당한다).¹⁴⁶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기업인이나 새터민들은 “공장 근로자 임금이 월별·소속 부서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기준 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이 1년 내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성과급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 경제·사회적 현상을 통한 평가

(1) 시장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

북한 당국의 인식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7·1조치 등을 통한 시장화를 지향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북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혁·개방에 대한 최고 정책결정자의 인식이다. 김정일 개인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도적인 정책 결정과정보다는 최고 결정자의 결정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고결정권자가 대내외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국가 이익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김정일은 1980년 공식적 후계자로 부상한 이후 김일성 생존시에도 사실상 대내외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 1982년 발표한 글에서 김정일은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측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외무역이 경제적 자립과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들어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도 무역관계를 확대하려는 대외 개방적인 태도의 일단을 보여 주었다. 또한 김일성 3주기 행사 후에 김정일은 “이제 무력은 안심할 수준이 됐다.

¹⁴⁶ 『중앙일보』, 2006년 6월 9일.

앞으로는 돈 버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선 관광개발에 힘을 쏟고 나진·선봉 이외에 동서 해안에 각각 한 곳을 추가 개방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1995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인 가부장 체제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성격과 절대권력의 초독점 구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폐쇄적이고 통제된 정치·사회체제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정일의 ‘신사고와 과학기술중시를 바탕으로 낡은 관념을 버리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 관점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한 개발 추진력으로서의 정책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오히려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개혁·개방이라는 용어 대신 전환, 일신, 변혁, 혁신 등의 단어를 사용, 우리의 변화 개념과 달리 표현·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변화추구에 대해 “내게서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말라”, “사회주의 계급진지를 0.1mm도 양보할 수 없다”면서 변화에 상당한 알레르기적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2001년 1월 15일 중국 방문에 대한 서방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방언론은 조선의 최고지도자의 상해시 참관을 ‘신사고’란 용어를 쓰면서 제멋대로 해석하였다. 조선의 90년대 노정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의

전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중국식 개혁, 개방을 배우는 참관으로 묘사하였다. 김정일 총비서의 방문시 중국측은 주권존중,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에 따라 ‘개혁·개방’과 관련한 어떤 권유도 하지 않았다.”¹⁴⁷

최근 북한은 개혁·개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의 환경은 사회주의 시장이 존재하던 지난날과 다르다. 사회주의경제도 자본주의경제와 자본, 금융, 기술, 무역 등 여러 형태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조선은 1990년대 나진·선봉시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북남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성시의 공업단지 개발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곧 개혁·개방 정책의 도입과 국내경제제도의 재편이라는 결론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소련 붕괴후 로씨야는 급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의 도입으로 하여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경제가 뒤죽박죽이 되고 사회적 혼란이 조성되었으며 미국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던 군사력도 점차 쇠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선은 자본주의 나라와의 경제적 협조가 촉진되어도 『시장사회주의』 적인 체제에 기초하여 ‘전민을 유족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의 인민을 먼저 유족하게 만든다’는 중국식 정책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1999년 6월 1일 『노동신문』과 『근로자』는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는 제목의 공동논설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

¹⁴⁷ 『조선신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간다.” 2001년 2월 9일.

히 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제국주의에 문을 열어주는 개혁·개방에 대하여 추호의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이 지도 이념이자 ‘김일성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내용을 버리고 시장화의 길로 들어서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시장경제주의로의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 중국이 개혁·개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등소평을 중심으로 형성된 광범위한 반좌파 개혁 연합세력의 존재가 있었으며, 이들 세력이 모택동과 문화혁명좌파의 핍박을 받았던 구관료, 지식인, 그리고 군인들이 등소평을 정점으로 결집했고, 이들은 모택동과 좌파가 지배하던 시대에 대한 공통적인 적개심을 바탕으로 개혁과 개방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모택동 시대의 좌파적 정책과 제도로 말미암아 국가와 인민들에게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중국의 지도부는 거의 모두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실 검증을 통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입증하려고 하였고 그렇게 입증된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파와 개혁파 모두가 수용했다.

북한이 시장화를 위한 개혁·개방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정일 자신은 물론, 김일성 시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비판적 재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수령제 국가의 구조와 논리 하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 김일성 시대를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부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도 있을 뿐, 전면적인 배격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자력갱생’의 개념을 재해석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 “오

늘날의 자력갱생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도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주장은 북한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근본적인 변화와는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7월 조치를 계기로 비록 가격부문의 개선, 공장·기업소 경영의 자율권 부여,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등을 주요 골격으로 하는 경제·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생산수단의 국가적 협동적 소유의 근본적 틀과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이나 경제관리체계의 틀을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주의 체제 내 개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변화조치가 체제변화와 연결된 경제개혁적 조치라기보다는 체제내에서 경제관리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종합적 경제회생정책으로 판단¹⁴⁸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경제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7·1조치를 통해 식량 및 소비품 가격과 집세 등의 인상, 임금의 현실화, 가계재정의 개인 책임제 등이 적용됨으로써 일반 개인에게는 자기가 받은 노임으로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실리’적인 『경제마인드』를, 공장·기업소에 대해서는 수익에 따른 분배의 차등 조치 등을 통한 이윤마인드 고취시킴으로써 경제적 실리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회주의 체제 내의 경제실리주의일 뿐, 대외적 차원에서 체제 자체를 변화시켜 추구하는 실리주의를 나타내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¹⁴⁸ 조영기, “북한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 7·1조치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2004. 4. 23).

(2) 경제법 및 형법 변화를 통해선 본 시장화

제·개정된 경제법이나 형법에서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질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법전 서문에서 북한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빛내이며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자면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공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주의 헌법과 현행 부문법들을 대중용으로 편찬하여 발행한다”고 기술하여 대중들이 사회주의 변화과정에서 정부의 ‘우리식 사회주의 정책’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법전 발간의 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개정·제정된 법률 내용에서도 인민계획경제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책임 일군의 불법적 행위를 세분화하여 처벌하고,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한 죄, 계획에 없는 비법적 경제관리죄, 품질감독질서위반죄, 실리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국가소유 살림집의 비법적 거래죄, 주체농법위반죄, 양어·양식질서위반죄, 상품공급, 판매질서위반죄, 가격사업질서위반죄 등을 신설하거나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점은 현재 북한 사회에는 경제개혁·개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반 사회주의적 경제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개혁부패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과 관련된 부패는 특히, 대외경제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질서 문란행위가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화관리질서위반죄, 비법적인 외화거래, 외화벌이죄 등 불법적인 외화거래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물론, 외국투자기

업과 외국인의 탈세죄, 비법적 상행위, 법인가장 경제거래죄, 상표권 침해죄, 거간죄, 고리대죄, 노력착취죄 등 탈세, 상표, 불법적 폭리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구체화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을 통한 효율성을 창출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범죄의 대부분은 주민들의 식량난 등 경제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기관·개인의 밀주죄, 생산제품의 비법처분죄, 난방열 도용죄, 주민연료 공급질서위반죄, 군수품을 팔고 산 죄, 국가재산 약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사례금, 이익금을 바치지 않은 죄 등은 물자와 자원 부족 등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주민생활의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바탕, 예를 들어 원자재를 비롯, 전기, 수송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이 당면한 경제 현실에서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3) 산업생산성 창출과 주민생활

경제개혁 조치가 투자자원 부족, 에너지·원자재난 등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는 하나, 농업·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농업부문에서는 영농의욕 증대, 토지이용률 제고 등으로 곡물생산이 증가(2001년 395만 톤→2002년 413만 톤→2003년

425만 톤→2004년 431만 톤→2005년 454만톤: 표 IV-14 참조))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로 “농장원들이 이전에는 조건이 좋지 않아 농사를 단념했던 토지도 토지사용료를 내는 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할 궁리를 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2004.1 청산협동농장 최영호 부위원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례로 “남새는 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있고 흠이 너무 많으면 수매가 되지 않으니 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2004. 2 최영호 청산협동농장 부위원장).

<표 IV-14>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연도	인구 (천명)	공급량				소요량			부족량	
		북한 생산량(A)	해외 도입량	남한 지원량(B)	지원비율 (B/A) %	계(C)	최소소 요량(D)	권장소 요량(E)	D-C	E-C
1991/92	20,798	4,427	1,290	-	-	5,717	4,934	6,002	-783	285
1995/96	21,684	3,451	962	150	4.4	4,563	5,145	6,258	582	1,695
2000/01	22,253	3,590	1,225	500	13.9	5,315	5,280	6,422	-35	1,107
2001/02	22,369	3,946	1,400	-	-	5,346	5,307	6,456	-39	1,110
2002/03	22,522	4,134	1,005	400	9.7	5,539	5,343	6,500	-196	961
2003/04	22,709	4,253	809	400	9.4	5,462	5,388	6,554	-74	1,092
2004/05	22,936	4,311	697	300	7.0	5,308	5,442	6,619	134	1,311
2005/06	23,165	4,540	450	500	11.0	5,490	5,496	6,685	6	1,195

자료: 통일부, 농촌경제연구원

- 1) 국내생산량: 농촌진흥청 발표자료(쌀, 옥수수, 감자, 잡곡, 두류)
- 2) 최소소요량: 식용은 1인 1일 평균 500g 기준, 기타소요량은 식용의 30% 기준
- 3) 인구규모: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공업부문에서도 공장·기업소 지배인의 경영자율권 확대로 수익창출에 주력함으로써 경공업부문 성장률의 증가(2003년도 2.3%성장)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03년 12월 조선신보

는 “신의주신발공장·강서신발공장을 비롯한 각지 신발공장들에 서는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0만 켈레의 각종 신발을 더 생산”했음을 밝힌 바 있다.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부문이 상업·유통부문이다. 상업부문에 서는 종합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2003년도 도·소매업 성장률이 9.8%로 나타나 전체 성장률 1.8%를 크게 상회했다. 2004년 3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도 “통일거리 시장을 방문해 보면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때, 개혁의 성과는 상업유통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부문의 개혁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는 북한이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을 전환,¹⁴⁹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⁰ 더 나아가 시장을 ‘북한식 경제개혁’과 연결하는 의도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¹⁵¹

2003년 3월말부터 평양의 구역마다 있는 ‘농민시장’은 시장으로 불리어지고 농산물만이 아닌 각종 공업제품이 종합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종합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기존의 농민시장과는 다르게 시장육성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

¹⁴⁹ “시장도 상품유통의 한 형태”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하지만 시장의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조선신보』, 2003년 6월 16일.

¹⁵⁰ “나라에서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양에서도 구역마다 있는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농산물만이 아니라 각종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이름을 고친 셈이다” 『조선신보』, 2003년 4월 1일.

¹⁵¹ “종합시장의 창설이 보여주듯이 대담하고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조선의 경제개혁의 특징” 『조선신보』, 2003년 6월 16일 및 “시장운영이 처음인 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전문가 양성, 경험도입을 비롯한 협조를 가능한 한 받으려고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10일.

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기업으로 하여금 종합시장에 더 많은 물자를 공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기업에 대해 북한은 종합시장 점포를 추첨으로 배정해 합영합작 무역기업의 직매점을 설치하게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종합시장의 ‘시장 사용료’를 판매량에 따라 정확히 받는 등, 시장의 기능을 활용,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¹⁵² 종합시장이 기업의 잉여생산물을 내다 파는 차원의 단순 시장이 아닌, 7·1조치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집체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⁵³ 종합시장은 평양의 중심거리에 간이 판매대, 상품진열장, 호프집 등의 출현과 함께 대형 마트식 형태로 조성되면서 북한 상업유통의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⁴

이상과 같은 경제개혁을 통한 산업생산성의 제고는 7·1조치 이후 북한경제 전체를 플러스 성장세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1990년부터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에 있던 북한 경제는 1999년 6.2% 성장을 시작으로 이후 플러스성장세를 2004년까지 유지하고 있다(표 IV-8 참조).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5년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남북교역 10.5억 달러를 포함할 경우 북한의 무역은 소련연방 해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1990년 북한의 무역은 약 42억 달러였으나, 소련연방 해체의 충격으로 1991년에는 약 26억 달러규모로

¹⁵² 『중앙일보』, 2003년 6월 26일.

¹⁵³ 통일부, “금년도 농민시장 운영변화 동향,” p. 3.

¹⁵⁴ 『연합뉴스』, 2003년 10월 02일.

급감했다. 그러나 무역규모의 증대에는 다음과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다. 첫째는 북·중 무역의 증가가 북한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북·중 무역을 제외할 경우 북한 무역은 1994년부터 구조화되기 시작한 14억~15억 달러대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북한무역의 성장이 북한의 중국경제 의존도 증가에 바탕을 두고 있어 북한 경제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북한경제의 취약성은 1999년 이후 증대되고 있는 무역 및 반출입수지 적자폭의 확대이다. 축소경향을 보여주던 수지적자폭이 반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가 정상적 거래보다는 지원성 거래를 바탕으로 수출능력의 향상보다는 수입능력의 신장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표면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다.

먼저 일반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다. 7·1조치로 물가는 평균 25배 오른데 비해 임금은 평균 18배 인상되었다. 국가 유통체계가 거의 마비되어 있어 식량과 생필품의 대부분을 장마당에서 높은 가격에 조달한 것을 고려할 때,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쌀 공급소와 국영상점은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생산현장에서는 전력, 원부자재 부족으로 일감이 없어 임금을 거의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¹⁵⁵

그 다음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각종 요금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7·1조치 이후 사실상 세금이 징수되었다. 인민반장이 각 가정

¹⁵⁵ 새터민 김00의 증언, (2006년 10월 2일).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기제품에 대한 목록을 세대별, 제품별 작성,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출의 일정량을 국가에 내던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토지 비옥도에 따라 경작지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구분하여 토지세 명목으로 추수 후 국가에 내도록 했다.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개간한 ‘빼기밭’에 대해서도 평당 12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무상이던 비료값, 종자값까지 내게 되었다. 그 밖에도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등중학생의 경우 한 학기에 학교에 각종 명목으로 1,000원~1,500원을 납부하며, 병원에서의 진찰과 입원은 무료이나, 약은 약국에서 개인이 구매하도록 바뀌었다.¹⁵⁶

(4) 주민의 의식변화와 시장화

국가계획의 영역이 축소되고 시장기능이 확대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의식변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시장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기업평가 기준을 종래 「생산물」 위주에서 「이윤」 중심으로 전환, 수익성에 기초한 기업경영마인드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기업들은 종전에는 생산만 하면 되었으나 「번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되면서 판매까지 신경써야 하니 품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2003.11 조선신보).

둘째, 배급제가 폐지되고 실적에 따른 차등임금제 실시로 사적

¹⁵⁶ 또 다른 탈북자에 의하면, 입원비를 하루에 10원씩 받았다 한다. 『조선일보』, 2003년 3월 5일.

소유 개념과 「일한 만큼 번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조선에서는 가정주부들의 직장복귀가 늘고” 있는가 하면(2003.6 조선신보), “2.8직동청년탄광(평남 순천)은 탄부들의 생활비가 월평균 3만 원이며, 최고 많은 사람은 6만 원을 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2002.10 조선신보).

셋째, 종합시장은 경영자에게 품질·상표·경쟁의식 등 시장경제체제의 경영기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볼 때, 개혁조치를 통한 의식변화는 부업·장사 등 일부 영리활동이 합법화에 따른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주민생활이 「생존」 차원에서 「이윤추구」 차원으로 진전되는 등 변화의 잠재력 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아 경제개혁은 공적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이념적 가치보다는 실질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 의식을 변화시켰으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사적 자율화’(privatization)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 이전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와 유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나,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미약한 수준이다. 북한의 가치의식의 변화가 실질적 정치 분야의 체제개혁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주민의 가치의식 변화는 단순한 물질주의적 실용주의에 가까우며, 시민사회의 경험이 없어 아직 왕조시대의 의식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¹⁵⁷

¹⁵⁷ “2000년까지는 내 나라를 제일 좋은 나라로 알았다. 1998년도에 처음 중국에 갔었다. 그 때서야 세상에서 제일 힘든 나라가 내 나라구나 알았다. 2001년

(5) 타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한 북한의 시장화

북한의 경제개혁은 체제전환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 점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개혁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북한이 추진한 경제개혁은 중국과 베트남은 물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개혁과도 부합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다. 개혁의 내용과 질적 수준에서 이 들 국가들보다 함양미달이다.

우선 개혁의 관점에 있어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완전히 다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불가피성으로 인한 소극적인 개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이라는 큰 차원에서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최우선적인 과제를 두고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베트남도 1986년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개혁으로의 방향과 일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만을 추진함으로써 체제내적 비효율성을 제거하지 못했다. 북한 정권의 세습적 속성으로 인해 이전 시기의 경제노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새로운 공식적 표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중국의 경우 개혁초기 지도층과 지식분자, 일반국이 반극좌 노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등소평의 개혁노선이 전면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나¹⁵⁸ 북한의 경우 기득관료층과 군부

1월에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알았다. 감옥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라는 생각이었는데 감옥에 가서 보니깐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새터민 안 00의 증언 (2006.9.30).

¹⁵⁸ 덩샤오핑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기초하여 마오쩌둥의 경제노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공세적인 개혁개방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 정책은 중

의 보수적 성향이 유지되었다.

둘째, 북한의 경제는 소유구조에 있어 국유부문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앙의 계획당국이 비국유부문이나 사적 영역의 발달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비국유부문이나 사적 영역이 발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셋째, 국제정치적인 환경이 북한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어 세계경제체제에 편입하기 어렵기는 해도 북한 스스로도 대외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의사와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채,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과 다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개혁착수 시점에서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의 경쟁압력도 낮은 편이었다. 북한의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국제경제의 침체 등 불리한 여건에 처한 상태에서의 개혁조치를 추진했다. 북한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발휘할 수 있는 개혁독재를 지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질이 낮은 것은 최고권력자인 김정일의 의도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의 근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종일관된 의지다. 개혁의 질이 낮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정일은 2002년 7월 28일

국의 경제현실과 접목되어 의도한 방향으로의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실험과 조정’이라는 형식을 밟기는 했으나 덩샤오핑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성공 후 확대’ 형태를 띠었다. 반면 북한의 경제정책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정책이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승렬, “7·1 조치 4년 북한 변화의 평가 및 전망: 중국사례의 정책 함의,” (필자와의 자문 회의, 2006. 8. 24)시 언급.

러시아 이바노프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경제관리 개선은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의 경험을 참조했으나 이들 나라에서는 개혁을 실시하면서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일이 종종 있었다”¹⁵⁹며 독자적 길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개혁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사회주의 경제개혁이 질적 수준에서 큰 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과감한 개혁이 북한의 체제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실질적 경제개혁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체제위협적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생각이 확연히 바뀌지는 시점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개혁은 농업분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초기에는 무엇보다도 농업분야의 개혁을 위해 전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소유제와 관련 농업과 기업부문에서, 특히 농업 및 농촌부문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극도로 저하된 농민들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근본적인 소유형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인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동농장경영체제를 탈피해야 하며, 농산물 가격의 시장가격으로의 판매, 토지 임대, 작물선택, 영농방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토지 임대권의 이양으로 능력있는 농가의 육성과 동시에 규모의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농의 정착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¹⁵⁹ 『조선신보』, 2002년 7월 31일.

(6) 종합평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는 애초부터 시장화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 비공식 부문의 경제가 크게 팽창, 계획경제체제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해결이 필요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주식의 60%, 생필품의 70%까지 농민시장에서 구입, 비공식 경제영역이 비대해 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북한은 비공식 경제부문을 축소하는 동시에 공식 경제부문 운용방식을 개선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2002년에 실시된 7·1조치와 그 이후 추가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치를 통해 북한은 비공식 경제부문을 축소시키고 공식 경제부문의 정상화를 지향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비공식 부문의 확장을 방지하고 공식부문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는 추진내용의 특성상 시장화로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¹⁶⁰ 이는 일명 ‘북한식 시장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적용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원칙과 국가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과 구별되는 북한 ‘독자적인 시장형태’다.

‘북한식 시장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장화라고 할 수 없으나, 시장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는 평가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고려에서다. 즉 ①북한이 개혁을 공식화하

¹⁶⁰ 홍익표·동용승·이정철,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변화 및 향후 개혁 과제-중국과의 비교 연구』(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 xiii.

고 그동안 크게 기피해 왔던 「경제개혁」, 「시장」 등의 용어를 2003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②유통시장의 통화량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가격 적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수익중심의 공장·기업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④대외경제 차원에서 경제개방을 위한 준비를 가시화하고 있는 점¹⁶¹에서 볼 때, 북한의 경제개혁은 그 정도와 수준면에서 시장화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의 개혁 조치가 성공한다면, 북한은 보다 과감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개혁 조치 중에서도 가장 관심있게 보아야 할 점은 기업에 대한 제한적 자율권 보장과 소득의 차등화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상황을 예비할 수 있으며, 개인은 자체 수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의 소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혁과 관련, 향후 북한 체제변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로는 ①계획 대상 물자의 비중 감소, ②생산액 중 직접 판매비중의 증가, ③구매, 생산, 판매, 가격에 대한 각 생산단위 의사결정권의 제한적 확대, ④배급제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재 구입 선택권 확대, ⑤지방재

¹⁶¹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자본주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김 일성대학 경제학과에 자본주의 강좌를 개설한 바 있다. 1998년에는 나진기업 학교 등 무역전문가 양성기관을 설립했다. 또한 2000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연구원」을 설립, 60여 개가 넘는 외국인투자관련법 조항을 계속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의주·개성·금강산 등 지역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선포한 이래, 국제바코드기구, 국제섬유수출기구,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무역결제망(SWIFT), 각종의 지적재산권 협약 등 일부 국제경제기구 및 국제협약에도 가입했다. 1998년도 이후부터 중국, 호주,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에 전문 경제관료들을 내보내 시장경제를 연수시키고 있는가 하면, EU 서방국가들과 적극 수교를 하고 이탈리아, 태국 등과 투자협정을 맺은 바 있다.

정 비중의 증가, ⑥사회협동단체의 소유범위나 개인 부업경리 범위의 제한적 확대, ⑦대외개방지역의 확대와 환율조정 및 특구조성, ⑧인센티브제의 제한적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경제개혁조치의 결여적 측면에서는 ①시장화를 위한 핵심적 조치인 전반적 가격자유화의 미실시, ②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 소유권 영역의 미개혁, ③독자적인 외자기업의 경제특구 미조성, ④인센티브제도의 한계성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변화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분야 개혁의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분조규모를 축소하고, 생산초과물을 현물로 농장 구성원에 분배하여 자유롭게 처분하게 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의 개혁초기 농업생산의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가족단위의 영농제도나 시장기구를 활용한 동기부여 등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 북한 경제사회 전망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 북한 사회는 향후 시장경제원리가 확대·적용되는 방향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1조치 이후 ‘변 수입 지표’의 도입이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 강화와 인센티브 제고에 기여하고, 일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경우, 북한의 개혁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시장사회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 수입 지표’에 따른 기업의 평가가 가져올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업의 계획수행평가 체계가 물량생산 위주에서 재산성 위주로 달라

지며, 기업이 올린 성과 중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이 증가”¹⁶²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혁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과정과 같이 경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계획경제 자체의 수정여부, 국가의 재정계획을 비롯한 조세개혁, 노동시장의 창출 등 내부적인 개혁 요구는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나 변화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반의 미확보가 북한이 기대하는 성과를 가져다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상태와 같이 공식 경제부문이 계속 축소되고 비공식 경제부문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 현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인플레이션 현상의 심화가 일반 주민 생활의 궁핍화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7·1조치의 긍정적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면한 부족경제(shortage economy)의 현실에서 볼 때, 일반 주민들의 생활 형편은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7·1조치로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저하되었으며, 장마당 물가는 7·1조치 이전에 비해 현재 최소 2배~3배 상승했다. 각종 명목의 사용료 징수와 토지사용료, 주택사용료 및 철도요금 등 생산 및 서비스관련 요금도 대폭 인상,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의 교육비납부와 약값의 개인 부담 증가 등으로 생활의 궁핍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주요 식량가격이 크게 인상됨으로써 그나마 농민시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국영상점에서 식량을 구입하기가 어려워

¹⁶² 박형중, “북한의 7·1조치 성과와 경제개혁 전망,” (평화문제연구소 & 한스자이델 재단 2004 재외동포 통일문제 세미나, 2004 5. 24).

졌으며, 과거에 비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여 식량을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¹⁶³ 암시장 가격은 앞으로도 더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현재 북한의 주요 지역에서 장마당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이는 탈북자와 중국 상인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가격구조의 왜곡 현상이 북한의 심각한 물자부족과 식량생산 공급 부족 등으로 가격구조의 왜곡을 확대시켜 더 큰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탈(비)사회주의의 심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과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던 상황에서 탈피해, 주민들 각자가 생계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조선노동당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 신임이 크게 줄어들고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의 약화를 동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당과 국가에 대하여 고마운 생각이나 미련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탈(비)사회주의 현상은 ①김정일 우상화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 ②집단주의 정신의 약화 및 개인주의의 성행, ③물질주의 팽배 및 부정부패 현상의 심화, ④사회주의 실패에 대한 인식의 확산, ⑤“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와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의 퇴조, ⑥생존을 위한 ‘돈벌이 바람’(농장 일보다 텃밭 일에 더 전념, 농장의 식량, 농기계 및 공장기계를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 성행 등), ⑦외화벌이 재외기관이나 무역회사, 대외사업부문, 호텔 근무, 해외연수기회 선호 현상 증가, ⑧기존의 계획경제

¹⁶³ 북한에서 농업부문 종사비율은 30%로 중국 개혁당시 7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바, 이는 농산물의 생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개혁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에 따른 물자관리체제 붕괴 우려 등과 같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체제는 일정한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사회통합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식량부족이라는 일상적 문제는 일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남 인식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을 부정적인 인식차원에서만 보지 않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대북 교역 물자 및 지원 물자의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남한 기업인 및 비정부단체 인사들의 대량 북한방문, KBS교향악단의 북한 공연과 같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등을 새로운 각도에서 남한을 인식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과의 접촉과 경제교류활동의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교류협력과 관련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다. 외국인과의 경제 접촉이 늘어나고 있는 단적인 예는 비법적으로 외화별이를 조직한 경우(개정형법 제125조, 이하 형법 조문을 지칭), 또한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을 동원한 자(제126조), 그리고 무역계약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대량의 손실을 준 자”(제124조)까지 처벌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는 대외교역 및 이국인 상대의 교역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경향에 대한 불안 내지 경계심을 갖고 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계획경제로부터 대외거래에 노출되는 국가의 불안감

이 법조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형법은 정치형법으로부터 경제형법으로 중점이 확연하게 이동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¹⁶⁴ 이와 관련 북한 사회의 관료부패는 더욱 조장될 가능성도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경제재화가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에는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형법 제103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표권침해행위’를 처벌하고 있음을 볼 때, 『상표권』도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상적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제11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꾼”(제111조) 뿐 아니라 “법인”(제112조) 등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중개행위 및 금전거래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자본주의 상거래 행위와 관련된 보다 다기한 경제행위가 북한에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¹⁶⁴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 논문 2004.12.9), p. 21이하.

V

경제개혁을 통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혁이 개혁답지 않다는 것이다. 개혁답지 않다는 말은 개혁이 시장화를 비롯한 체제전환의 요소를 강하게 띠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운영”¹⁶⁵해 나가는 정도의 내부개혁으로는 경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현재 직면한 심각한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도 없다. 유통부문에서 시장을 허용해도 생산부문의 전면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산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에너지 문제는 북한 자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북한이 경제에 대한 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비공식 유통체계를 축소시키고 공식 유통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는 실패했다. 또한 생산현장으로 노동력을 복귀시켜 생산량을 증대한다는 목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경제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오히려 확대되어 일반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렇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을 7·1조치를 통해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려는 북한당국의 노력이 실패한 데서 찾는 것은 무리다. 북한은 7·1조치 직후 신의주, 개성, 금강산을 특구로 지정하고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외자유치에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북한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외부유입의 획기적 증대 없이 내부개혁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당국의 일련의 노력들만이라도 성과를 거두었다면, 부족의 경제

¹⁶⁵ “위대한 선군 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 2003년 1월 1일.

문제가 개선되어 비공식부문을 축소하고 공식부문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북한당국의 의도가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02년 10월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의 의도는 수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핵 문제는 오히려 외부유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지 않는 한, 북한경제는 소생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 경제개혁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 과제는 시장화, 다시 말해 경제의 자유화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의 자유화를 강화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대비다. 북한의 변화 조치가 생산 부문에 걸맞는 공급체계에 의해 뒷받침 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부작용이 사회 전반적인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에는 현재 기득 관료층 및 군부의 북한의 개혁조치에 대한 보수적 자세와 비판적 입장, 물자조달의 어려움과 물가상승에 따른 인민경제의 피폐화, 생산체제가 가동되지 않음으로서 형성되는 경제위기감과 정책추진의 한계,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이 총체적인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은 북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대중국 및 대남한)를 더욱 심화시키고 주민의 이탈을 가

속화시킬 수 있는 바, 내부 관리를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조치를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비롯, 주변국과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하되, 해결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이해가 결집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북한경제의 생산력 저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요하다. 단기간 내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생필품, 원부자재 등 지원이 절실하다. 생산력 확충을 위해서는 남한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국제금융기구 등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대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나 북한 내부의 발전 양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국가의 대북 정책,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떠한 방향에서 전개되는가에 달려 있는 측면이 크다.¹⁶⁶ 체제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경제개혁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다. 체제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간의 합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 문제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체제개혁이 수반된 대외개방을 추구하는 한편, 대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외개방을 추진한 중국은 물론, 북한보다 늦게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베트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중국과 베트남은 ①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②체제개혁을 동반한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 향후

¹⁶⁶ 박형중, 『북한의 변화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167.

북한의 대외개방을 통한 무역 및 투자 확대는 대외개방에 상응하는 내부 개혁프로그램의 제시와 북미관계의 개선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 향후 경제개혁의 기본방향

이상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북한은 향후 경제개혁을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하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실질적 시장화를 위해 경제전반에 걸친 내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①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법규 신설이나 변경을 통해 전환될 경제의 미래상을 분명히 제시하고, ②국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경쟁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능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이윤동기를 부여하고, 기업활동의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화와 생산수단의 거래 및 처분의 자유화 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선박, 비료, 화학, 자동차, 철강 등)은 건설초기에 요구되는 대규모 자본투자의 필요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 일정 기간 동안 국영기업체로 유지하되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기업경영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④시장의 참입과 이탈, 직업선택과 기업설립 및 영업활동의 자유와 계약체결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⑤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금융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두 번째로는 대외무역을 자유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①대외경제부문에 있어 먼저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실시하되, 화폐가치가 평가절상된 형태의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구매력평가에 따른 교환비율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②자본이동의 자유화 이후 재화나 용역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생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 이로 인한 국내 생산감소와 고용수준의 감소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보호무역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 시장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각종 보완책 적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즉 ①화폐·금융·국가재정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 실물경제시장과 화폐시장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체제전환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어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②각종 세제를 통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③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개선,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독점기업의 관리, 각종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및 연구소를 설립, 기업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인력개발 지원,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보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④각종 공공재(public goods, 예: 교육, 신문방송, 위생, 문화 등과 관련되는 기관의 설립과 행사)를 확충하여 시장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혁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 즉 ①인플레이션

문제, ②실업자 문제, ③권력분권으로 인한 체제이완, ④부정부패를 극복할 인재와 제도적 장치, ⑤이념적인 문제 극복을 위한 가치 교육, ⑥기득권세력의 이익감소에 따른 저항, ⑦기업경영자층의 육성 및 교육, ⑧주민들의 시장경제에 적응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등에도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⁶⁷

더 나아가 시장화와 함께 추진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자원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예산규모를 증대시킬 경우 경제에 대한 충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화 개혁은 북한 경제의 무게중심을 수출로 옮겨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부문의 금융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¹⁶⁸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지원을 담당할 상업금융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세부추진과제

가. 7·1조치의 확대·개선 및 발전

최근 탈북한 새터민과의 면담조사에 의하면 2002년 7·1조치는 중단되었거나 그 추진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이 인상된다고 했으나, 잘 실천되지 않는 공장이나 기업소도 상당수에

¹⁶⁷ 이와 같은 문제해결은 베트남의 초기개혁에서도 당면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서행, “베트남의 도이모이정책의 성공경험과 북한사회 개방의 전망,” 『베트남 개방정책 성과와 북한사회에의 함의』(통일교육원 연구용역 2003), pp. 112~113.

¹⁶⁸ 배종렬, p. 64.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⁹ 많은 공장들이 원자재 부족이나, 전력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가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공장이나 기업소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금이 지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1조치에 따른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금과 물품가격의 인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화폐경제화를 예전의 상태로 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의 파급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하나, 개혁조치 자체는 다 음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전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북한이 향후 취해야 할 경제기조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1) 시장과 경제개혁조치와의 연결 강화

시장활동을 보다 크게 증가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장을 통해 상거래 행위가 점증함으로써 시장과 경제 개혁 조치가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북한에는 개인이 건물을 임차, 상업적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국가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음식점, 당구장, 가라오케 등 개인업소가 평양 시내 출현하고 있다. 특히, 임대식당의 경우 가격은 개인이 직접 매기고 있어 ‘합의제 식당’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판매 실적이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제’의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

¹⁶⁹ 새터민 남 00, 김 00 과의 자체 면담 결과 (2006. 8. 19).

며, 판매원들의 물품구매 권유, 호객행위도 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 상거래 행위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소득증가에 대한 의욕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시장을 통한 상거래의 행위의 증가는 이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 스스로도 시장을 경제개혁과 연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종합시장의 창설이 보여주듯이 대담하고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조선의 경제개혁의 특징”(조선신보, 2003.6.16)이라든가, “시장은 영이 처음인 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전문가 양성, 경험도입을 비롯한 협조를 가능한 한 받으려고 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03.6.10) 등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시장 기능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가격자유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식 배분체계에서 암시장으로 유출되는 물자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공식 경제부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자유화된 부분은 생산증가를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가) 유통분야의 개선

북한이 「7·1조치」를 통해 제품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개선된 가격체계¹⁷⁰를 계속 확대·강화시켜 나감으로써 국정가격의 의미가

¹⁷⁰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 즈음 이미 상품가격이 계획가격이며 일단 제정된 가격은 확립적이고 경직적이며 통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와 가격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 정확한 계획수행 실적의 평가, 합리적 경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식량난, 에너지난 등으로 북한 내 물자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제도권내 국정가격에 의한 정상적인 유통은 위축되는 대신 암거래가 크게 늘어나 기존의 가격체계 및 질서가 올바른 경제운용을 어렵게 할

퇴색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이 일부 공산품 가격에 국한하여 제품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 국가가 가격제정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¹⁷¹ 상품가격을 수급상황에 맞추어 조절하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영상점망으로는 물품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장마당을 통한 유통시장 거래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마당을 비공식 유통시장에서 공식 유통시장으로 인정하는 제도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유통시장은 향후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 주민들은 증가된 소득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상업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¹⁷²

둘째, 당국에 의한 저가 분배제의 사실상 폐지와 소득의 임의적·자율적 처분 가능성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개인의 효용을 극

정도로 문란해졌기 때문에 “상품의 수요와 공급관계, 제품의 질에 따라 값은 높일 것은 높이고 낮출 것은 낮추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¹⁷¹ 북한 국가가격제정국은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멋대로 할 수는 없다. 가격을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 단위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으며,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¹⁷²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고구마가 할당되면 상업망을 통해 일괄 분배해 주어 많은 양이 썩거나 보관을 잘못해 맛이 없었으나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사다 군고구마로 장사를 해 수익을 올리는 매대가 생겨나고 있다.” 2003년 2월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의 북한 방문시 북측 안내원이 평양 거리의 군고구마 간 이때대(판매대)에 대한 설명. 『중앙일보』, 2003년 2월 27일.

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계지출 습관에 익숙해지게 만들 것이다. 이는 물질 위주의 임금노동제를 정착시킴으로서 물질적 자극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북한 유통시장의 거래활성화는 기업간 거래를 무현금거래에서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현금거래는 특히, 대외 합작·합영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간 거래에 현금유통이 이루어질 경우, 거래 현금의 일부를 기업의 재량으로 필요 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유통분야의 시장수용에서 궁극적으로 생산분야의 시장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물자유통전문기업 설립, 도매시장의 도입, 생산재 유통시장의 허용 및 국유상점의 개혁을 통한 비국유부문의 확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¹⁷³

(나) 가격자유화 추진 방안

경제자유화의 중요한 부문은 가격구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혁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분배기능이 강한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주로 통제기능을 한다. 중국은 개혁초기 불합리한 가격시스템을 개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각 명목간의 가격비를 조정한 것이고, 둘째는 가격관리방식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정부결정가격을 정부지도가격과 시장조절가격으로 분리했으며, 셋째는 가격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가격결정권을 하

¹⁷³ 홍익표·동용승·이정철,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과제-중국과의 비교연구』, pp. 151~155.

부조식으로 이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가격 개혁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의 가격자유화는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확대와 계획가격의 축소라는 대원칙하에서 ①상품간의 상대가격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②가격관리방식을 다양화하며, ③가격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기업과 지방정부 등 경제 각 주체들에 권한을 이양하고, ④가격개혁의 단계를 잘 설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⁷⁴ 그러나 기본 소비제품을 비롯, 주택임대료, 공공요금, 에너지 등의 가격은 가격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띠으로써 시장가격과 실물가격의 차이를 보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 소비품의 가격개혁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격자유화→경공업품의 가격자유화의 순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시장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개혁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개별 경제주체 차원의 실리보장

경제관리면에서 실리보장이란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말하며, 국가는 물론 개별 공장·기업소들도 생산과 건설, 기업 관리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지출로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로동신문, 2002.8.26). 그러나 실리보장에 대해 북한은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아래 하부단위의 창발성을 보장하고, 수

¹⁷⁴ 조명철, “북한에 대한 시장교육 지원방안,” 『북한 개혁·개방의 향방 및 국제협력의 과제』(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 125.

익과 비용의 평가체계를 통해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즉 '실리'는 개인적 차원의 이윤이 아닌, 집단주의 견지에서 추구하는 목표다. 이는 경제부문의 변화상황에서 예상되는 정치·사상적 혼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조치가 자본주의적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주의적 실리추구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는 이에서 벗어나 경제관리면에서 경제주체별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와 기업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 차별적 임금지불 제도의 강화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노력정도와 연계된 차별적 임금지급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별 경쟁체제가 이데올로기나 사상교양, 집단생활, 인간개조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화폐 및 물질적 인센티브제로 임금지급구조를 전환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임금지급제를 보다 더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차별적 임금지불제다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 업무 외 추가보수를 위해 생산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¹⁷⁵ 또한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칙의 적용은 주민들로 하여금

¹⁷⁵ 이의 예로 “석탄을 캔 것만큼 생활비가 오르자 채탄공, 굴진공은 물론 석탄의 계량, 계측을 맡은 노동자들도 자기 일을 끝내고 막장에 들어가려 함”을 언급하고 있음. 『조선신보』, 2002년 10월 11일.

계획적 생활 및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서는 곡물에 대한 국가 구매량이 줄여 농민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분배받는 양이 많아지게 해야 한다. 그 밖에도 국가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과 지원노력 등 각종 생산비용을 줄여 농민에 대한 분배 몫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생산의욕이 증진되고 생산품의 질을 높이려는 의식이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에서도 7·1조치 이후 “번수입”에 의해 평가되고 판매까지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 품질제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의 인식이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기업운영에서 추진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젊은 경영진을 진출시켜 가급적 빠른 시간내 실질적인 생산증가와 소득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당국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①자율적 임금결정체계, ②임금의 차등지급이 보다 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임금구조, ③기업의 자율적 책임경영(생산품목, 생산량, 판매방법 등), ④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비롯한 전력공급 등 생산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생산을 위한 공급체계의 확립(원자재 등 물자 제공 및 전력을 비롯한 설비)이 중요하다. 북한에서 변화조치에 걸맞는 생산증가는 생산기반의 확보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북한이 자체의 힘으로 이에 부응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기업의 자율성 및 재산성 중시

북한은 이미 1998년 개정헌법을 통해 이미 기업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강화,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 생산성 제고 및 품질관리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을 규정함으로써(개정 헌법 제33조), 기업관리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있다. 심지어 공장·기업소의 지배인과 기사장이 이 규정을 어기면 헌법 위반 사범이 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제는 지배인과 기사장 등 경제 간부들이 기업 관리에서 독립채산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 문항을 추가하고 있는 것도 종래 허용되지 않았던 공장, 기업소의 의사결정권이 포함된 독립채산제의 실시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점에서 개정헌법에 경제관리에서 원가(cost), 가격(price), 수익성(profitability) 등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물량 위주의 생산에서 반드시 재산성을 염두에 두는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경제적 효과성을 철저히 따지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임금 및 인사제도의 개혁이다. 기업 지배인으로 하여금 인사권, 재정권, 상품판매권을 전적으로 소유하게 함으로써 경영욕구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 독립채산제에 따른

효과가 가시화하는 것을 보아 더 강도 높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 기업개혁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무엇보다 기업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기업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국가의 획일적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북한체제에서 생산경영활동은 아직도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물자공급, 생산제품의 판매 및 가격결정 등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기업이윤도 거의 대부분 국가예산수입 형태로 납부되고 있다. 경영손실도 국가가 보전해 주는 형식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관리자의 능동적인 관리능력이 저하되며, 기술향상이나 효율성 증진을 기대할 수 없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 초기 국영기업들의 상대적 독자성을 부여하고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했다. 중국은 1980년 9월 2일 「기업자주권을 확대하는 실험활동의 상황과 향후 의견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1981년부터 국영기업들에서 전면적인 자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 국유기업들은 인사, 물자구입, 자금보유, 생산·공급 및 판매 등 모든 면에서 상당한 자주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북한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자주적 판단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고정자금과 유동자금의 대부분을 국가재정으로부터 교부받는 시스템으로부터 탈

피하여 유동자금은 100% 기업이 스스로 조달하고 고정자금도 이 자지불을 전제로 국가재정에서 교부받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자금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기업책임하 사채 및 주식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접조달이 가능할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와 행정대행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업 경영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계획가격의 개선점 모색

「7·1조치」는 제품사이의 가격균형을 맞추고 제품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가격체계를 마련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⁶ 개선된 가격체계가 가격자유화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일부 공산품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격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조치」를 통해 제품사이의 가격균형을 맞추는 개선된 가격체계의 확대·강화가 정부 당국의 국정가격결정 의미를 직접적으로 퇴색되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당국은 당분간 국가의 가격제정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겠으나,¹⁷⁷ 상품가격을 수급상황에 맞추어 조절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¹⁷⁶ 제IV장 제1절 가 (1) 내용 참조

¹⁷⁷ 북한 국가가격제정국은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멋대로 할 수는 없다. 가격을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 단위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으며,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라)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강화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과거 행정명령식, 대중 동원식에서 철저히 물질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산기여도에 따른 차별적 인센티브제의 적용을 통해 개별적 경쟁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종래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함께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개인소유로 추가 허용하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향후 일정한 범위 내 개인상업 등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질적 자극의 수단으로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한 분조도급제의 도입, 분조 규모의 축소조정, 생산계획을 하향 조정하여 과거 실적을 감안한 현실화, 초과분의 자유처분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분조원에게 할당되는 초과분에 대해 상거래 등 자유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바, 향후 개별농가에 토지와 자재를 임대해 주는 ‘농가청부제’와 같은 질적으로 제고된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농업분야를 벗어나, 공업과 상업분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7·1조치」의 확대와 함께, 향후 제한된 범위지만 토지 임대 및 소규모 개인 서비스 분야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치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임대제가 북한 전 지역으로 전면 도입될 경우, 이는 중국식 개혁과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⁷⁸

¹⁷⁸ 2004년 3월,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은 서울대 주최 통일포럼에서 “북한 당국이 2004년 3월 1일부터 토지를 개인이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을 밝힌 바 있음.

(마) 화폐·금융 분야 개혁

재정·금융개혁의 성공여부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 안정 및 성장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에서 아직 국가재정과 금융부문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의 기능이 대단히 큰 반면, 금융기능은 대단히 종속적이고 수동적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화폐·금융분야 개혁은 재정부문과 금융부문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예산수입 면에서는 국유기업의 이익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의 이윤유보금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세금징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산지출 면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각종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모든 고정자금과 유동자금의 대부분을 인민경제비에서 지출하는 제도를 고쳐서 유동자금은 기업 유보금을 통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재정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서와 같이 손익책임제, 청부경영책임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부문에서는 북한이 생산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 자본 축적과 합리적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금융시장 기능이 도입되어야 한다. 먼저 통화가치의 안정과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추진을 목표로 북한의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system)를 자유시장원칙에 부합하도록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 전환하는 한편, 자금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자본시장의 육성, 주식,

국채 등 각종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획일적이고 독점적인 금융기능을 분산시켜 화폐발행, 국고업무를 비롯, 외국환 업무나 외환 관리업무 등의 기능만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분야별 은행을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등, 비정부관련 외국환 업무는 무역은행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보험, 신용조합 등의 보조적 금융기구를 설립·운영하여 자금의 동원력을 높이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이자 대출관행을 즉시 폐지하고 모든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단기금융시장, 국채시장, 금융채권시장, 기업채권시장, 주식시장을 설립하여 거시경제조절의 주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 적극적 대외경제협력 모색

대외경제차원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외무역 확대를 비롯한 대외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할 수밖에 없다. 내부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한다.

첫 번째로 대북한 국제환경이 개선될 경우, 북한은 대외무역의 주체를 세부 기업소 단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개정헌법을 통해 대외 무역의 주체를 국가 독점에서 사회·협동단체로 확대, 이들 단체들도 무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대외무역사업의 자유화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자유경제무역지대(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합영·합작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가하는 한편, 교역

대상국과 교역 품목의 확대를 위한 무역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특수경제지대에서 각종 기업의 창설·운영을 장려하고, 나진·선봉 특구와 개성, 금강산 이외에도 남포, 원산, 해주, 청진 등에 보세가공무역지대형 경제특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화 교환비율도 이미 1달러당 150원 정도로 현실화한 것은 향후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교환비율이 결정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능력의 제고를 위한 대미 환율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원화의 평가절하는 북한 경제에 ①외화 및 물자의 암시장 유출 및 밀무역 동기 제거, ②공식 계획경제 부문의 수출 촉진 및 외자유치 촉진 효과, ③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유기적 연관성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공장·기업소의 수출이 증가될 경우, 북한 당국은 외자를 기업이 개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물론, 유치하는 외자사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담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외교역품에 대해 보다 더 탄력적인 관세율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곡물과 원유 등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무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기타 직물과 비누, 신발 등 소비재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¹⁷⁹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능력 제약과 산업불균형 및 누적되고 있는 외채 등을 고려할 때, 환율 평가절하 등 외환제도

¹⁷⁹ 북한은 이미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40%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선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경상수지의 균형회복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로 북한은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핵과 같은 군사 안보적 당면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을 얻기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입 이전이라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관계 개선이 국내 경제회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합영·합작과 대외무역 사업에도 임해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사업을 자본과 기술 도입, 기업경영 학습의 기회 및 외화획득의 거점으로 삼는 한편, 국가와 협동단체로 제한하던 대외무역의 주체를 변경시대에서는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사회적 차원의 개혁 과제

북한 지역에 경제행위와 관련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다. 시장이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성되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의 하나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시장자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한 행위의 준칙(rule of just conduct)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법의 지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질서가 자기형성력과 자생적 발전력을 갖게된다.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산권법제(property law), 계약법제(contract law), 불법행위법제(tort law)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법의 지배가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재산권법제는 사유의 범위를 명백히 해 두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영역, 즉 사적 자치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개인은 최대한의 자유를 가지며 어떠한 국가권력의 임의적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만 개인은 안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계약법제는 경제주체간의 자발적인 거래와 자유스러운 교환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법제이며, 불법행위법제는 개인간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의도된 또는 의도되지 않는 가해(각종사고)에 대해 책임소재 등을 미리 확정해 놓음으로써 개인간의 경제·사회적 접촉행위, 거래 및 교환행위를 보다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한 법칙이다.

경제개혁 추진 당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법제를 정비하고, 법의 지배원리를 확고하게 정립시킨 후, 국가는 경제활동에 대한 관료주의적 개입과 불필요한 규제만을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질서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별도의 계획과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 법의 지배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제행위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법의 지배원리, 법치국가원리를 세우는 일이 명령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에 불가결한 필요조건이다.

VI

결론

1. 한국의 역할

가. 북한 지식 테크노크라트 지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첫 걸음은 개혁·개방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다. 개혁·개방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관료나 지식인에 대해 정보, 자료, 시설 등을 제공해 주는 것부터 시작된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선포 나서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 자체가 시장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당 관료나 정부 관료들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납득할만한 자신감있는 시장경제적 논리와 비전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도 인도적 식량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비롯, 기껏해야 농업기술, 의료기술 지원 등 기술적인 부문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시장지식 전수를 위한 자료·정보·교육에는 소극적이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시장지식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 북한 국내사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개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북한 현 체제의 사상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실용주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지식 테크노크라트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지식 테크노크라트의 남한 경제시찰단으로 초청하거나, 시장경제교육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정치적 변화없이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시장경

제요소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분야의 기본 매뉴얼을 작성, 관련 남북한 경제회담에 같은 기회를 통해 제시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다행히도 북한에는 현재 정치적 경험보다는 경제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엘리트인 기술관료들이 점차적으로 전면에 부상하고 있으며, 당면한 경제난이 ‘자력갱생’의 경제운영에 한계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인식이 전문 관료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외부의 정보를 접하는 고위 간부들, 해외유학생, 대외경제분야 관료, 언론기관의 중견급 관리들의 현실 인식은 개혁·개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북한의 전문가들을 외국으로 초청, 시장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북한 비공식 경제부문의 활성화 지원

북한은 향후 비공식 경제부문의 소규모 경제활동을 전면 인정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¹⁸⁰ 북한의 비공식 경제부문을 활용하여 생필품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식 경제부문의 활성화는 북한으로서도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

¹⁸⁰ 김일성도 ‘사회주의사회에서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남아있는 것은 나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국가에서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것들을 개인들이 부업경리에서 생산하여 내다 파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 방법이 뒤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선진적 방법으로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뒤떨어진 방법도 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도록 함으로써 생필품 부족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 비공식 경제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농민시장 및 종합시장에서 남한 물품의 거래가 다량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성행하는 개인 상공업 활동을 협동경리 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해관계 및 업종이 유사한 소규모 경제활동 종사자들이 공동출자하여 협동기업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공장 및 기업소에 소속된 가내작업반을 협동기업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협동경리사업을 개선할 경우에는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던 개인 상공업자들이 계획부문으로 영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경제특구에서 시범적으로 개인상공업 활동을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소규모 경제활동을 통한 고용과 소득창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특구 내개인상공업 활동 허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 북한 유통분야의 변화 촉진

현재 북한에는 ‘시장경제의 영역’이 자리잡고 있다. 시장경제 영역이란 자원배분이나 생산과 소비, 이익의 분배 등 제반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영역이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며 가격에 의해 자원의 배분과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영역이 시장경제영역이다. 북한 주민 대다수는 현재 개인부업 또는 장사의 경

힘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수입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월급보다는 개인장사를 통해 얻는 수입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¹ 이와 같은 영역에는 수요과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개인의 사적 이윤동기에 따라 생산, 판매하는 시장이 계획경제부문에서의 노동보다 우선시되는 의식구조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면, 이와 같은 북한 주민의 경험들을 소중히 하여 이를 경제개혁의 과제와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유통시장의 변화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과감한 유통분야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연속적 경제개혁의 시초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장사를 하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⁸²

그 다음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한이 지원하는 식량과 생필품이 북한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필품 위주의 무상 지원 물품이 종합시장 등에서 직접 거래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차원에서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임가공 생산을 포함, 생산·유통·판매가 결합된 형태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매시장과 연결, 남북한이 공동으로 생산한 제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¹⁸¹ 탈북자 김 00 면담, 2006년 9월 26일.

¹⁸²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고구마가 할당되면 상업망을 통해 일괄 분배해 주어 많은 양이 썩거나 보관을 잘못해 맛이 없었으나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사다 군고구마로 장사를 해 수익을 올리는 매대가 생겨나고 있다.” 2003년 2월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 참가목적의 북한 방문시 북측 안내원이 평양 거리의 군고구마 간이매대(판매대)에 대한 설명. 『중앙일보』, 2003년 2월 27일.

임금노동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북한 경제협력사업에서 임금의 직접지급과 인센티브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금강산과 개성공단 및 평양 등지에 남북한 직거래 시장 개설을 추진하거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일정부분을 북한 내수시장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라. 남북한 직교역 체제 구축 및 활성화

직교역은 교역과 관련된 제반사항(교역상당부터 대금결제까지)을 제3국의 중개없이 남북한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리하는 것이다. 즉, 물품의 반출입시 선하증권상의 최종목적지와 제품의 원산지로 남한과 북한이 명시되는 것을 상호 인정하고 교역하는 것을 말한다. 직교역은 남북한이 상대방을 사실상 공식적인 교역 상대국임을 인정하는 행위다. 남북한은 이미 제6차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2003. 8. 28)를 통해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확대·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직교역 체제가 확립될 경우,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에서 「직접교역」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역상의 비효율적 거래행위(의사소통, 클레임제기, 대금결제상의 불편, 거래 성사의 시간 및 비용부담 등)가 크게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상거래에 대한 직접적 의사전달 통로가 확보됨으로써 남북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 외 원산지확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중서류작성과 간접적인 대금결제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제3국 물품의 위장반입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있다. 직교역 확대는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의 회생과 발전, 대북 교역과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 기업의 권익과 수익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직교역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역 관련 물적 지원체제와 제도적 차원의 지원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물적 지원체제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당사사간 교역의 직접계약체결을 위한 협의창구 설치, 남북한간의 우편·통신 연결, 육·해상 직접수송 및 물류 문제의 해소 등이 주 고려 대상이 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직거래 대상품목 및 범위결정, 원산지 확인, 직접적인 대금결제방식의 마련, 교류·협력 관련 분쟁조정을 비롯해, 직교역 체제 도입에 따른 국제무역기구(WTO)의 제소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맺음말

2002년 북한의 경제개혁은 북한 경제의 지도를 바꿔놓지 못했다. 임금의 차등지급과 인센티브제의 도입으로 시장의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었으나, 공식 부문의 산업생산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는 공식부문에 일정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는 예상되나, 개혁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만 머물게 된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효과마저 반감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도시빈민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북한 경제·사회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 분명하나, 지금 상태에

서 북한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북한은 개방·개혁의 여파가 정권에 미칠 영향력을 두려워 대내개혁이 부진하면서도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내적인 충격없이 경제회복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

북한의 장래와 관련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핵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경제개혁에 성공,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형태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부정적으로 개입, 대북 지원 감소가 북한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증가되는 형태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의 봉쇄(international embargo)’로 정권이 붕괴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 상태에서 내부로부터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층이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권력투쟁이나 노선 갈등의 조짐이 없다. 정권의 불안정은 경제악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불만과 도전이 생겼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북한은 정권의 정통성이 경제적 성과가 아닌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라는 이념적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난 그 자체가 바로 체제 불안정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북한의 변화 조치가 생산부문에 걸맞는 공급체계에

의해 뒷받침 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이 사회 전반적인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안정은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대중국 및 대남한)를 더욱 심화시키고 주민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내적 역량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통제가 내부적 역량에 의한 붕괴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며, 주체사상의 내면화도 체제지탱의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 가능성

제·개정된 법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변화 관련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치가 과거 유지해 온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시도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적용에는 다소 한계가 있기는 하나 혁명이 발생한 시기를 분석하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³ 혁명의 주체세력은 전통적으로 억압받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호전되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의해 보다 나은 삶의 맛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불가능해지자

¹⁸³ Davies, J. C.,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1962); Davies, J. C., *The J-curve of rising and declining satisfactions as a cause of some great revolutions and a contained rebellion*(1969)

이전의 혜택을 회복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 궁극적으로 대중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에 관한 한 약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전혀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독재 정치를 취해왔던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그러한 자유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나, 이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허용한 자유를 다시 제한하려한다면, 일반 대중들은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 이후 고르바초프의 자택감금 사건이 대중 혁명으로 연결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대북 제재와 북한 경제의 향방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나 북한 내부의 발전 양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국가의 대북 정책,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떠한 방향에서 전개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내생적 변화 능력을 고려할 경우, 북한 변화는 외생적 자극과 유인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을 것인 바, 한·미·일 등 주변국가의 대북 정책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핵실험 이후 북한 경제는 유엔의 제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 이행될 경우 북한은 미사일 수출 등 무기수출(4억~5억 달러)과 불법적인 마약, 위조지폐 거래(3억~5억 달러)가 차단돼 연간 7억~10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총련 동

포들의 대북송금도 연간 3천만 달러~1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바, 이렇게 되면 경제난 가중과 함께 군사장비 개발과 생산을 위한 물품 조달이 중단됨으로써 군수산업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북한 경제는 특히 중국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이 강행된 이후 중국 군부는 즉각 중앙정치국 및 중앙군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대북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평양주재 중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대북 강경책을 동원했다.¹⁸⁴ 중국 지도부는 북한 핵실험이 대형재난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제64집단군 및 제16집단군을 북·중 국경 최전방에 증파해 사태 악화에 대비키로 결정했다.

북·중 양국 계좌간 입금과 송금이 제한된 데 이어,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의 계좌동결 등 전면적인 금융봉쇄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국의 대북 교역 종사자들이 대북 수출대금을 받는데 과거보다 3배~4배 이상 시간이 지연될 경우, 교역은 치명타를 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00Km에 달하는 대북한 국경지역에서의 검색은 공식무역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¹⁸⁵ 북한의 연료 7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반관·반민 기업이 추진해 왔던 북한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제재 중 가장 효력을 크게 발휘하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

¹⁸⁴ 후진타오 주석도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듣지 않고 이성까지 잃은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신용을 잃고 멋대로 사단을 일으켜 긴장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장쩌민 전 주석에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한 것은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격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¹⁸⁵ 2006년 북한은 교역량의 55%, 원유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2005년 대북 투자는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정부의 대북 공식 지원도 2002년 이후 원유·디젤유 5만 톤, 콩 1만 톤,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등이다.

제재다. 정상적이고 상업교역을 해도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송금할 수 없다면 북한의 수출업자가 돈을 받을 길이 없다. 이럴 경우 현금을 동반하는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현지에서 수출 대금을 받은 북한인은 본국 계좌에 송금할 수는 있어도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물품송장 등 자금출처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을 비롯, 심양과 단둥 지역 은행들은 모두 북한을 외환거래 금지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북한 기관들은 규모가 큰 외화벌이 회사들이다. 1만~2만 달러씩 거래하는 조그만 회사는 소위 달러와 물건을 ‘맞교환’하지 은행 거래는 하지 않고 있다. 당이나 인민군, 보위부 등이 운영하는 부강, 대흥, 대성과 금성공사 같은 회사들은 한 번에 몇 십만 달러씩 중국 측과 은행을 통해 크게 거래한다. 그러나 은행거래가 끊기면 돈을 싸들고 다녀야 한다. 큰 거래는 불편해져 결국 거래가 끊길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정상적 신용장 거래를 하지 않고 입금할 외국금융회사 계좌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안정한 거래를 면치 못하게 된다. 북한으로부터 수출하는 회사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 자연적으로 거래를 줄이게 될 것은 분명하다. 단둥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의 80%가 거치는 관문이다. 중국 정부의 조치로 단둥세관이 40일씩이나 문을 닫는다면 북한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지 않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있다. 중국은 북한을 꾸짖기는 하겠지만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권유를 따를 경우, 대북 제재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

도 있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되찾는 수단으로 대북 제재를 가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잃어버린 중국의 체면을 세우고 대북 영향력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대북 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이는 바, 향후 북한 경제는 보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지는 한편, 중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의 성찰』. 서울: 한울, 2005.
- 고일동.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구성열 외.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시사』. 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5.
-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성철·김영운 외.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2002.
- 김영운·박현신·조봉현. 『북한이 변하고 있다』. 미발간 도서,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동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_____. 『북한동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박형중. 『북한의 변화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_____.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서울: 해남, 2002.
-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사회변화에 미칠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서재진·한도현·장영식. “중국·베트남·북한 경제개혁조치의사회·문화 분야 파급효과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2004 통일부 용역과제보고서, 2004.
-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오승렬. 『중국경제의 개혁: 개방과 경제구조』.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분야별 종합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이보근. 『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이영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가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은행, 2005.
-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전재욱. 『중국의 공업화 전략과 외국인 직접투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정덕성. 『북녘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 최준욱.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조명철 외.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과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최수영.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 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한국은행. 『중국 경제의 개혁성과와 개혁정책 평가』. 1998.
- Hayek, F. A.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Critical Studies on the Possibilities of Soci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35.
- Schumpeter, J. A. *Kapitalismus, Sozialismus und Demokratie*. Tübingen: Francke Verlag 1950.
- Galbraith, J.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München-Zürich: Knauer 1968.
- Marx, Karl.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arx · Engels Werke Vol. 23~25. Berlin: Dietz Verlag Berlin, 1963.
-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vigne, M.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 Ludwig v. Mises, *An Economic ans Sociological Analysi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51.
-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London: Gollancz, 1945.
- Rostow, W. W. *Stadien wirtschaftlichen Wachstum*. Göttingen 1967.

2. 논문

- 고용권. “베트남의 통일과정의 특성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베트남 개방정책 성과와 북한사회에의 함의』. 서울: 통일교육원, 2003.
- 고현욱. “북한 경제연구의 딜레마와 제언: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의 성찰』. 서울: 한울, 2005.
- 권율. “베트남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 보고서』. 1997.
- 권태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부작용과 처방.” 본 연구관련 자문회의 비공개 자료 2006.8.24.
- 김양호.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보 철학경제학편』. 2004.
-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 연구』. 서울: 후미니타스, 2002.
- 김영운·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정책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호선. “베트남 사회주의 개혁(Doi Moi)과 관료부패.” 『한국정치학회보』. 1997.
- 남성욱. “2004년 법전 발행과 북한 경제개혁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주민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

- 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주최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2003.6.26.
- _____. “7·1경제관리개선조치 2주년 평가와 전망,” 『KDI 북한 경제리뷰』. 6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4.
- 리원경. “화폐자원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4월호 2003.
- 박형중. “북한의 7·1조치 성과와 경제개혁 전망.” 평화문제연구소 & 한스 자이텔 재단 2004 재외동포 통일문제 세미나, 2004 5. 24.
- _____. “노임 및 물가 인상 및 경제관리의 개선강화 조치에 대한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 14권 2호, 2002.
- 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방향,” 『수은 북한경제』 2006년 여름호. 2006.
- _____. “북한 개발을 위한 경제모델의 모색: 한국의 경험,” 『수은 북한경제』 2005년 여름호.
- _____.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방향,” 『수은 북한경제』 2006년 봄호.
- 설충. “사회주의 국가 경제개혁 부작용 사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06. 8.
- 신지호.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12. 6.
- _____. “7·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KDI 북한 경제리뷰』 제5권 제7호, 2003.
-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 북한경제 리뷰』. 제7권 제2호, 2005.
- 윤미량. “북한 체제의 내구성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편.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 서울: 한울, 2005.
- 이서행. “베트남의 도이모이정책의 성공경험과 북한사회 개방의 전망.” 통일교육원 연구용역. 『베트남 개방정책 성과와 북한사회에서의 함의』. 2003.
- 임현진·정영철.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7권 1호, 2004.
- 장명봉. “북한 개정 헌법(1998.9.5)의 경제 조항 변화의 고찰.” 『통일경제』. 1998.

-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국제정치논집』 제26집, 2003.
- 정형근.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 북한.” 『현대북한연구』. 제5권 2호, 2002.
-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2002.
- 연하청. “북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우리의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2002.
- 조동호. “변화하는 북한 경제 평가와 전망.” 『수은 북한경제』. 2004년 여름호.
- 조명철. “북한에 대한 시장교육 지원방안.” 『북한 개혁·개방의 향방 및 국제협력의 과제』. 2001.
- 조영기. “북한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 7·1조치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2004. 4. 23.
- 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2005.
- 하상식. “북한 경제의 개혁전망: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 2004.
- 한도현. “도이머이 이후 주민복지의 개선과 북한사회에의 시사점.” 통일교육원 연구용역 2003. 『베트남 개방정책 성과와 북한 사회에서의 함의』.
-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 논문, 2004. 12. 9.
- Denis, Henri *Geschichte der Wirtschaftstheorien* Vol.2: Von Marx bis zur Gegenwart Rheinfelden: Schäuble Verlag 1974/75.
- Tinbergen, Jan. “Konvergenzen und Divergenzen zwischen den verschiedenen Wirtschaftsordnung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Nordrhein-Westfalen-Köln(ed.). *Unsere Wirtschaft-Basis, Dschungel, Dogma?* Köln: 1973.
- Rüdiger Pohl. *Das Preissystem ist der erste Schritt zur Währungsunion*. in: Wirtschaftsdienst, Feb. 1990.
- Russel J. Dalton. and Nhu-Ngoc T. Ong. “The Vietnamese Public in

Transition: The World Value Survey-Vietnam 2001.”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2001.

3. 기타

『김일성 전집』.

『로동신문』.

『연합뉴스』.

『조국』.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는데 대하여,”

김정일 10·3 지침 (2001. 10. 3)

『로동신문』.

『경제연구』.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2004.

북한연구학회. “2006년 북한은 어디로?” 『북한연구학회』 홈페이지(www.nkstudy.or.kr).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1997.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2005.

통일부. 『금년도 농민시장 운영변화 동향』. 2005.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KOTRA. 『2004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험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흙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헌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 · 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 · 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 · 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 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비매품 ◆

통일 정세 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삼,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삼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 정책연구 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